

법인세 정책의 해외직접투자 국내고용에 대한 효과 분석 연구

| 황상현 · 이승래 |



연구

14-11

법인세 정책의 해외직접투자와 국내고용에 대한 효과 분석 연구

황상현·이승래

**법인세 정책의 해외직접투자자
국내고용에 대한 효과 분석 연구**

1판1쇄 인쇄/ 2014년 12월 30일

1판1쇄 발행/ 2015년 1월 5일

발행처/ 한국경제연구원

발행인/ 권태신

편집인/ 권태신

지은이/ 황상현, 이승래

등록번호/ 제318-1982-000003호

(150-88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24 전경련회관 45층
전화 3771-0001(대표), 3771-0060(직통) / 팩스 785-0270
<http://www.keri.org>

© 한국경제연구원, 2014

한국경제연구원에서 발간한 간행물은
전국 대형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구입문의) 3771-0060

ISBN 978-89-8031-712-7
CIP제어번호 2015000382

10,000원

* 제작대행 : (주)FKI미디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그리고 글로벌 재정위기 이후 전 세계의 경제성장이 정체되고 있다. 한편 급속히 전개되고 있는 개방화 속에서 생산시설 등과 같이 생산에 투입되는 생산요소로서 자본은 더 이상 특정 국가에 머물지 않으며 국제적으로 원활히 이동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세계 각 국가들은 자국 내 생산시설 등을 유치하여 생산을 증대시키기 위해 법인세율 인하 경쟁 등을 치열하게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양극화라는 문제가 사회적으로 제기되는 상황에서 2013년 새롭게 출범한 정부는 국정과제 지원과 세입기반 확충이라는 목적 하에서 비과세·감면의 축소 또는 합리화 등으로 법인세 부담, 특히 중소기업보다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부담을 강화해 왔다. 국제적으로 법인세 부담이 감소하는 추세와 달리 향후 우리나라의 법인세 부담이 증가할 경우 우리나라의 국제경쟁력이 저하되어 자본의 해외유출과 이에 따른 국내 고용의 감소로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이 점차 둔화될 수 있어 사회적인 우려를 낳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법인세 정책이 우리나라 기업들의 해외직접투자에 미치는 영향과 이로 인해 국내 고용에 파급되는 효과를 실증분석하고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개별 기업들이 소유하고 있는 해외 자회사들의 총 투자액 등을 이용하여 법인세 부담의 해외직접투자 효과를 분석한 결과, 법인세 부담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평균실효세율과 한계실효세율은 모두 기업의 해외직접투자에 유의하고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또한 국내 법인세 부담과 해외직접투자와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를 이용하여 해외직접투자가 기업의 고용 수준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결과, 국내 법인세 부담에 의한 해외직접투자는 기업의 고용 수준에 유의하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이와 같은 실증분석의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법인세 부담, 즉 평균 및 한계실효세율이 증가할 경우 우리나라 기업들의 해외직접투자는 증가되고 이에 따라 국내 고용은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을 낙관적으로 기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법인세 부담을 완화하여 해외로 이전될 수 있는 자본을 국내 생산에 투입하게 하는 동시에 국내 고용을 촉진시키는 방향으로 정부가 법인세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즉, 향후 고용확대나 경제성장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대기업을 포괄하여 기업에 대한 법인세 인하가 필요하며, 그 대신에 정부의 복지재원 조달 등을 위해서는 소득세 또는 부가가치세 인상으로의 전환이 바람직할 수 있다고 한다.

본 연구를 수행한 본원의 황상현 연구위원과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이승래 부연구위원은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값진

조언으로 도움을 준 명지대학교 경제학과의 이시욱 교수, 경희대학교 무역학과의 장용준 교수, 그리고 익명의 검토자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있다. 또한 연구를 위한 자료의 수집 및 정리로 도움을 준 조성욱 연구원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있다. 끝으로 본 보고서에 담긴 내용은 저자들의 개인적 견해에 한하며 본원의 공식 견해가 아니라는 것을 밝혀 두는 바이다.

2014년 12월
한국경제연구원
원장 권태신

목 차

| | |
|---|-----|
| 요약 | 9 |
| 제 I 장 서론 | 15 |
| 제 II 장 분석방법 및 자료 | 25 |
| 2.1. 회귀분석모형의 구축 | 27 |
| 2.2. 평균 및 한계실효세율의 추정 | 38 |
| 2.3. 분석자료 | 49 |
| 제 III 장 우리나라의 최근 법인세 부담과 해외직접투자·국내 고용 변화 | 55 |
| 3.1. 우리나라의 최근 법인세 부담 변화 | 57 |
| 3.2.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직접투자와 국내 고용 추이 | 60 |
| 제 IV 장 법인세 부담과 해외직접투자 및 국내 고용에 관한 회귀분석 | 67 |
| 4.1. 평균실효세율의 해외직접투자와 국내 고용에 대한 효과 | 69 |
| 4.2. 한계실효세율의 해외직접투자와 국내 고용에 대한 효과 | 85 |
| 제 V 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 99 |
| 5.1. 법인세 부담이 해외직접투자·국내 고용에 미치는 영향 | 101 |
| 5.2. 정책적 시사점 | 105 |
| 5.3. 연구의 한계 | 106 |
| 부 록 | 109 |
| 참고문헌 | 134 |
| 영문초록 | 143 |

표 목차

| | |
|---|-----|
| 〈표 1-1〉 OECD 국가의 법정 최고 법인세율 | 18 |
| 〈표 2-1〉 한계실효세율(e) | 41 |
| 〈표 2-2〉 표기(Notation) | 42 |
| 〈표 2-3〉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금액 및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 현황 | 45 |
| 〈표 2-4〉 감가상각방법 | 47 |
| 〈표 2-5〉 주요변수에 대한 기술통계량 | 51 |
| 〈표 3-1〉 한국의 주요 투자국별 OFDI 현황 | 65 |
| 〈표 3-2〉 한국의 산업·기업별 해외직접투자 및 고용 현황 | 66 |
| 〈표 4-1〉 법인세율과 기업의 해외직접투자와의 관계: 평균실효세율 | 69 |
| 〈표 4-2〉 법인세율과 자회사로의 해외직접투자와의 관계: 평균 실효세율 | 73 |
| 〈표 4-3〉 기업의 해외직접투자와 고용과의 관계: 기업별 수준 분석 (평균실효세율) | 77 |
| 〈표 4-4〉 기업의 해외직접투자와 고용과의 관계: 자회사별 수준 분석(평균실효세율) | 82 |
| 〈표 4-5〉 법인세율과 기업의 해외직접투자와의 관계: 한계실효세율 | 85 |
| 〈표 4-6〉 법인세율과 자회사로의 해외직접투자와의 관계: 한계 실효세율 | 88 |
| 〈표 4-7〉 기업의 해외직접투자와 고용과의 관계: 기업별 수준 분석(한계실효세율) | 91 |
| 〈표 4-8〉 기업의 해외직접투자와 고용과의 관계: 자회사별 수준 분석(한계실효세율) | 94 |
| 〈부표 1〉 본 연구의 분석대상 자산 및 산업 분류 | 111 |
| 〈부표 2〉 광태원(1985.09)의 자산 및 산업부문 분류 | 114 |

| | |
|--|-----|
| 〈부표 3〉 Hulten-Wyckoff의 추정치에 의한 경제적 의미의 자본 감가율 | 115 |
| 〈부표 4〉 경제적 감가상각율(δ) | 119 |
| 〈부표 5〉 법인세율 | 121 |
| 〈부표 6〉 소득세율 | 122 |
| 〈부표 7〉 공통자산에 대한 평균 기준내용연수(T) | 124 |
| 〈부표 8〉 사업별·업종별 자산에 대한 평균 기준내용연수(T) | 125 |
| 〈부표 9〉 2010년 투자 관련 조세지원 현황 | 130 |
| 〈부표 10〉 임시투자세액공제 변천 | 132 |

그림 목차

| | |
|--|----|
| 〈그림 3-1〉 전체 기업의 평균 및 한계실효율 변화 | 58 |
| 〈그림 3-2〉 대·중소기업별 평균 및 한계실효율 변화 | 59 |
| 〈그림 3-3〉 국내 상장 기업의 대세계 해외직접투자 추이 | 61 |

■ 연구의 배경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그리고 글로벌 재정위기 이후 전 세계의 경제성장은 정체되고 있는 가운데 그 여파로 인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도 둔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라는 문제가 사회적으로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으며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부담의 강화로 이어지고 있다. 2013년 새롭게 출범한 박근혜 정부는 세법개정에서 국정과제 지원과 세입기반 확충이라는 목적 하에 비과세·감면의 축소 또는 합리화 등을 통해 법인세 부담, 특히 중소기업보다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부담을 증가시켰다. 이에 따라 향후 우리나라의 법인세 부담은 한층 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한·EU, 한·미 FTA 등 급속히 전개되고 있는 개방화 속에서 생산시설 등과 같이 생산에 투입되는 생산요소로서 자본은 더 이상 특정 국가에 머물지 않으며 국제적으로 원활히 이동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세계 각 국가들은 자국 내 생산시설 등을 유치하여 생산을 증대시키기 위해 법인세율을 경쟁적으로 인하하는 등 법인세 정책에 있어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다. 따라서 국제적으로 법인세 부담이 감소하는 추세와 달리 우리나라의 법인세 부담이 증가할 경우에 국제경쟁력이 저하되어 우리나라 기업들의 해외직접투자가 증가할 수 있으며, 이와 결합될 수 있는 고용은 감소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자본의 해외유출과

이에 따른 국내 고용의 감소로 인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이 재차 둔화될 수 있어 사회적으로 큰 우려를 낳고 있는 상황이다.

■ 연구의 목적 및 방법

이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법인세 정책이 우리나라 기업들의 해외직접투자자에 미치는 영향과 이로 인해 국내 고용에 파급되는 효과를 실증분석하고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Ordinary Least Squares(OLS)와 Two-Stage Least Squares(2SLS) 회귀분석을 바탕으로 실증분석 모형을 구축하여 우리나라의 법인세 부담 변화에 따른 해외직접투자 및 국내 고용 변화를 기업수준에서 분석한다. 이러한 실증분석 모형에 기초하여 2002~2011년 기간 패널자료로서 한국수출입은행에서 발간하는 해외투자통계 자료와 나이스평가정보에서 제공하는 KISLINE 자료가 연계되어 이용되는 한편, 기업별 법인세 부담을 평균실효세율뿐만 아니라 기업 투자와 직접적 연관성이 높은 한계실효세율로 추정한다.

■ 분석결과

본 연구에서는 2002년에서 2011년 사이 해외직접투자를 하고 있는 제조 산업 내 상장 기업들을 대상으로 국내 법인세율이 기업의 해외직접투자자 및 고용 수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개별 기업들이 소유하고 있는 해외 자회사들로의 총 투자액과 분석 기간 동안 새롭게 설립한 자회사 수를 이용하여 법

인세율의 해외투자효과를 분석한 결과, 기업에게 부과되는 평균 실효세율과 한계실효세율은 모두 기업의 해외직접투자액에 유의한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평균실효세율이 1%p 증가하면 기업의 총 해외직접투자액은 평균적으로 약 1.28%p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계실효세율이 1%p 증가하면 기업의 총 해외직접투자액은 평균적으로 약 4.98%p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분석기간 동안 한계실효세율의 해외직접투자 효과는 평균실효세율의 투자효과보다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즉, 기업의 해외투자는 국내 한계실효세율에 더욱 민감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기업의 총 해외투자 외에 해외 자회사의 정보를 통하여 기업들의 해외 생산요소 수요와 국내 법인세율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국내 법인세율은 해외 생산요소 수요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법인세율과 해외직접투자와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를 이용하여 해외직접투자가 기업의 고용 수준에 미치는 효과를 기업 수준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국내 법인세율에 의한 해외직접투자는 기업의 고용 수준에 유의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법인세율에 의한 해외직접투자는 시차적으로도 고용 수준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해외직접투자를 통한 국내 법인세율의 고용효과를 분석한 결과, 평균실효세율과 한계실효세율은 모두 해외직접투자의 변화를 통해 유의하게 고용 수준에 간접적인 효과를 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평균실효세율의 증가로 인한 해외직접투자가

1%p 증가하면 고용수준은 평균적으로 약 21.3%p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감소분 중에서 평균실효세율의 변화율이 약 18.7%를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 한계실효세율의 증가로 인한 해외직접투자자 1%p 증가하면 고용수준은 평균적으로 약 26.4%p 감소하며 이 중에서 한계실효세율의 변화가 약 18.6%를 설명함으로써 평균실효세율과 한계실효세율의 변화율이 고용수준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비슷한 수준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법인세율의 고용간접효과를 시차적으로 분석한 결과, 전기 평균실효세율의 증가로 인한 해외직접투자자의 1%p 증가는 당해 고용수준을 약 28.9% 감소시키며 이중에서 평균실효세율의 변화율이 약 17.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전기 한계실효세율의 증가로 인한 해외직접투자자의 1%p 증가는 현재의 고용수준을 약 28.5%p 감소시키며 이중에서 한계실효세율의 변화율이 약 18.4%를 차지함으로써 전기의 한계실효세율의 증가가 해외직접투자자 변화를 통해 현재 고용수준에 큰 부정적인 간접효과를 주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즉, 국내 법인세율의 증가는 해외직접투자자를 통해 기업의 고용 수준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으며 그 효과는 현재와 시차적으로 비슷한 것을 알 수 있다.

■ 정책적 시사점

이와 같은 실증분석의 결과는 우리나라의 법인세 부담, 즉 평균 및 한계실효세율이 증가할 경우 우리나라 기업들의 해외직접투자는 증가되고 이에 따라 국내 고용은 감소할 것을 전망하고 있다. 이는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을 낙관적으로 기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법인세 부담을 완화하여 해외로 이전될 수 있는 자본을 국내 생산에 투입하게 하는 동시에 국내 고용을 촉진시키는 방향으로 정부가 법인세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즉, 향후 고용확대나 경제성장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대기업을 포괄하여 기업에 대한 법인세 인하가 필요하며, 그 대신에 정부의 복지재원 조달 등을 위해서는 소득세 또는 부가가치세 인상으로의 전환이 바람직할 수 있겠다.

■ 연구의 한계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먼저 비록 자회사 자료 내에서 자회사들의 법인세전손익과 법인세비용 정보를 이용하여 자회사들에 부과되는 해외 법인세율이 해외직접투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분석하였으나, 현실에서는 투자 대상국별로 법인세 회계처리가 달라 본 분석에서 측정된 해외 평균실효세율은 이러한 사항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기존 해외 법인세율이 해외직접투자 유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분석한 선행연구들 대부분이 해외 법인세율이 유의한 효과가 있음을 밝혀냈다는 것을 고

려할 때 본 분석에서의 해외 법인세율이 해외직접투자자에 유의하지 않은 효과를 가지는 것은 위에서 언급한 국가별로 다른 회계처리기준이 반영되지 못했기 때문일 수 있다. 추후 연구에서 국가별로 상이한 법인세 회계처리를 반영하여 분석한다면 국내 법인세율의 투자효과를 심도 있게 분석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해외 법인세율 외에 기업의 해외 자회사가 모기업으로 지불하는 이자소득 등에 대한 과세 정보가 있다면 이를 통해 기업의 해외직접투자자로 인한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을 고려하여 국내 법인세율의 투자효과 및 고용효과를 심도 있게 분석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한편 해외 자회사 데이터에서 많은 자회사들의 보고누락으로 인하여 분석 기간 동안 해외 자회사가 영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락된 변수들이 많다. 특히 본 분석에서는 자회사 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새롭게 설립된 자회사들이 그 시점에서의 국내 법인세율에 의해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 분석하였지만 누락된 관측치들로 인해 의미있는 결과를 도출하지 못하였다. 완전한 정보를 가지고 분석한다면 국내 법인세율의 투자효과에 대해 보다 의미있는 분석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끝으로 본 연구는 법인세 부담의 변화가 우리나라 기업들의 해외투자와 국내 고용에 미치는 효과에 그 목적을 두어 분석하였으나, 이에 더해 우리나라 기업들의 국내투자 vs. 해외투자의 비중과 관련한 분석의 확장도 의미있는 결과를 도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법인세 정책의 해외직접투자와 국내고용에 대한 효과 분석 연구

제 I 장 서론



(연구의 배경) 미국에서 비롯되어 전 세계로 파급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그리고 포르투갈,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 등 남유럽 국가들이 겪은 글로벌 재정위기 이후 전 세계의 경제 성장은 정체되고 있는 가운데 그 여파로 인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도 둔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이 같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있는 국면에서 사회적으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라는 문제가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으며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부담의 강화로 이어지고 있다. 2013년 새롭게 출범한 박근혜 정부는 세법개정에서 국정과제 지원과 세입기반 확충이라는 목적 하에 직접적으로 법인세의 과표구간과 세율을 조정하지 않는 대신, 간접적으로 비과세·감면의 축소 또는 합리화를 통해 법인세 부담, 특히 중소기업보다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부담을 증가시킬 계획이다. 이에 따라 향후 우리나라의 법인세 부담은 한층 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한·EU, 한·미 FTA 등 급속히 전개되고 있는 개방화 속에서 생산시설 등과 같이 생산에 투입되는 생산요소로서 자본은 더 이상 특정 국가에 머물지 않으며 국제적으로 원활히 이동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세계 각 국가들은 자국 내 생산시설 등을 유치하여 생산을 증대시키기 위해 법인세율을 경쟁적으로 인하하는 등 법인세 정책에 있어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다. <표 1-1>과 같이 OECD 국가들의 법정 최고 법인세율(지방세 포함)은 1985년에 평균 48.5%에 달했으나 1990년 41.3%, 1995년 36.7%, 2000년 32.6%, 2005년 28.2% 수준으로 낮아졌고 2010년에는 25.6% 수준으로 인하되었다.¹⁾ 이렇게 국제적으로 자본의

이동이 원활해져 법인세 정책의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법인세 부담을 여타 국가들에 비해 경쟁적 수준으로 유지하지 못하면 국제경쟁력을 잃어버릴 수 있다.

<표 1-1> OECD 국가의 법정 최고 법인세율

| 국 가 | 1985년 | 1990년 | 1995년 | 2000년 | 2005년 | 2010년 |
|---------|-------|-------|-------|-------|-------|-------|
| 호주 | 46.0 | 39.0 | 36.0 | 34.0 | 30.0 | 30.0 |
| 체코 | - | - | 41.0 | 31.0 | 26.0 | 19.0 |
| 헝가리 | - | 40.0 | 18.0 | 18.0 | 16.0 | 19.0 |
| 아일랜드 | 50.0 | 43.0 | 38.0 | 24.0 | 12.5 | 12.5 |
| 일본 | - | 50.0 | 50.0 | 40.9 | 39.5 | 39.5 |
| 한국 | - | - | - | 30.8 | 27.5 | 24.2 |
| 멕시코 | - | - | - | 35.0 | 30.0 | 30.0 |
| 폴란드 | - | - | 40.0 | 30.0 | 19.0 | 19.0 |
| 슬로바키아 | - | - | 40.0 | 29.0 | 19.0 | 19.0 |
| 터키 | - | - | - | 33.0 | 30.0 | 20.0 |
| 영국 | 40.0 | 34.0 | 33.0 | 30.0 | 30.0 | 28.0 |
| 미국 | 49.8 | 38.7 | 39.6 | 39.3 | 39.3 | 39.2 |
| OECD 평균 | 48.5 | 41.3 | 36.7 | 32.6 | 28.2 | 25.6 |

주: 지방세를 포함한 세율
 자료: OECD Tax Database(2011)

따라서 국제적으로 법인세 부담이 감소하는 추세와 달리 향후 우리나라의 법인세 부담이 증가할 경우에 국제경쟁력이 저하되어 우리나라 기업들의 해외직접투자가 증가할 수 있다. 나아가 우리나라 기업들의 해외직접투자 증가로 인해 이와 결합될 수

- 1) 우리나라의 법정 최고 법인세율은 2010년 기준 24.2%로 OECD 평균보다 조금 낮은 수준이지만 동유럽 국가 등 외국자본을 유치할 필요가 있는 국가들이나 홍콩(16.5%), 대만(17%), 싱가포르(17%) 등 주요 아시아 경쟁국과 비교하면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더욱이 우리나라의 법인세 부담률은 2009년 기준 GDP 대비 3.7%로 OECD국가들(칠레와 멕시코 제외)의 평균 2.8%보다 높고 OECD 32개국 중에서 4번째로 높다. 주요국들의 법인세 부담률은 미국 1.7%, 영국 2.8%, 독일 1.3%, 프랑스 1.5%, 일본 2.6%로 OECD 평균에 비해 동일하거나 낮고 우리나라에 비하면 더욱 낮다.

있는 고용 또한 감소할 수 있다. 즉,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있는 국면을 타개하기 위해 국내 생산에 생산요소로서 투입돼야 할 자본이 국내에서 해외로 유출되며 이와 함께 노동이 감소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을 정부와 달리 낙관적으로 기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향후 우리나라의 법인세 부담이 증가한다면 이런 이유로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이 재차 둔화될 수 있어 사회적인 우려를 낳고 있다.

(연구의 목적과 방법) 이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법인세 정책이 우리나라 기업들의 해외직접투자에 미치는 영향과 이로 인해 국내 고용에 파급되는 효과를 실증분석하고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Ordinary Least Squares(OLS)와 Two-Stage Least Squares(2SLS) 회귀분석을 바탕으로 실증분석 모형을 구축하여 우리나라의 법인세 부담 변화에 따른 해외직접투자 및 국내 고용 변화를 기업별로 분석한다. 이러한 실증분석 모형에 기초하여 2002~2011년 기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발간하는 해외투자통계 자료와 나이스평가정보에서 제공하는 KISLINE 자료가 연계되어 이용되고, 기업별 법인세 부담은 평균 실효세율과 한계실효세율로 추정된다.

(본 연구와 관련된 기존연구) 법인세 정책과 해외직접투자(oversea direct investment) 관련 대다수 기존연구는 해외직접투자 유치국들이 자국 내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정책으로서 법인세 감면 정책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분석하였다. 그리고 대부분의 기존연구로부터 공통된 결과는 기업의 특성에 따라 그 효과가 다르지만 투자 유치국의 법인세 감면 정책은 기업의 해외

직접투자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Barlow and Wender(1955), Robinson(1961), Aharoni(1966), Ernst and Young(1994) 등은 다국적 기업들을 대상으로 선택적 설문 조사를 이용하여 투자 유치국의 법인세 감면 정책의 효과를 분석했다. 미국의 다국적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외직접투자를 위한 조건들에 대해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는데 투자 유치국의 법인세 감면 혜택은 환율변동성과 정치적 안정성보다 낮은 순위로 기록되었다. 즉, 법인세 감면은 매력적이지만 기업들의 해외직접 투자에 대한 의사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그리고 Root and Ahmed(1978), Agodo(1978), Shah and Toy(1978), Lim(1983) 등은 투자 유치국의 법인세 감면 정책의 효과를 시계열로 추정하였다. 단순 또는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세율 변화에 따른 기업들의 FDI 응답(responsiveness of FDI)을 분석하고, 법인세 감면이 기업의 FDI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서 유의하지 않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이들의 연구는 거시자료(macro data)를 이용하여 매년 변화하는 FDI 유입량과 조세 변화율을 포함한 그 밖의 다른 변수들의 관계를 분석하였는데 FDI 유입량과 상관관계에 있는 금융 또는 무역자유화 등 생략된 변수들의 존재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문제가 있다. 다른 변수들의 영향을 통제한 상태에서 순수하게 조세 변화가 FDI 유입에 미치는 영향을 따로 분석할 수 없었다는 한계점이 있다.

무역 관련 기존문헌에서는 기업의 해외직접투자에 영향을 미

치는 요소들에 대해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전통적으로 운반비용, 무역개방도, 인프라 등 투자 유치국의 특성이 기업의 해외직접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던 연구들이 많았다면, 최근에는 생산성과 크기 등 기업의 특성이 해외직접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연구들이 대부분이다.

Guisinger(1985), Wells(1986), Rolfe et al.(1993), Coyne(1994) 등은 이러한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해외 조세정책이 기업의 FDI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기업의 이질성(heterogeneity)에 따라 조세정책의 효과가 달리 나타날 수 있다는 가정 하에서 그 효과를 분석하였는데 수출지향적 기업, 신생 기업 혹은 소규모 기업일수록 해외 조세 감면 정책의 효과가 크게 나타난다고 설명하였다.

한편 Mintz and Tsiopoulos(1992), Bond and Sameulson(1986), Collins and Shackelfold(1995), Magati(1999) 등은 해외직접투자의 유치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조세수단에 대해 분석했다. 모든 기업들에 대해 법인세율을 인하하는 방법, 선별적인 접근을 통한 tax incentive schemes 혹은 tax heaven zone 등 해외직접투자의 유치를 위해 법인세율을 낮출 수 있는 옵션들에 대해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차별성과 기여도) 본 연구는 기존연구와 달리 투자 유입국의 법인세 정책이 아니라 투자 유출국의 법인세 정책이 해당 국가 기업들의 해외직접투자에 미치는 영향과 이에 따라 해당 국가 내 고용에 파급되는 효과를 분석하는 데 그 차별성과 기여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해외직접투자 유치국 측면

에서 법인세 정책의 효과를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해외직접투자를 하는 기업들의 본국 측면에서 법인세 정책의 효과를 분석한다. 현재까지 법인세 정책의 효과에 대해 투자 유치국 입장에서 분석한 연구가 많은 수준으로 이루어져 왔지만 투자 본국 입장에서 분석한 연구는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 나아가 본 연구는 기존연구와 달리 법인세 정책이 해외직접투자자에 미치는 영향뿐만 아니라 해외직접투자를 매개로 하여 국내 고용에 미치는 영향도 분석한다는 데 또한 차별성을 가진다.

또한 본 연구에서 aggregate-level이 아닌 firm-level 자료를 실증분석에 이용한다는 것은 기존연구와 차별화된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제조업을 중심으로 법인세 정책의 해외직접투자자에 대한 효과를 기업별로 분석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법인세 정책에 따른 법인세 부담을 기업별로 측정하기 위해 평균실효세율과 한계실효세율을 기업별로 각각 추정하는데 이 또한 기존 문헌에 기여하는 점이 될 수 있겠다.

(연구의 구성)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바로 다음 장에서는 우리나라의 법인세 부담이 우리나라 기업들의 해외직접투자와 국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방법론을 논의하고 자료를 소개한다. 우선 법인세 부담과 해외직접투자 및 고용 간 관계에 대한 회귀분석모형을 구축한 후, 법인세 부담을 측정하는 지표로서 평균실효세율과 한계실효세율의 개념을 설명하고 추정하는 방법에 대해 논의한다. 그리고 회귀분석에 사용될 분석자료를 개괄적으로 보여주며 이후 분석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제3장에서는 구체적인 회귀분석에 앞서 주요 설명변

수로서 평균 및 한계실효세율과 종속변수로서 기업들의 해외직접투자 및 국내 고용의 변화 추이에 대해 살펴보고 이에 관해 논의한다. 제4장에서는 본 연구의 주요 결과로서 법인세 부담의 해외직접투자·국내 고용에 대한 효과를 평균실효세율과 한계실효세율로 구분하여 도출한다. 마지막으로 제5장은 본 연구의 결과를 정리하며 이로부터의 시사점과 본 연구의 한계를 제시한다.

법인세 정책의 해외직접투자자와 국내고용에 대한 효과 분석 연구

제Ⅱ장 분석방법 및 자료



2.1. 회귀분석모형의 구축

서론에서 설명하였듯이 법인세 정책과 해외직접투자에 관련된 대부분의 연구는 투자 유치국의 법인세 감면 정책이 해외직접투자 유입의 결정 요인으로서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갖는지에 대한 분석이 주를 이루고 있으나 법인세 정책과 해외직접투자 유출 간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는 많지 않다. 법인세율 관점에서 국내기업의 해외직접투자 유인을 분석한 대부분의 선행연구들도 다국적 기업이 해외생산 입지를 결정함에 있어서 해당 국가의 세후수익률이 기업의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분석이 주를 이루는 가운데 자국의 법인세율과 해외직접투자와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는 부족한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법인세 정책이 해외직접투자와 국내 고용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는 데에 있어서 국내 법인세율이 해외직접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먼저 분석한 후 해외직접투자가 국내 고용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법인세율과 해외직접투자와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중력방정식(gravity equation) 모형을 이용하기로 한다. 원래 중력방정식 모형은 두 국가의 무역규모를 추정하는데 쓰이는 모형으로서 경제규모와 두 국가 간의 물리적 거리에 따라서 무역규모가 어떤 영향을 받는지 분석하는 데에 사용되고 있다. 기존 선행연구들이 중력방정식 모형에 의거하여 두 국

가 간의 수출입 규모가 경제규모 및 물리적 거리에 어떤 영향을 받는지에 대하여 분석하였다면 최근에는 중력방정식 모형을 응용하여 두 국가 간의 투자규모가 경제 규모 및 경제개방정도, 관세율, 혹은 국가 간의 무역 및 투자 자유화에 의해 어떤 영향을 받는지에 대한 연구들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문종철·윤정현(2011)). 특히, 한국의 법인세 정책이 해외직접투자 유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국내 대표적인 연구로서 이만우, 김진배, 양대천(2008)은 중력방정식(gravity equation) 모형을 이용하여 법인세율이 해외직접투자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실증 분석하였다. 이들은 기존 중력방정식 모형을 응용하여 국가 간의 경제 규모와 물리적 거리, 상대적 물가지수 등의 요소를 통제된 상태에서 한국과 타국의 법인세율의 차이가 국내기업의 해외진출과 해외직접투자액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국가별 수준에서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기업의 해외직접투자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업, 산업, 투자 대상국가의 특징 요인들을 통제된 상태에서 국내 법인세율이 해외직접투자자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가지는지에 대하여 분석한다. 본 분석에서는 국내 제조 산업에 종사하는 KOSPI 상장 기업의 패널 자료와 해외 자회사 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법인세율과 해외직접투자자와의 관계를 기업별 수준과 자회사별 수준에서 분석한다. 해외투자를 하는 기업들의 해외직접투자자와 법인세율을 포함한 회귀방정식은 아래 식과 같다.

$$FDI_{jt} = \alpha_0 + \alpha_1 Tax_{jt} + \alpha_2 Prod_{jt} + \alpha_3 KLratio_{jt} + \alpha_4 RDint_{jt} + \mu_j + \tau_t + \epsilon_{jt} \quad \text{식(2-1)}$$

여기서 FDI_{jt} 는 한국의 j 기업에 대한 t 년도 해외직접투자로서 본 장에서는 종속변수인 해외직접투자를 나타내기 위해 i) j 기업에서 t 년도에 해외로 투자한 총금액과 ii) j 기업에서 t 년도에 해외에 새롭게 건설한 총자회사의 수를 사용한다. Tax_{jt} 는 t 년도에 j 기업에 부과된 법인세율로서 평균실효세율과 한계실효세율을 기업별로 추정하여 사용한다. $Prod_{jt}$ 는 t 년도의 j 기업 노동 생산성으로서 한국은행 정의에 따라 경상이익, 인건비, 순금융비용, 임차료, 조세공과, 그리고 감가상각비를 합산하여 산출된 부가가치금액을 종업원수로 나눈 종업원 1인당 부가가치로 사용한다. $KLratio_{jt}$ 는 t 년도 j 기업의 자본화 비율로서 기업의 기계장치공구기구 연말잔액과 차량운반구 연말잔액을 합산하여 종업원 수로 나눈 값을 사용하였다. $RDint_{jt}$ 은 j 기업의 t 년도 R&D 집중도로서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에 따라 판매비와 관리비의 경상개발비 및 경상연구개발비와 제조원가의 연구개발비를 합산한 금액을 총매출액으로 나눈 값을 사용한다. 이외 μ_j 와 τ_t 는 각각 시간에 따라 변화하지 않고 관측되지 않는 기업이 속한 산업의 특성과 기업 및 산업에 따라 변화하지 않고 관측되지 않는 시간 특성을 의미하며, ϵ_{jt} 는 오차항으로서 독립동일분포(independent and identically distributed)를 따르는 확률변수 $\epsilon_{kjt} \sim i.i.d.(0, \sigma_\epsilon^2)$ 라고 가정한다.

식(2-1)에서 Tax_{jt} 의 회귀계수가 양(+)의 값을 가진다는 것은 기업에 부과되는 법인세율이 높을수록 그 기업의 해외직접투자는 증가한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른 기업 특징을 나타내는 설명변수의 경우 기업의 노동생산성을 나타내는 $Prod_{jt}$ 는 생산성이 높은 기업일수록 해외직접투자를 많이 할 것이라는 선행연구(Helpman et al.(2004); Aw and Lee(2008))들의 결과에 의거하여 해외직접투자자와 양의 상관관계를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기업의 자본화비율과 연구개발투자 집중도를 나타내는 $KLratio_{jt}$ 와 $Rdint_{jt}$ 는 종속변수와의 상관관계를 예상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이는 기업별 수준 분석에서의 해외직접투자는 기업의 연도별 총 해외투자금액과 새로 설립된 총 자회사 수로 나타나기 때문에 실증 분석에서 투자 대상국의 특징을 나타내는 변수들을 사용할 수 없는 반면 자본화비율과 연구개발투자 집약도가 해외직접투자에 미치는 영향은 해외직접투자의 성격과 투자 대상국의 특징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기존 해외직접투자의 결정요인에 대해 분석한 선행연구에 의하면 자본집약적 혹은 연구개발투자 비중이 높은 산업의 경우 본국과 기술수준이 비슷한 국가로 현지판매를 목적으로 공장을 설립하는 수평적 해외직접투자(horizontal FDI)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반대로 산업이 노동집약적이거나 연구개발투자 비중이 낮을수록 본국과 기술수준의 차이가 큰 국가로 생산비 절감을 목적으로 현지에 생산 공장을 세운 후 다시 국내로 수입하는 수직적 해외직접투자(vertical FDI)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기업의 해외직접투자는 기업 및 산업의 고유한 특징뿐만 아니라 투자 대상국의 특징에 의해서도 큰 영향을 받는다. 이는 중력방정식 모형을 사용하여 해외직접투자의 결정요인을 분석했던 선행연구들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 이에 의하면 투자 대상국의 경제 규모가 크거나 운반비용이 클수록 본국에서의 해외직접투자는 증가한다. 하지만 식(2-1)의 기업별 수준 분석에서는 개별 기업의 해외투자를 총량 개념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투자 대상국의 고유한 특징을 통제할 수 없다. 따라서 본 분석에서는 국내 상장기업들의 해외 자회사 데이터를 사용하여 기업 및 투자 대상국의 특징을 통제할 수 있다. 국내 법인세율이 해외직접투자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할 수 없다. 따라서 본 분석에서는 국내 상장기업들의 해외 자회사 데이터를 사용하여 기업 및 투자 대상국의 특징을 통제할 수 있다. 중력방정식 모형을 응용하여 법인세율을 포함한 회귀방정식은 아래와 같다.

$$\begin{aligned}
 FDI_{jkt} = & \beta_0 + \beta_1 Tax_{jt} + \beta_2 Prod_{jt} + \beta_3 KLratio_{jt} \\
 & + \beta_4 RDint_{jt} + \beta_5 GDP_{kt} + \beta_6 Dist_k \\
 & + \beta_7 Tele_{kt} + \beta_8 Exch_{kt} + \beta_9 Tariff_{kt} + \beta_{10} FTax_{kjt} + v_{jkt}
 \end{aligned}
 \tag{2-2}$$

여기서 FDI_{jkt} 는 k 국가에 위치한 j 자회사에 대한 t 년도 해외 직접투자로서 기업별 수준 분석과 동일하게 모기업으로부터 j 자회사에 투자된 금액을 사용하여 기업의 해외직접투자가 다른 설명변수들에 어떠한 영향을 받는지 분석하기로 한다. Tax_{jt} 는 t 년도 j 자회사의 모기업에게 부과되는 국내 법인세율로서 평균

실효세율과 한계실효세율로 계산하여 사용한다. $Prod_{jt}$ 는 t 년도 j 자회사의 모기업 노동생산성으로서 종업원 1인당 부가가치로 사용하며 $KLratio_{jt}$ 는 t 년도 j 자회사의 모기업 자본화 비율, $Rdint_{jt}$ 는 t 년도 j 자회사의 모기업 연구개발투자 집중도를 나타낸다.

자회사가 위치한 투자 대상국의 고유한 특징을 나타내는 변수들로는 투자 대상국 k 의 t 년도 경제규모를 나타내는 GDP_{kt} , 투자 대상국과 한국과의 물리적 거리를 나타내는 $Dist_k$, 대상국가의 t 년도 인프라수준을 나타내는 $Tele_{kt}$ 를 포함한다.²⁾ $Exch_{kt}$ 는 원화에 대한 각국 통화의 환율로서 대미국 달러 명목 환율을 구한 다음, 이를 원·달러 환율로 나누어 원화에 대한 각국 통화의 명목환율을 계산한 후 각국의 GDP deflator를 이용하여 원화에 대한 각국 통화의 실질환율로 계산한다. $Tariff_{kt}$ 는 본국으로부터의 운반비용을 의미하는 k 국의 수입관세율을 나타내며 $FTax_{jkt}$ 는 j 자회사가 k 국가로부터 t 년도에 부과되는 해외법인세율로서 평균실효세율로 계산한다. $\nu_{jkt} = \mu_j + \lambda_k + \tau_t + \epsilon_{jkt}$ 로 μ_j 와 λ_k 는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고 관측되지 않는 자회사의 모기업과 국가의 특성이며, τ_t 는 기업 및 투자 대상국가에 따라 변하지 않고 관측되지 않는 시간특성이다. ϵ_{jkt} 는 오차항으로서 독립동일분포(independent and identically distributed)를

2) $Tele_{kt}$ 는 k 국가의 t 년도 인프라수준을 나타내는 변수로서 본 분석에서는 Antras et al.(2008)의 방법을 이용하여 k 국가의 t 년도 100명당 전화 사용자수, 모바일폰 사용자수, 인터넷 사용자수와 컴퓨터 사용자수의 단순 평균으로 계산한다.

따르는 확률변수 $\epsilon_{kjt} \sim i.i.d.(0, \sigma_\epsilon^2)$ 로 가정한다.

식(2-2)를 이용하여 β_1 을 추정하게 되면, 국내 법인세율이 기업의 해외직접투자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할 수 있게 된다. 회귀계수 β_1 가 양(+)인 경우 국내 법인세율이 높을수록 기업들의 해외직접투자가 증대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해외직접투자의 결정요인을 분석한 선행연구에 따라 기업 생산성이 높을수록 기업들의 해외직접투자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기업 수준의 분석과 동일하게 기업의 자본화비율 및 연구개발투자 집중도는 해외직접투자 성격과 투자 대상국의 특징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투자 대상국의 특징을 나타내는 변수들의 경우 중력방정식 모형 이론에 따라 대상국가의 *GDP*가 증가할수록, 한국에서부터 거리가 멀수록 기업의 해외직접투자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질환율의 경우 원화에 대한 각국 통화의 환율을 나타낸 것으로서 실질환율의 증가는 투자국의 통화에 대한 원화의 평가절하를 의미하며, 반대로 감소는 원화의 평가절상을 의미한다. 따라서 실질환율의 감소는 기업의 해외직접투자를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투자 대상국의 수입관세율 증가는 본국의 수출 운반비용 증가로 이어지며 기업의 해외직접투자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며 해외 평균실효세율의 경우 기존 해외 법인세율과 해외직접투자와의 관계를 분석한 선행연구들의 결과에 의거하여 투자 대상국의 법인세율이 낮을수록 그 국가로의 해외직접투자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한편, 국내 법인세율로 인한 해외직접투자자 변화가 고용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 먼저 해외직접투자자의 국내 고용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해외직접투자자가 국내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한 선행연구에서는 해외직접투자자로 인한 산업공동화 현상의 존재가 국내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Brainard and Riker(1997), Cuyvers et al.(2005)). 하지만, 산업별·기업별 수준의 데이터를 사용한 최근 연구에서는 투자대상국별, 산업별, 기업별 특성에 따라서 해외직접투자자가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결과를 도출하기도 하였다(Braconier and Ekholm(2000), Castellani and Navaretti(2004), Harrison and McMillan(2006)). 본 분석에서는 이러한 선행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 한국 해외직접투자자와 고용 수준과의 관계를 기업별·자회사별 패널자료에 근거하여 Hausman 테스트 결과에 따라 고정효과(fixed effect) 혹은 임의효과(random effect)모형으로 분석하기로 한다. 실증분석을 위한 기본 모형은 아래 식과 같다.

$$\ln Emp_{jt} = \gamma_0 + \gamma_1 \ln FDI_{jt} + \gamma_2 \ln Wage_{jt} + \mu_j + \tau_t + \epsilon_{jt} \quad \text{식(2-3)}$$

위의 식에서 Emp_{jt} 는 종속변수로서 t 년도 j 기업에서의 총 종사자수를 나타낸다. 임금은 고용 수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유력한 변수임을 고려하여 설명변수로서 t 년도 j 기업에서의 총 급여액인 $Wage_{jt}$ 를 사용한다. FDI_{jt} 는 t 년도에 j 기업에서 이

루어진 해외직접투자를 나타내는 변수로서 해외투자금액으로 사용한다. 시간에 따라 변화하지 않고 관측되지 않는 j 기업이 속한 산업의 특성과 기업 및 산업에 따라 변화하지 않고 관측되지 않는 시간 특성을 통제하기 위해 μ_j 와 τ_t 를 회귀방정식에 첨가하였다. 위의 방정식에서 임금이 높을수록 고용이 많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Wage_{jt}$ 의 회귀계수는 양(+)으로 기대하지만 선행연구들의 다양한 결과처럼 해외직접투자는 그 성격과 상황에 따라 다르게 국내 고용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므로 FDI_{jt} 회귀계수의 방향은 미리 예상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본 분석에서는 해외직접투자와 국내 고용 간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분석했던 선행연구들과 달리 국내 법인세율이 해외직접투자와 국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 즉, 식(2-3)에서 국내 법인세율은 해외직접투자뿐만 아니라 국내 고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해외직접투자 변수와 오차항의 상관계수가 0이 아닐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서는 해외직접투자 결정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설정한 방정식들에서 사용한 설명변수들을 도구변수로 사용하여 2단계 최소자승법(2SLS: Two-Stage Least Square)으로 분석하기로 한다. 즉, 기업별 법인세율이 해외직접투자와 기업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사용될 모형은 recursive(triangular) 형태의 연립방정식 모형이며 그 식은 아래와 같이 표현될 수 있다.

$$\ln Emp_{jt} = \gamma_0 + \gamma_1 \ln FDI_{jt} + \gamma_2 \ln Wage_{jt} + \mu_j + \tau_t + \epsilon_{jt} \quad \text{식(2-4)}$$

$$\begin{aligned}
 FDI_{jt} = & \alpha_0 + \alpha_1 Tax_{jt} + \alpha_2 Prod_{jt} + \alpha_3 KLratio_{jt} \\
 & + \alpha_4 RDint_{jt} + \mu_j + \tau_t + \epsilon_{jt}
 \end{aligned}
 \tag{2-5}$$

반면 자회사 수준의 분석을 통해 기업과 산업 및 투자 대상국의 특징들을 통제된 상황에서 국내 법인세율이 해당 기업의 해외직접투자자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연립방정식은 아래와 같다.

$$\ln Emp_{jt} = \gamma_0 + \gamma_1 \ln FDI_{jt} + \gamma_2 \ln Wage_{jt} + \mu_j + \tau_t + \epsilon_{jt} \tag{2-6}$$

$$\begin{aligned}
 FDI_{jkt} = & \beta_0 + \beta_1 Tax_{jt} + \beta_2 Prod_{jt} + \beta_3 KLratio_{jt} \\
 & + \beta_4 RDint_{jt} + \beta_5 GDP_{kt} + \beta_6 Dist_k \\
 & + \beta_7 Tele_{kt} + \beta_8 Exch_{kt} + \beta_9 Tariff_{kt} + \beta_{10} FTax_{kjt} + v_{jkt}
 \end{aligned}
 \tag{2-7}$$

2단계 최소자승법을 사용하여 분석했을 때 해외직접투자자의 회귀 변수인 γ_1 이 유의한 음(-)의 값을 가진다면 해외직접투자자가 국내 고용에 부정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Sobel(1987)과 Bollen(1989)에서 분석되었던 매개변수(mediation variable)를 통한 종속변수에 대한 설명변수의 간접효과를 계산하여 법인세율이 해외직접투자를 통한 국내 고용에 미치는 간접효과에 대해서 분석하기로 한다. 한편 국내 고용은 설명변수인 임금과 해외직접투자에 의해 일정 기간 후의 시차를 두고 영

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본 분석에서는 해외직접투자자와 국내 고용 간의 관계를 실증 분석했던 현혜정 외 다수(2010)를 참조하여 시차설명변수를 사용하여 별도의 실증 분석을 시행하기로 한다.

2.2. 평균 및 한계실효세율의 추정

법인세 부담이 투자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우선 법인세 부담을 나타내는 지표의 측정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기업별 법인세 부담은 평균실효세율과 한계실효세율로 추정하여 사용한다. 평균실효세율에 비하면 한계실효세율은 기본적으로 법정세율, 감가상각제도, 투자세액공제제도 등 세법이 규정하고 있는 사항들에 의해 결정되어지는데, 일반적으로 가용한 자료의 제약으로 추정이 쉽지 않다.

2.2.1. 평균실효세율

평균실효세율(average effective tax rate)은 일정하게 규정된 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부액의 비율로 정의된다. 본 연구에서는 김현숙(2004.08), 김우철(2007.08)에 따라 평균실효세율을 손익계산서상 법인세차감전순이익 대비 법인세비용으로 추정한다.

보다 엄밀한 의미에서 평균실효세율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본 연구에서 사용한 기업회계자료가 아니라 세무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기업의 소득으로서 손익계산서상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으로, 각 기업의 법인세로서 손익계산서상 법인세비용은 법인세법상 법인세 결정세액으로 대비되어, 평균실효세율을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대비 법인세 결정세액으로 추정할 수 있다.³⁾ 그러나

각 기업의 소득으로서 손익계산서상 법인세차감전순이익과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그리고 각 기업의 법인세로서 손익계산서상 법인세비용과 법인세법상 법인세 결정세액은 서로 차이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기업회계자료를 바탕으로 추정된 평균실효세율과 세무자료를 이용하여 추정된 평균실효세율 간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이 같이 평균실효세율을 보다 엄밀하게 추정하려면 국세청으로부터 개별 기업들의 세무자료를 제공받아야 하는 한계로 인해 본 연구에서는 기업회계자료를 이용하여 평균실효세율을 구한다.

2.2.2. 한계실효세율

1) 한계실효세율의 정의

한계실효세율(marginal effective tax rate)은 한 단위의 투자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에 대한 세율을 의미하며, 발생하는 수익에서 투자자에게 귀속되지 않고 정부로 귀속되는 부분의 비율로서 정의된다. 이러한 한계실효세율은 자금조달이나 투자 등의 기업행동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매우 유용한 지표로 활용되고 있는 자본의 사용자 비용(user cost of capital)의 개념을 이용함으로써 도출된다. 자본의 사용자 비용은 자본재의 임대가격(rental price of capital) 또는 자본서비스 가격이라고 하는데 추

3)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은 손익계산서상 수익과 유사한 익금(=익금산입-익금불산입)에서 손익계산서상 비용과 유사한 손금(=손금산입-손금불산입)으로 차감하여 계산되며 이와 같은 과정을 세무조정이라 한다.

가적인 자본 한 단위의 사용에 대해 지불되는 비용이다.

본 연구에서는 Jorgenson(1963), Hall and Jorgenson(1967.06), 이를 응용한 윤건영(1988.03)에서 도출한 자본의 사용자 비용을 적용한다. 한편 Gravelle(1994, 2001), 이를 원용한 김학수(2009.07) 등의 기존문헌은 자본비용과 관련한 모형에서 주주에 대한 과세 문제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

〈표 2-1〉와 같이 투자 1원당 자본의 사용자 비용(c)은 기업의 주식가치 극대화 문제를 풀어줌으로써 얻게 된다. 식(2-9)는 생산자 균형에서 자본의 한계생산물가치와 자본의 사용자 비용이 일치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즉, 투자 한 단위의 추가에 따른 생산물가치의 증가분과 비용의 증가분이 같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본의 사용자 비용(c) 식(2-9)는 감가상각액의 현재가치(Z) 식(2-10), 투자자들의 자본에 대한 요구수익률(ρ) 식(2-11)에 의존한다. 감가상각액의 현재가치(Z)는 정액법 또는 정률법의 사용에 따라 일시상각 및 특별상각이 없는 일반상각의 경우를 나타내고 있다. 자본에 대한 요구수익률(ρ)는 법인세후 투자 할인율로서 자기자본에 대한 요구수익률(ρ^e)과 타인자본에 대한 요구수익률(ρ^d)의 가중평균(Weighted Average Cost of Capital; WACC)으로 나타난다.

이 같은 자본의 사용자 비용을 이용하여 한계실효세율을 Jorgenson and Sullivan(1981)에서 정의된 개념에 기초하여 추정하기로 한다. 이 같은 한계실효세율은 곽태원(1985.09), Gordon, Kalambokidis, Slemrod(2003.03), Gruber and Rauh(2007), 김학

수(2009.07)에서 사용된 것과 유사하다. 자본의 사회적 수익률을

$$\rho^s \equiv \frac{p \frac{\partial F(K, L)}{\partial K}}{q} - \delta \text{라고 한다면 한계실효세율}(e) \text{는 } (1 - e)\rho^s = \rho$$

를 만족하는 것으로 정의되며 식(2-8)과 같아진다.

끝으로 Gruber and Rauh(2007)와 이를 원용한 김학수(2009.07)에 따라 각 개별 기업에 대한 한계실효세율은 해당 기업의 자본 구조를 반영하여 각 유형별 자본재에 대한 한계실효세율을 추정 한 후, 유형별 자본재 비중으로 가중평균해서 추정한다.

<표 2-1> 한계실효세율(e)

$$\begin{aligned} e &= 1 - \frac{\rho}{\rho^s} \\ &= 1 - \left(\frac{\rho}{\frac{p \frac{\partial F(K, L)}{\partial K}}{q} - \delta} \right) \end{aligned} \quad \text{식(2-8)}$$

$$\frac{p \frac{\partial F(K, L)}{\partial K}}{q} = \frac{1 - ITC - \tau_i^c Z}{1 - \tau_i^c} (\rho + \delta) \equiv c \quad \text{식(2-9)}$$

$$Z = \begin{cases} \frac{d}{\rho + \pi} \left\{ 1 - \left(\frac{1}{1 + \rho + \pi} \right)^T \right\}, & 1 - dT = g \text{ (정액법)} \\ \frac{d}{d + \rho + \pi} \left\{ 1 - \left(\frac{1 - d}{1 + \rho + \pi} \right)^T \right\}, & (1 - d)^T = g \text{ (정률법)} \end{cases} \quad \text{식(2-10)}$$

$$\begin{aligned} \rho &\equiv \frac{r^e - (1 - \tau^g)\pi}{1 - \tau^p \alpha - \tau^g (1 - \alpha)} (1 - \beta) + ((1 - \tau_i^c)r^d - \pi)\beta \\ &= \rho^e (1 - \beta) + \rho^d \beta \end{aligned} \quad \text{식(2-11)}$$

<표 2-2> 표기(Notation)

| | |
|---|--------------|
| e : 한계실효세율 | F : 생산기술 |
| c : 투자 1원당 자본의 사용자 비용 | K : 자본량 |
| ρ : 투자자들의 자본에 대한 요구수익률 (법인세후 투자할인율) | L : 노동량 |
| ρ^e : 자기자본에 대한 요구수익률 | p : 소비재 가격 |
| ρ^d : 타인자본에 대한 요구수익률 | q : 자본재 가격 |
| ρ^s : 자본의 사회적 수익률 | t : 시간 |

| 경제적 모수 | 세법상 모수 |
|--------------------------|---------------------|
| r^e : 주식수익률 | τ_i^e : 한계법인세율 |
| r^d : 이자율 or 회사채수익률 | τ^p : 한계소득세율 |
| δ : 경제적 감가상각율 | τ^d : 자본이득세율 |
| π : 물가상승률 | Z : 감가상각액의 현재가치 |
| α : 배당성향 | d : 법정 감가상각율 |
| β : 총자본 중 타인자본의 비중 | T : 내용연수(상각기간) |
| | g : 잔가율 |
| | ITC : 투자세액공제율 |

2) 모수 측정

앞에서 식(2-8)~식(2-11)로 정의된 한계실효세율을 이용하여 1985~2013년 기간 우리나라의 경제 및 조세 환경 하에서 장기 시계열 자료로서 한계실효세율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한계 실효세율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 모수들과 세법상 모수들의

측정이 필요하다. <표 2-2>에서처럼 경제적 모수로는 주식수익률(r^e), 이자율(r^d), 경제적 감가상각율(δ), 물가상승률(π), 배당성향(α), 총자본 중 타인자본의 비중(β) 등이 있다. 세법상 모수로는 한계법인세율(τ_i^e), 한계소득세율(τ^p), 자본이득세율(τ^d), 감가상각액의 현재가치(Z), 투자세액공제율(ITC) 등이 있다. 이러한 모수들은 다음과 같이 측정된다.

A. 경제적 모수

A-1. 주식수익률(r^e): 김학수(2009.07)에 따라 주식수익률은 모든 기업에 대해 무위험채권수익률에 주식프리미엄(equity premium)을 더한 값을 적용한다. 무위험채권수익률은 통안증권 1년물 이자율을 사용한다. 강민우(2008.12)는 주식프리미엄을 상장·등록된 기업에 대해 전체 분석기간(1987.01~2008.03) 동안 5.43%, 외환위기 이후(2000.01~2008.03) 동안 6.38%로 추정하였다. 본 연구의 주식프리미엄 값은 강민우(2008.12)에서 전체 분석기간(1987.01~2008.03) 동안 추정된 값을 사용한다.

A-2. 이자율(r^d): 김학수(2009.07)에 따라 이자율은 회사채 AA- 등급 3년 만기 이자율을 적용한다.

A-3. 경제적 감가상각율(δ): 우리나라 실물자산의 경제적 감가상각율에 대한 연구는 흔치 않고, 소수의 연구가 있어도 모든 자산의 종류를 포괄하고 있지 않다. 현진권(1996.08)은 우리나라

라의 기계장치, 선박, 차량운반구 등에 대해서는 경제적 감가상각률을 추정하였으나, 건물 및 구축물 등에 대해서는 추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경제적 감가상각율은 미국의 경우와 동일하다는 가정 하에서 곽태원(1985.09)이 제시한 자산 및 산업부문 분류에 따른 Hulten-Wyckoff의 경제적 감가상각율을 이용한다. <부표 1>에서 본 연구의 분석대상 자산 및 산업분류와 <부표 2>에서 곽태원(1985.09)의 자산 및 산업부문 분류를 연계하고, <부표 3>에서 Hulten-Wyckoff의 추정치로부터 <부표 4>에서 경제적 감가상각율을 도출한다.

A-4. 물가상승률(π): 물가상승률은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으로부터 소비자물가지수(2010=100, 전국)의 전기 대비 증감률을 적용한다.

A-5. 배당성향(α): 기업별 배당성향은 나이스평가정보로부터 제공받은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상 배당금과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을 이용하여 '배당금/당기순이익'으로 계산한 값을 사용한다.

A-6. 총자본 중 타인자본의 비중(β): 기업별 총자본 중 타인자본의 비중은 나이스평가정보로부터 제공받은 대차대조표상 부채총계와 자산총계를 이용하여 '부채총계/자산총계'로 계산한 값을 이용한다.

B. 세법상 모수

B-1. 한계법인세율(τ_i^c): 개별 기업에 대한 한계법인세율은 <부표 5>에서 정리된 내용을 바탕으로 중소기업의 경우에 최저세율, 그 외 기업의 경우에 최고세율을 적용하고 지방세를 포함한다.

B-2. 한계소득세율(τ^p): 소득세법은 연간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일정한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할 경우에 금융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다. 따라서 배당소득에 대한 한계소득세율은 <부표 6>에서 종합소득세 최고세율과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고 지방세를 포함한다. 종합소득세 최고세율과 원천징수세율은 <표 2-3>와 같이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금액 및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 현황을 바탕으로 계산한 2006~2011년 기간 평균 종합소득 비중과 원천징수소득 비중을 각각 반영하여 적용한다.

<표 2-3>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금액 및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 현황
(단위: 백만 원)

| | 종합소득금액 신고 |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 | 종합소득 비중 | 원천징수소득 비중 |
|------|-----------|--------------|---------|-----------|
| | A | B | A/B | (B-A)/B |
| 2006 | 4,673,717 | 10,691,591 | 0.44 | 0.56 |
| 2007 | 6,276,185 | 15,188,308 | 0.41 | 0.59 |
| 2008 | 5,775,719 | 15,136,322 | 0.38 | 0.62 |
| 2009 | 5,416,004 | 12,868,855 | 0.42 | 0.58 |
| 2010 | 7,201,171 | 14,402,516 | 0.50 | 0.50 |
| 2011 | 7,472,907 | 14,737,384 | 0.51 | 0.49 |
| 평균 | 6,135,951 | 13,837,496 | 0.44 | 0.56 |

자료: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B-3. 자본이득세율(r^d): 주식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상장주식은 대주주가 양도하거나 장외에서 양도할 경우를 제외하면 비과세되나, 비상장주식은 양도할 경우 과세된다. 본 연구의 분석대상이 상장기업이며, 전체 주주에서 대주주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낮다는 점을 고려하여 자본이득세율은 0%로 적용한다.

B-4. 감가상각액의 현재가치(Z): 감가상각액의 현재가치를 구하기 위해서는 개별 기업들이 관할세무서에 신고한 감가상각방법과 내용연수가 요구되지만 이를 알 수가 없다. 따라서 <표 2-4>에서 신고하지 않는 경우를 적용하여 건물과 구축물은 전체 분석기간 중 1983~1998년에 대해 정율법, 1999~2013년에 대해 정액법으로 상각한다. 그리고 기계장치, 시설장치, 선박/항공기, 차량운반구, 공구와기구, 비품, 금형, 기타유형자산은 전체 분석기간에 대해 정율법으로 상각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은 공통자산과 이외의 사업별, 업종별 자산에 대한 기준내용연수(T)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기준내용연수는 현재까지 많은 부분 개정되어 왔다. <부표 1>에서 본 연구의 분석대상 자산 중 건물, 구축물, 선박항공기, 차량운반구, 공구와기구, 비품 등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상 공통자산 분류와 연계하여 <부표 7>과 같이 평균 기준내용연수를 구하였다. 그리고 <부표 1>에서 공통자산 이외의 자산으로서 기계장치, 시설장치, 금형, 기타유형자산에 대해서는 본 연구의 분석대상 산업분류와 법인세

법상 사업·업종 분류를 연계하여 <부표 8>과 같이 평균 기준내 용연수를 계산하였다. 또한 법인세법 시행규칙에서 잔가율(g)은 정액법의 경우 전체 분석기간에 대해 0%이고, 정률법의 경우 1985~1994년에 대해 10%, 1995~2013년에 대해 5%이다. 한편 법인세법 시행령은 잔존가액의 상각 허용 여부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무시하기로 한다. 끝으로 법정감가상각율(d)는 기준 내용연수와 잔가율에 의해 결정된다.

<표 2-4> 감가상각방법

| 구분 | | 1983~1994 | 1995~1998 | 1999~2014 |
|--------------------|------------|---------------------------------|-----------|-----------|
| 건축물 | 신고하는 경우 | 정률법 또는 정액법 | 정액법 | |
| | 신고하지 않는 경우 | 정률법 | | 정액법 |
| 기타유형 고정자산 (광업용 자산) | 신고하는 경우 | 정률법 또는 정액법 (생산량비례법, 정률법 또는 정액법) | | |
| | 신고하지 않는 경우 | 정률법 (생산량비례법) | | |
| 무형 고정자산 | 신고하는 경우 | 정액법 | | |
| | 신고하지 않는 경우 | 정액법 | | |
| 광업권 | 신고하는 경우 | 생산량비례법 또는 정액법 | | |
| | 신고하지 않는 경우 | 생산량비례법 | | |

B-5. 투자세액공제율(ITC): 임시투자세액공제율을 대표적인 투자세액공제율로 적용한다. 본래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는 경기조절을 목적으로 한시적 운영을 위해 도입되었으나, 그 취지에 부합하지 않게 과거 몇 해를 제외하면 거의 전적으로 운영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다른 투자세액공제제도에 비해 임

시투자세액공제제도는 일반적인 설비투자를 대상으로 하고 법인세 조세지출에서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본 연구의 분석대상 기업들에 포괄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부표 9>의 2010년 투자 관련 조세지원 현황에서 기업들이 적용받을 수 있는 여타의 조세지원제도에 비해 임시투자세액공제의 법인세 감면 실적이 차지하는 비중은 현저히 크게 나타났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2항은 투자세액공제의 중복지원을 배제하기 위해 여러 가지 투자세액공제제도가 적용되면 하나만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부표 10>에서 제시된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변천을 바탕으로 대·중소기업별, 산업별로 구분하고 적용 가능한 임시투자세액공제율의 범위에서 중간값을 적용한다. 따라서 투자의 유형, 국산·수입산, 수도권·비수도권, 고용증가 여부 등을 구분하여 적용하지 못해 공제율을 과대평가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

2.3. 분석자료

앞 절에서 설정한 회귀방정식들을 추정하기 위해서 본 분석에서는 기업별 수준의 데이터와 해외 자회사별 수준의 데이터를 사용하기로 한다. 기업의 해외직접투자를 나타내는 해외투자액과 총 해외 자회사 수는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집계되는 해외투자통계 자료를 사용하였다. 이 통계자료는 해외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한국 자회사들의 정보를 집계한 것으로서 국가별·모기업별로 분류되어 있다. 해외투자통계자료 안에는 2002년부터 2011년까지 98개국에 대해서 국내 기업으로부터 해외 자회사로 이루어진 투자 실적이 반영되어 있으며 개별 자회사의 재무정보와 손익·비용 정보, 법인세전손익 및 법인세비용 등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개별 자회사의 모기업을 식별할 수 있기 때문에 별도의 모기업 수준 분석(회귀방정식 (2-1))을 위해서는 한국신용평가정보에서 집계한 기업 데이터를 연계시켜서 사용하였다. 기업별 수준의 분석에서 사용되는 KISLINE 데이터베이스는 1985년부터 2013년까지 각 연도마다 해당되는 상장 기업들의 정보를 집계한 자료로서 약 2,700개의 상장 기업들의 재무제표, 손익계산서, 제조원가명세서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5단위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Korea Standard Industrial Classification) 기준으로 496개의 산업으로 분류되어 있다. 본 분석에서는 모기업과 해외 자회사를 연계시키기 위해 분석 기간을 2002년부터

2011년 사이의 각 연도 말 기준으로 KOSPI와 KOSDAQ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과 그들의 해외 자회사들을 포함시키기로 한다. 또한 국내 법인세율의 순수 해외투자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제조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상장기업들과 그들의 해외 자회사들을 대상으로 분석하기로 한다.

투자 대상국의 특징을 나타내기 위해 필요한 GDP, 인프라 수준, 환율 자료는 모두 World Bank의 World Development Indicators(WDI) 2013를 통하여 수집하였다. 이 중 GDP는 2005년 기준 불변가격으로 나타낸 실질 개념의 GDP이며 인프라 수준은 각국의 100명당 전화, 모바일폰, 인터넷, 컴퓨터 사용자수를 이용하여 단순평균으로 계산한 것이다. 한편 WDI에는 한국의 투자 대상국인 대만,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미얀마, 시리아, 뉴칼레도니아, 괌, 케이만군도, 북마리아나 제도에 대한 자료가 존재하지 않아 이들 국가는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특히 WDI에 분석 자료가 존재하고 한국의 제조 산업으로부터 해외직접투자 유입이 있는 국가들 중에서 OECD에서 분석한 조세피난처 국가 리스트(OECD, Towards Global Tax Competition)를 참조하여 조세피난처로 분류된 바레인, 버뮤다, 파나마, 사모아 등의 국가들은 분석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투자 대상국과 한국과의 물리적 거리는 CEPII(Research Centre for International Economics)에서 계산한 각 국가의 수도 간의 거리를 사용하였다. 한편 관세율 자료는 실효실질관세율(The effectively applied tariff rate)로서 World Integrated Trade Solution(WITS)에서 구하였다. 이상의 방법으로 도출한 변수들의 기초통계량은 아래의 표와 같다.

<표 2-5> 주요변수에 대한 기술통계량

| 변수 | 평균 | 표준편차 | 최소값 | 최대값 |
|--------------------|-------|-------|--------|-------|
| 해외투자금액 (기업별) | 16.37 | 1.73 | 0 | 22.72 |
| 자회사 수 (기업별) | 0.961 | 1.76 | 0 | 36 |
| 총 종사자수 | 6.161 | 1.562 | 0 | 11.53 |
| 평균실효세율 | 0.217 | 0.115 | 0 | 0.893 |
| 한계실효세율 | 0.034 | 0.098 | -0.654 | 0.223 |
| 노동생산성 | 9.059 | 1.882 | -1.619 | 16.17 |
| 임금 | 15.73 | 1.62 | 8.59 | 21.5 |
| 자본화비율 | 11.84 | 1.269 | -1.349 | 17.22 |
| R&D 집중도 | 0.018 | 0.147 | 0 | 5.631 |
| 해외투자금액 (개별 자회사) | 15.79 | 1.64 | 0 | 22.01 |
| GDP | 27.84 | 1.855 | 18.54 | 30.26 |
| Dist | 7.51 | 1.032 | 6.38 | 9.408 |
| Tele | 3.528 | 0.675 | -1.327 | 4.55 |
| Exch | 1.152 | 3.798 | 0.0003 | 18.6 |
| Tariff | 0.059 | 0.035 | 0 | 0.289 |
| 평균실효세율 (해외 자회사) | 0.218 | 0.124 | 0 | 0.953 |

주: 자회사 수, 기업의 자본화비율 및 R&D 집중도, 법인세율을 제외한 모든 변수들은 자연로그 값으로 표현함.

주요 변수들의 기술통계량을 보여주는 표에서 종속변수인 개별 상장기업의 총 해외직접투자액과 자회사 수는 평균값이 각각 16.37과 0.961로서, 기업의 평균적인 해외직접투자액은 8,250만 달러이며 분석 기간 중 평균적으로 매년 해외에 설립되는 자회사 수는 약 1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자회사로의 해외직접투자액의 평균값은 15.79로서 평균 2,740만 달러가 개별 해외 자회사로 투자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기업의 고유한 특징을 나타내는 노동생산성, 자본화비율, 총 종사자수 등의 주요 변수들의 표준편차의 크기는 해외직접투자를 하는 상장 기

업들 사이에서도 이질적인 특징이 크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유효법인세율을 표본 내 상장 기업들이 부과하는 평균실효세율로 계산했을 때 이상치를 제외한 평균은 21.7%로서 같은 기간 동안 한국의 평균 법정법인세율(28.62%)보다 작은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상치를 포함한 평균 평균실효세율은 14.9%(표준편차: 0.661)이다. 표본 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계실효세율을 추정된 결과 이상치를 제외한 기업의 한계실효세율은 평균 3.4%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 이상치를 포함한 기업의 한계실효세율은 평균 0.4%(표준편차: 0.178)로서 상대적으로 큰 음(-)의 평균실효세율 및 한계실효세율 값을 가지는 상장 기업들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⁴⁾

해외 자회사들에게 부과되는 해외 평균실효세율은 이상치를 제외한 경우 약 21.8%인 것으로 나타나 분석 기간 동안 투자 상대국의 평균실효세율과 한국의 평균실효세율은 평균적으로 비슷한 수준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상치를 포함한 해외 평균실효세율은 약 13.1%(표준편차: 0.507)로서 이상치를 포함한 국내 평균실효세율과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각 투자 대상국가 GDP의 평균은 27.84로, 약 3,520억 달러로서 같은 기간 한국의 평균 GDP가 약 900억 달러임을 감안할 때 경제 규모가 큰 국가로 상장 기업들의 해외투자가 이루어진 것을

4) 한계실효세율과 평균실효세율의 이상치를 제외한 경우 전체 상장 기업의 약 7%가 제거되는 효과를 나타내지만 본 분석에서는 유효법인세율에 미치는 극단치의 영향을 제거하기 위해 이상치의 평균실효세율 및 한계실효세율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을 제외한 나머지 상장 기업들을 대상으로 법인세율이 해외직접투자 및 고용 효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기로 한다.

알 수 있다. 한국에서 각 투자 대상국 간의 거리 평균은 7.51로, 약 2,980km의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 투자 대상국이 한국 수입 품에 대해 부과하는 실효실질관세율은 평균 5.9% 정도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법인세 정책의 해외직접투자와 국내고용에 대한 효과 분석 연구

제III장 우리나라의 최근 법인세 부담과 해외직접투자·국내 고용 변화



3.1. 우리나라의 최근 법인세 부담 변화

〈그림 3-1〉은 2002~2010년 기간 동안 우리나라의 법인세 부담의 변화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전 기업에 대해 법인세 부담을 나타내는 자료로서 평균실효세율과 한계실효세율의 변화 추이는 서로 다르게 나타났다. 평균실효세율은 하락하는 추세에 있으나, 한계실효세율은 상승하는 추세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 기업에 대한 평균실효세율의 단순평균은 2002년에 28.3%에서 등락하며 낮아지다가 2010년에는 20.6%에 이른다.⁵⁾ 이와는 대조적으로 전 기업에 대한 한계실효세율의 단순평균은 2002년 -3.0%에서 등락하며 높아지다가 2010년에는 10.1%에 달한다. 이 같은 추세는 한계실효세율에 큰 영향을 미치는 임시투자세

5) 본 연구에서 추정한 평균실효세율의 값은 기존연구와 비교해 볼 때 유사한 수준이라 할 수 있다. 김우철(2007.08)은 본 연구와 같은 방법으로 평균실효세율을 추정하였는데, 이상치로서 -0.4 이하, 4 이상의 값을 제거하였고, 그 결과(pp. 73의 〈그림 2〉)는 본 연구와 유사하게 평균실효세율이 법인세 법상 최고세율보다 상회하는 경우가 나타났다. 이와 같이 평균실효세율이 법인세법상 최고세율보다 대체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이유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본 연구는 세무자료가 아니라 기업회계자를 이용하여 평균실효세율을 측정하였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평균실효세율의 분모로 들어가는 기업의 소득을 손익계산서상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으로 보았지만, 법인세법은 이와 유사하게 대칭되는 소득으로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으로 볼 수 있다. 손익계산서상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사이에는 법인세법에 의한 익금과 손금에 대한 처리를 하는 세무조정이 있다. 따라서 양자 간에는 차이가 나타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기업회계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한 평균실효세율은 법인세법상 최고세율보다 높게 나타날 수 있다. 또한 기업재무자료에서 흔히 관찰되는 문제로서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이 과소보고된 것이거나 법인세비용이 과다보고될 가능성으로 평균실효세율이 법인세법상 최고세율보다 높게 나타날 수도 있다.

액공제율이 <부표 10>과 같이 2005년 이후 낮은 수준으로 적용되고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여부에 따라 차별적으로 적용되었기 때문이라 여겨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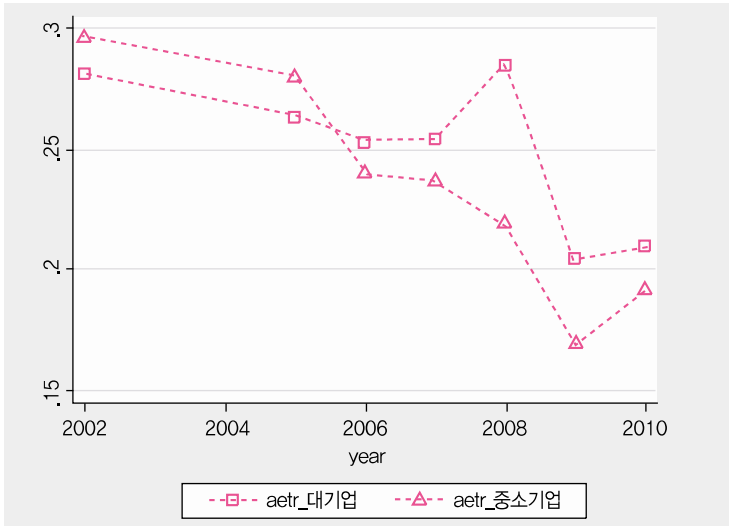
<그림 3-1> 전체 기업의 평균 및 한계실효세율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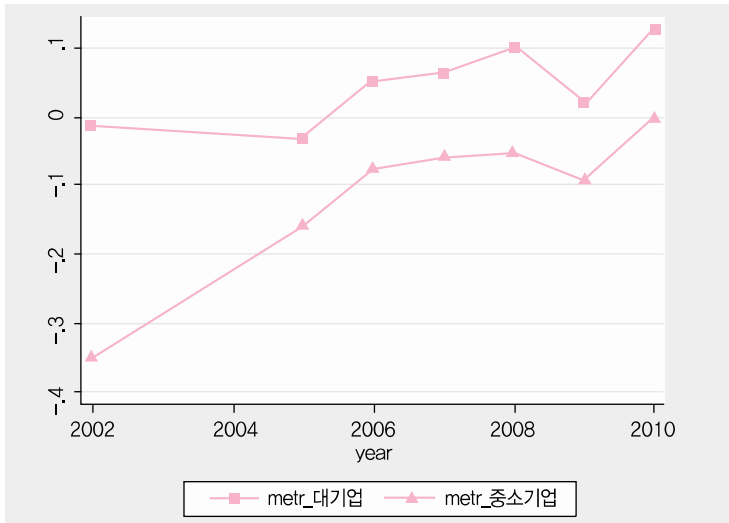
<그림 3-2>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구분하여 기업규모별 평균실효세율과 한계실효세율의 변화 추이를 보여준다. 전 기업의 경우와 유사하게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경우에도 평균실효세율의 단순평균은 하락하는 추세로 나타나는 반면 한계실효세율의 단순평균은 상승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한편 중소기업에 비해 대기업의 법인세 부담이 대체적으로 높게 유지되어 왔다. 평균실효세율의 단순평균은 2002년, 2005년을 제외하면 전 기간 동안 대기업이 중소기업보다 높다. 그리고 한계실효세율의 단순평균은 모두 전 기간에 걸쳐 대기업이 중소기업보다 높다.

<그림 3-2> 대·중소기업별 평균 및 한계실효세율 변화

(평균실효세율)



(한계실효세율)



3.2.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직접투자자과 국내 고용 추이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집계되는 해외법인 데이터에 따르면 국내 상장 기업들의 해외직접투자자는 그 투자액이 2002년부터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보이고 있다. 특히 2011년 상장 기업들의 대세계 해외직접투자액은 약 592억 달러를 기록함으로써 2002년 대비 약 70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분석 기간 중 해외에 설립된 현지법인의 개수는 2003년을 기점으로 증감을 반복하고 있으며 2009년 이후 꾸준하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며 2011년에는 최고치인 429개의 현지법인이 설립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그림 3-3〉 참조).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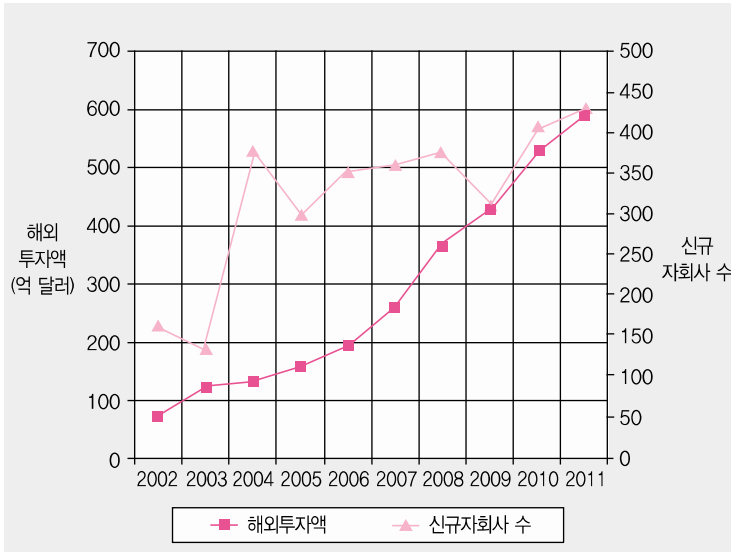
UNCTAD 통계자료에 의하면 한국의 GDP 대비 해외직접투자 비중은 2002년 3.6%에서 2011년 15.37%로 5배 정도 증가하였다. 하지만 이는 2011년 전 세계의 해외직접투자 비중이 30.6%이며 같은 해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 봤을 때 한국의 GDP대비 해외직접투자 비중은 개도국보다는 높은 수준이나 선진국들에 비해서는 여전히 낮은 수준인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인접한 국가들의 GDP대비 해외직접투자 비중의 경우 2011년 중국은 5.9%, 일본은 16.4%, 홍콩은 13.8%를 기록함으로써 한국의 해

6) 이러한 해외직접투자 증가 추세에 대하여 재정경제부(2006, 2007)와 기획재정부(2009)는 세계경제의 호조, 기업의 글로벌 경영전략 및 고유가에 따른 해외 자원개발의 활성화, 정부의 해외직접투자 규제 완화로 인한 해외직접투자 활성화 등이 작용하였기 때문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외직접투자 비중은 일본과 홍콩과 유사하며 중국보다는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그림 3-3> 국내 상장 기업의 대세계 해외직접투자 추이

(단위: 억 달러, 개수)



주: 금액은 오른쪽, 자회사 개수는 왼쪽.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법인 데이터.

<표 3-1>은 국내 상장기업들의 주요 투자국별 해외직접투자 현황을 보여주고 있다. 국내 기업들은 분석기간 동안 평균적으로 약 284억 달러를 해외로 투자하였으며 약 320개의 해외법인들을 설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중 약 75억 달러가 중국으로 투자되었으며 미국으로 약 71억 달러가 투자된 것으로 나타나 미국과 중국으로의 해외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의 51.5%로 매우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새로 설립된 해

외법인들의 수 경우 같은 기간 중국에 약 113개, 미국에 45개가 설립되어 분석 기간 동안 새로 설립된 현지법인들의 약 49%가 미국과 중국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미국과 중국 다음으로 국내 기업들은 홍콩(약 21억 달러), 네덜란드(약 9억 달러), 브라질(약 7.5억 달러), 독일(약 7억 달러) 순으로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최근 5년(2007~2011년) 동안 국내 기업들의 평균 해외직접투자액은 약 434억 달러이고 평균적으로 설립한 자회사의 수는 약 375개로서 최근에 많은 해외직접투자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있다. 투자 대상국별로 보면 중국으로 평균 111억 달러가 투자되었으며 미국으로 약 104억 달러가 투자된 것으로 나타나 여전히 미국과 중국은 국내 기업들의 주된 투자 대상국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최근 5년 동안의 전체 투자액에서 중국과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49.5%로서 여전히 높은 수준임을 보여주고 있다. 새로 설립된 현지법인들 중 미국과 중국에 위치하고 있는 법인들은 약 55개와 122개로서 최근 5년 동안 설립된 법인 수의 4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미국과 중국 이외에 최근 5년 동안 평균적으로 투자가 많이 이루어진 상위 10개국을 살펴보면 먼저 홍콩, 네덜란드, 브라질, 독일, 싱가포르로의 해외직접투자가 꾸준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최근 영국과 독일로의 투자가 정체되거나 감소된 반면 신흥 개발도상국인 베트남, 슬로바키아, 체코, 인도네시아 등으로의 신규투자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과거 기업들의 해외직접투자가 선진국 시장 확

보 및 첨단기술 습득에 주된 목적이 있었다면 최근 기업의 해외 직접투자는 저렴한 생산비용으로 인한 생산 기지 확대 및 기업 내 글로벌 가치 사슬 확대의 목적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국내 상장기업들의 최근 5년 평균 상위 투자국에 포함된 것과 달리 일본은 2007년 이전까지 연도별로 국내 기업의 상위 10대 투자 국가에 포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5년 동안에는 2008년을 제외하고는 한 번도 상위 10대 국가에 포함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아시아의 신흥 개발도상국 중에서도 2000년대 초반 필리핀과 인도네시아로 많은 투자가 이루어진 반면 2000년대 중후반에는 베트남과 말레이시아 등으로 많은 투자가 이루어짐으로써 기업들의 아시아 투자 진출 전략에도 변화가 생겼음을 나타내고 있다.

〈표 3-2〉는 분석 기간 동안 해외직접투자를 하는 상장 기업들이 속한 산업별과 기업별 해외투자금액 현황 및 고용 현황을 보여주고 있다. 산업별 해외투자금액과 고용 현황은 KISLINE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상장기업들이 속한 산업을 업종대분류(KSIC 2단위 분류)로 구별하여 각 산업 내 속한 상장 기업들의 총금액과 총 종사자 수로 계산하였다. 전체 산업별 해외투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제조업 부분에서의 해외투자가 전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 특히 전자부품, 자동차, 화학물질 산업에서의 해외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 세 개의 산업에서의 해외투자가 분석 기간 동안 꾸준히 이루어졌다면 1차 금속과 기타 기계장비 산업에서의 투자는 2007년을 기점으로 급격히 증가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산업 기간비금속 광물제품, 섬유제품, 의복 산업 등 노동집약적인 산업에서의 해외투자와 비교했을 때 한국은 자본집약적인 산업에서의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최근에도 꾸준히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산업별 고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한국의 고용 구조는 자본집약적인 산업 내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전자부품 산업에서의 고용은 매우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으며 시차적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해외투자가 활발한 산업에서 많은 인원수가 고용되고 있으며 자본집약적인 산업에서의 고용이 전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KISLINE 데이터베이스를 근거로 해외투자를 하는 상장기업들을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구분하여 현황을 분석한 결과 두 분류의 기업 모두 평균적인 해외직접투자는 시차적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금액 수치로 봤을 때 대기업의 해외직접투자는 중소기업의 투자보다 평균 약 4~5배 정도 높은 수준이며 기업 당 평균 고용 인원수도 대기업이 중소기업보다 약 6~7배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산업별 고용 추이가 분석기간 동안 각 산업에서 꾸준히 증가했던 것에 반해 기업 평균 고용 인원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정체 상태이거나 감소하는 추세로서 기업별로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표 3-1> 한국의 주요 투자국별 OFDI 현황

(단위: 백만 달러, 투자금액 기준)

| 국 가 | 2002 | 2003 | 2004 | 2005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최근 5년 |
|---------|---------------|----------------|----------------|----------------|----------------|----------------|----------------|----------------|----------------|----------------|--------------------|
| 네덜란드 | 1774(3) | 31.2(0) | 32.7(1) | 44.5(1) | 95.6(3) | 650.9(6) | 1087(4) | 1233(5) | 2002(7) | 2072(2) | 1409(4.8) |
| 독일 | 239.5(6) | 394.8(7) | 570.3(10) | 570.2(6) | 577.1(8) | 513.2(4) | 461.7(7) | 980.9(4) | 1238(4) | 1462(7) | 931.4(5.2) |
| 미국 | 2529(31) | 5653(25) | 4751(50) | 5341(32) | 4854(37) | 5464(50) | 9787(51) | 10978(52) | 12340(60) | 13535(61) | 10421(55) |
| 베트남 | 50.1(5) | 134.8(4) | 133.3(9) | 168.5(13) | 303.3(15) | 735.5(21) | 1046(23) | 1083(17) | 1166(27) | 1411(17) | 1088(21) |
| 브라질 | 80.9(2) | 161.4(2) | 161.4(0) | 265.9(3) | 263.1(1) | 452.8(2) | 381.9(0) | 947.1(3) | 2199(10) | 2596(11) | 1315(5.2) |
| 슬로바키아 | | | 72.5(4) | 282.9(3) | 535.4(6) | 639(3) | 681.8(5) | 722(0) | 714(0) | 730.1(3) | 697.5(2.2) |
| 싱가포르 | 134.5(5) | 283.1(6) | 305.5(6) | 367.4(6) | 445.7(5) | 455.9(5) | 869.9(10) | 820.3(0) | 1402(11) | 1246(7) | 958.9(6.6) |
| 영국 | 199.6(4) | 983.6(6) | 771.4(5) | 444.7(5) | 499.6(5) | 530.2(3) | 591(2) | 624.6(2) | 751.3(9) | 926.3(6) | 684.7(4.4) |
| 오스트레일리아 | 38.7(3) | 127.9(4) | 133.8(5) | 350(3) | 417.9(10) | 437.3(4) | 396.3(3) | 889.7(4) | 1247(7) | 1272(5) | 848.5(4.6) |
| 인도네시아 | 268.8(11) | 386(6) | 308.3(12) | 180(8) | 249.8(12) | 420.1(8) | 636.7(13) | 446.8(13) | 1084(20) | 1789(19) | 875(14.6) |
| 일본 | 183.7(7) | 194.4(2) | 237.3(12) | 250.6(9) | 290.4(10) | 428.5(17) | 725.3(15) | 759.3(9) | 714.4(8) | 879.6(18) | 703.4(13) |
| 중국 | 781.8 (37) | 1843 (36) | 2840 (165) | 4247 (142) | 5963 (145) | 8283 (131) | 10211 (116) | 10910 (84) | 12558 (131) | 13608 (146) | 11114 (121.6) |
| 체코 | | | 5.47(1) | 10(1) | 42.3(1) | 596.4(4) | 667.9(1) | 813.7(2) | 871.9(1) | 885.1(1) | 105.3(1.7) |
| 필리핀 | 107.1(3) | 171.7(2) | 181.3(4) | 160.9(2) | 216.4(4) | 195.7(3) | 281.1(7) | 366.3(6) | 498.3(6) | 554.4(5) | 379.2(5.4) |
| 홍콩 | 232.3(10) | 516(7) | 695.7(16) | 941.4(16) | 1304(16) | 1838(17) | 3156(26) | 3783(10) | 3914(27) | 5003(22) | 3539(20) |
| 총투자 | 7369 (163) | 12171 (134) | 13059 (379) | 15691 (298) | 18912 (353) | 25680 (358) | 36485 (376) | 42919 (309) | 52796 (407) | 59237 (429) | 35476.4 (292.8) |

- 주 1) 음영은 투자액 기준으로 연도별 상위 10위국을 표시함.
 2) () 안의 숫자는 해당년도에 새로 설립된 자회사 수를 나타냄.
 3) 최근 5년은 2007~2011년 평균 FDI 투자금액임.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법인 데이터.

<표 3-2> 한국의 산업·기업별 해외직접투자 및 고용 현황

(단위: 백만 달러(투자금액 기준), 만 명(고용기준))

| 산업/기업 | 2002 | 2003 | 2004 | 2005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최근 5년 |
|-----------|-----------------|-----------------|----------------|-----------------|-----------------|-----------------|-----------------|-----------------|-----------------|-----------------|------------------|
| 전자부품 | 5049 (7.8) | 6548 (12.3) | 5547 (14.3) | 5760 (19.1) | 6623 (20.9) | 8443 (21.3) | 11690 (21.1) | 13143 (21.5) | 14805 (24.2) | 16036 (26.7) | 12823 (22.6) |
| 자동차 | 342.3 (5.4) | 1110 (8.7) | 1770 (9.9) | 2406 (10.4) | 3357 (11.1) | 4198 (11.4) | 4953 (11.2) | 6670 (11.4) | 7725 (11.7) | 6761 (9.6) | 6061 (11.1) |
| 화학물질 | 284 (1.1) | 668 (2.2) | 918 (2.8) | 1104 (4.03) | 1454 (4.02) | 2610 (4.3) | 2990 (4.5) | 2592 (4.4) | 4233 (5.7) | 4556 (6.6) | 3396 (5.1) |
| 1차 금속 | 32.1 (0.2) | 683.7 (2.3) | 908.9 (2.5) | 1344.7 (4.5) | 1431.8 (2.9) | 1680.2 (3.2) | 2147.8 (3.7) | 3811.1 (3.8) | 4049.7 (4.1) | 4497.9 (4.2) | 3237.4 (3.8) |
| 기타 기계 장비 | 29.2 (1.1) | 70.8 (0.6) | 87.5 (0.8) | 138.7 (1.2) | 208.8 (1.7) | 476.7 (1.6) | 2716.8 (2.3) | 3638.8 (2.6) | 3953.3 (2.7) | 4136.5 (3) | 2984.4 (2.4) |
| 고무 및 플라스틱 | (0.06) | 30 (0.08) | 140 (0.5) | 309.8 (0.8) | 364.1 (1) | 469.8 (1.2) | 337.1 (1.17) | 762.8 (1.5) | 1074.4 (1.5) | 637.8 (1.3) | 656.4 (1.4) |
| 비금속 광물제품 | 10 (0.4) | 77 (0.55) | 197.9 (0.8) | 255.5 (0.83) | 321.2 (0.75) | 480.2 (0.89) | 571.7 (0.83) | 718.2 (0.71) | 553.2 (0.99) | 634.2 (1.13) | 591.5 (0.91) |
| 의복 | (0.04) | 7 (0.04) | 14.9 (0.14) | 47.9 (0.24) | 42.3 (0.25) | 67.5 (0.44) | 101.5 (0.42) | 91.4 (0.44) | 164.6 (0.68) | 274.7 (0.89) | 139.9 (0.58) |
| 섬유제품 | 3.2 (0.04) | 21 (0.24) | 49.8 (0.23) | 12.3 (0.06) | 11.5 (0.02) | 29.3 (0.05) | 37.3 (0.11) | 44.9 (0.07) | 70.1 (0.21) | 80.3 (0.22) | 52.4 (0.13) |
| 대기업 | 182.4 (0.58) | 179.3 (0.63) | 81.9 (0.34) | 75.9 (0.32) | 72.9 (0.27) | 79.8 (0.23) | 106.5 (0.23) | 121.4 (0.22) | 137 (0.23) | 127.7 (0.21) | 114.5 (0.225) |
| 중소기업 | 18.3 (0.17) | 49.6 (0.19) | 16.1 (0.08) | 10.4 (0.05) | 9.5 (0.04) | 10.1 (0.034) | 15.1 (0.035) | 14.9 (0.034) | 24.3 (0.034) | 33.8 (0.029) | 19.6 (0.033) |

주 1) () 안의 숫자는 총 종사자 수를 나타냄.

2) 산업의 해외투자금액 및 총 종사자수는 해당 산업에 속하는 기업들의 해외투자금액 및 종사자수의 합으로 계산함.

3) 기업별 해외투자금액 및 총 종사자수는 해당년도 해당 기업들의 평균으로 계산함.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법인 데이터.

법인세 정책의 해외직접투자와 국내고용에 대한 효과 분석 연구

제IV장 법인세 부담과 해외직접투자 및 국내 고용에 관한 회귀분석



4.1. 평균실효세율의 해외직접투자자과 국내 고용에 대한 효과

국내 법인세율을 평균실효세율로 계산하여 법인세 부담이 상장기업의 해외직접투자자에 미치는 영향을 총량으로 실증 분석한 결과는 <표 4-1>과 같다. 모든 실증분석은 기업이 속한 산업의 특성과 시간 특성을 통제한 상황에서 이루어졌다.

<표 4-1> 법인세율과 기업의 해외직접투자와의 관계: 평균실효세율

| 변수 | 모형(1) (해투금액) | 모형(2) (자회사 수) | 모형(3) (해투자본) | 모형(4) (해투고용) |
|--------------------------|---------------------|---------------------|---------------------|----------------------|
| <i>Tax</i> | 0.825** (0.356) | -0.319 (0.222) | 0.795* (0.457) | -0.177 (0.436) |
| <i>Prod</i> | 0.362*** (0.029) | 0.207*** (0.038) | 0.554*** (0.041) | 0.428*** (0.039) |
| <i>KLratio</i> | 0.407*** (0.041) | 0.213*** (0.059) | 0.592*** (0.068) | 0.056 (0.061) |
| <i>RDint</i> | -0.44** (0.183) | 0.018 (0.07) | 1.606*** (0.386) | -1.204*** (0.373) |
| <i>Lagged Dep</i> | 0.919*** (0.016) | 0.359*** (0.087) | 0.803*** (0.034) | 0.848*** (0.026) |
| <i>adj R²</i> | 0.9089 | 0.3923 | 0.8215 | 0.8410 |
| hausman test | 329.92 | 354.75 | 367.88 | 214.15 |
| p-value | 0.000 | 0.0000 | 0.0000 | 0.0000 |
| 모형 | 고정효과 | 고정효과 | 고정효과 | 고정효과 |
| <i>F statistics</i> | 873.93 (0.00) | 7.62 (0.00) | 202.28 (0.00) | 219.98 (0.00) |

주 1) ***, **, *는 각각 유의수준 1%, 5%, 10%에서 유의함을 의미함.

2) () 안은 standard error를 나타냄.

3) 시간 및 산업 더미변수들의 회귀계수 값들은 표에서 생략함.

회귀방정식 (2-1)을 임의효과모형(random effect)과 고정효과 모형(fixed effect) 모형으로 추정한 다음 Hausman test를 시행

한 결과 모든 모형에서 고정효과모형이 최적모형으로 선택되었다. 모형 (1)에서 기업의 해외직접투자자를 해당년도에 실제 투자한 총 금액으로 분석한 결과 본 장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변수인 평균실효세율의 회귀계수는 0.825로 유의한 양(+)의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국내 법인세율이 증가할수록 기업의 해외직접투자액이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기업의 해외직접투자자를 각 년도에 설립한 해외 자회사 수로 분석한 결과 평균실효세율의 회귀계수는 -0.319로 음(-)의 값을 나타내고 있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이는 국내 법인세율의 증가와 해당기업이 해외에 자회사를 설립할 유인과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모형 (1)과 (2)의 결과는 국내 법인세율은 기업의 해외투자액을 통해 해외직접투자에 유의하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모형 (1)과 (2)에서 법인세율을 제외한 통제변수들의 분석 결과를 보면 기업 생산성과 기업 자본화비율의 회귀계수들은 모두 유의한 양(+)의 값을 보이고 있다. 즉, 생산성이 높은 기업일수록 혹은 자본화 비율이 높은 기업일수록 해외직접투자를 시행할 유인이 커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반면 기업의 연구개발투자 집중도의 회귀계수는 모형 (1)에서 유의한 음(-)의 값을 보이고 있어 연구개발투자 집중도가 낮은 기업일수록 해외투자가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또한 전기의 해외직접투자가 현재 해외직접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시차중속변수를 포함하여 분석한 결과 전기의 해외직접투자는 투자액과 새로 설립한 해외자회사 수 모두 유의한 양(+)의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남

으로써 해외직접투자는 동태적 조정과정을 가지고 있으며 전기의 해외직접투자가 현재의 해외직접투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모형 (1)과 (2)에서의 결과가 국내 법인세율이 기업의 해외직접투자 총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것이라면 모형 (3)과 모형 (4)에서는 법인세율이 기업의 해외 생산요소 수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분석하고 있다. 모형 (3)에서의 종속변수는 기업이 소유한 해외 자회사들의 총 자본액으로서 해외 자회사들의 기계장치공구기구의 연말잔액과 차량운반구의 연말잔액의 총합으로 계산하였다. 모형 (4)에서의 종속변수는 기업이 소유한 해외 자회사들의 총 현지인 종사자수로서 국내 법인세율이 기업의 해외 노동 수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 있다. 모형 (3)에서 평균실효세율의 회귀계수는 0.795로서 유의한 양(+)의 값을 가지는 반면 모형 (4)에서의 평균실효세율 회귀계수는 음(-)의 값을 가지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이러한 결과는 국내 법인세율의 증가가 기업의 해외 자본수요를 유발시키지만 현지 노동 수요와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⁷⁾

법인세율을 제외한 다른 통제변수들의 경우 모형 (1)과 모형 (2)에서와 동일하게 기업 생산성의 회귀계수는 유의한 양(+)의 값을 가짐으로써 생산성이 높은 기업들일수록 해외 생산 요소

7) 종속 변수를 해외 자회사들의 총 한국인 근로자수로 실증 분석한 결과 법인세율의 회귀계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음(-)의 값을 가짐으로써 법인세율과 기업들의 해외 노동 이전과는 상관관계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의 수요가 증가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반면, 기업 자본화 비율의 회귀계수는 모형 (3)에서만 유의한 양(+)¹⁾의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자본화비율이 높은 기업일수록 해외 자회사들을 통한 자본의 수요가 높지만 노동 수요와는 상관관계가 없다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기업의 연구개발투자 집중도의 경우 그 회귀계수는 모형 (3)에서는 유의한 양(+)²⁾의 값을 가지는 반면 모형 (4)에서는 유의한 음(-)³⁾의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연구개발투자 집중도가 높은 기업일수록 그 해외 자회사의 자본 수요는 증가하는 반면 해외 노동 수요는 감소하는 것을 의미한다. 전기의 생산투입요소 수요의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시차종속변수를 포함하여 분석한 결과 전기 생산 투입요소의 수요는 현재 생산투입요소의 수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이고 있다.

〈표 4-1〉에서는 분석 기간 동안 해외직접투자를 하는 상장기업들을 대상으로 평균실효세율이 기업의 총 해외투자액 및 총 해외 자본 및 노동 요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본 분석(회귀방정식 (2-1))은 기업의 해외직접투자를 총량의 개념으로 계산하여 분석하였기 때문에 기업의 해외투자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업 고유의 특징만을 통제한 상황에서 평균실효세율의 해외투자 효과를 분석하였다. 하지만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선행연구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기업의 해외진출 및 해외투자 결정은 기업 고유의 특징뿐만 아니라 투자 대상국의 특징에 의해서도 큰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기업의 해외 자회사 정보를 이용하여 모기업에게 부과되는 법인세율이

해외 개별 자회사로의 투자 및 자회사의 생산 요소 수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모기업과 모기업이 속한 산업 및 투자 대상국의 특징을 통제된 상황에서 분석하기로 한다.

<표 4-2> 법인세율과 자회사로의 해외직접투자와의 관계: 평균실효세율

| 변수 | 모형(1) 해투금액 | 모형(2) 자회사더미 | 모형(3) 해투자본 | 모형(4) 해투고용 |
|--------------------------|---------------------|----------------------|----------------------|---------------------|
| <i>Tax</i> | 0.319* (0.167) | -0.111 (0.079) | 0.598 (0.665) | -0.09 (0.227) |
| <i>Prod</i> | 0.221*** (0.036) | 0.008 (0.012) | 0.145* (0.08) | 0.096 (0.079) |
| <i>KLratio</i> | 0.154*** (0.05) | 0.007 (0.013) | 0.435*** (0.08) | -0.019 (0.073) |
| <i>RDint</i> | -0.307 (0.341) | 0.787** (0.316) | 4.965*** (1.68) | -3.02* (1.618) |
| <i>GDP</i> | 0.089*** (0.039) | -0.01* (0.006) | 0.126** (0.053) | 0.168*** (0.041) |
| <i>Dist</i> | 0.061 (0.104) | 0.034* (0.019) | 0.204*** (0.102) | 0.116* (0.065) |
| <i>Tele</i> | 0.186 (0.165) | -0.008 (0.064) | -0.017 (0.297) | 0.312 (0.251) |
| <i>Exch</i> | -0.014 (0.018) | -0.0036 (0.004) | 0.018 (0.023) | 0.011 (0.018) |
| <i>Tariff</i> | -0.364 (0.246) | -0.079 (0.063) | 0.329 (0.391) | 0.412 (0.288) |
| <i>FTax</i> | -0.146 (0.123) | -0.017*** (0.003) | -0.091*** (0.028) | -0.131* (0.068) |
| <i>Lagged Dep</i> | 0.957*** (0.017) | NA | 0.852*** (0.033) | 0.809*** (0.024) |
| <i>adj R²</i> | 0.9472 | 0.2516 | 0.8522 | 0.8585 |
| hausman test | 1365.01 | 658.56 | 1086.02 | 963.93 |
| p-value | 0.0000 | 0.0000 | 0.0000 | 0.0000 |
| 모형 | 고정효과 | 고정효과 | 고정효과 | 고정효과 |
| <i>Fstatistics</i> | 7430.43 (0.00) | 630.99 (0.00) | 609.87 (0.00) | 1022.97 (0.00) |

주 1) ***, **, *는 각각 유의수준 1%, 5%, 10%에서 유의함을 의미함.

2) () 안은 standard error를 나타냄.

3) 모기업, 산업 및 시간 더미변수들의 회귀계수 값들은 표에서 생략함.

회귀방정식 (2-2)을 해외 자회사 패널 데이터를 사용하여 고정효과모형으로 실증 분석한 결과는 표 <4-2>에 기술되어 있다. 모형 (1) 과 (2)는 개별 자회사로 해당 모기업의 해외투자액과 해당년도 자회사 설립유무를 나타내는 더미변수를 종속변수로 사용하여 법인세율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모형 (3)과 모형 (4)는 해외 자회사의 자본과 현지 고용을 종속변수로 사용하여 법인세율이 해외 자회사의 자본 및 노동 수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모형 (1)에서 주요변수인 평균실효세율의 회귀계수는 0.319로서 유의한 양(+)의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국내 평균실효세율의 증가가 모기업에서 자회사로의 해외투자를 증가시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즉, 앞에서 시행되었던 기업별 수준의 분석과 동일하게 국내 법인세율은 기업의 해외직접투자를 촉진시키는 결과를 도출하고 있다. 반면 모형 (2)에서 평균실효세율의 회귀계수는 유의하지 않은 음(-)의 값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모기업에게 부과되는 법인세율은 기업의 해외투자액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기업의 자회사 설립을 통한 해외 진출에는 유의하지 않은 영향을 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법인세율을 제외한 통제변수들 중에서 기업의 특징을 나타내는 변수들의 경우 기업 생산성과 기업의 자본화비율의 회귀계수들은 모형 (1)에서 유의한 양(+)의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생산성이 높은 모기업일수록 혹은 자본집약적인 모기업일수록 그 자회사로 많은 해외투자가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연구개발투자 집중도의 회귀계수는 모형 (1)에

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모형 (2)에서는 유의한 양(+)의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모기업의 연구개발투자 수준은 해외투자액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새로운 자회사 설립을 통한 해외 진출을 촉진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분석 기간 동안 새롭게 설립된 자회사들은 연구개발투자 집중도가 높은 모기업들에 의해 투자되었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또한 시차종속변수의 회귀계수 값은 모형 (1)에서 유의한 양(+)의 값을 가짐으로써 자회사로의 전기 해외직접투자액은 현재 투자액에 유의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기업의 해외직접투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투자 대상국의 특징을 나타내는 통제변수들의 경우 경제규모를 나타내는 GDP의 회귀계수는 모형 (1)에서 유의한 양(+)의 값을 가지는 반면 모형 (2)에서는 유의한 음(-)의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해외 자회사가 위치한 투자 대상국의 경제규모가 클수록 자회사에 대한 투자액이 증가하는 반면 분석 기간 동안 경제 규모가 작은 국가일수록 그 국가로의 해외직접투자를 할 유인이 커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수입관세율과 해외 법인세율의 회귀계수들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투자 대상국가의 수입관세율 및 해외 법인세율과 자회사로의 해외투자액은 상관관계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해외 법인세율의 회귀계수는 기업의 해외투자 진출 결정에 유의한 음(-)의 값을 가짐으로써 대상국가의 법인세율이 낮을수록 그 국가로 해외직접투자를 시행할 유인이 커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기존 선행연구의 결과와 동일하게 해외 국가들이 법인세율 인하 등의 정책을 통해 한국의 해외직접투자 유인을 이끌어내고 있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해외 법인세율을 개별 자회사가 부과하는 평균실효세율 이외에 Hines and Rice(1994)를 참조하여 해당년도에 국가별로 해외 자회사들이 부과하는 법인세비용과 세전이익의 합으로 계산한 평균실효세율을 대체변수로 사용했을 때와 동일하다. 즉, 해외 법인세율은 국내 상장 기업의 해외투자액에는 유의한 효과를 미치지 못하지만 기업의 새로운 해외직접투자를 유인하는 데에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기업의 해외 자본 및 현지 노동 수요를 분석한 결과 평균실효세율의 회귀계수는 모형 (3)과 (4)에서 모두 유의하지 않은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국내 모기업에게 부과되는 법인세율과 개별 해외 자회사의 생산요소 수요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한편 기업의 특징을 나타내는 통제변수들 중에서는 기업 생산성과 자본화 비율, 연구개발 투자 집중도들이 해외 자회사의 자본 수요에 긍정적으로 유의한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생산성이 높은 기업일수록 혹은 자본집약적이거나 연구개발투자 집중도가 높은 기업일수록 그 자회사의 자본 수요는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기업의 특징을 나타내는 대부분의 변수들은 현지 노동 수요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연구개발투자 집중도의 경우 기업 수준의 분석결과와 동일하게 그 회귀계수가 유의한 음(-)의 값을 가짐으로써 기업의 연

구개발투자 집중도와 자회사의 현지 노동 수요는 부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투자 대상국의 특징을 나타내는 변수들의 경우 대상 국가의 경제규모와 한국과의 물리적 거리 차이가 생산요소 수요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가의 경제규모가 크거나 한국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위치에 있을수록 해당 국가 안에 위치한 자회사의 생산요소 수요가 활발한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해외 평균실효세율은 모형 (3)과 (4)에서 모두 유의한 음(-)의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해외 법인세율이 감소할수록 그 대상국가 내에 있는 자회사의 자본 및 현지 노동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국내 평균실효세율과 비교했을 때 해외 평균실효세율은 기업의 해외직접투자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해외 자회사의 생산요소 수요에는 유의한 부정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국가별 환율 및 국가의 인프라 수준은 해외투자 및 생산요소 수요에 유의하지 않은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4-3> 기업의 해외직접투자과 고용과의 관계: 기업별 수준 분석
(평균실효세율)

| 변수 | 모형(1) OLS (당해 연도) | 모형(2) 2SLS (당해 연도) | 모형(3) OLS (1년 후 시차) | 모형(4) 2SLS (1년 후 시차) |
|-----------------------|----------------------|-----------------------|------------------------|-------------------------|
| <i>FDI</i> | -0.0025 (0.005) | -0.213*** (0.05) | -0.0026 (0.006) | -0.289*** (0.04) |
| <i>Wage</i> | 0.852*** (0.022) | 1.037*** (0.045) | 0.84*** (0.024) | 1.097*** (0.067) |
| <i>R</i> ² | 0.8834 | 0.9007 | 0.8773 | 0.8976 |
| <i>W.H.F</i> | | 115.15 | | 138.43 |

| 변수 | 모형(1) OLS (당해 연도) | 모형(2) 2SLS (당해 연도) | 모형(3) OLS (1년 후 시차) | 모형(4) 2SLS (1년 후 시차) |
|------------------------------|----------------------|-----------------------|------------------------|-------------------------|
| $D.W.H \chi^2$ | | 75.58 | | 122.8 |
| $Sargan \chi^2$ (p-value) | | 6.512 (0.1640) | | 5.259 (0.2618) |
| 관측치수 | 3322 | 1304 | 2294 | 1017 |

- 주 1) ***, **, *는 각각 유의수준 1%, 5%, 10%에서 유의함을 의미함.
 2) () 안은 standard error를 나타냄.
 3) 산업 및 시간 더미변수들의 회귀계수 값들은 표에서 생략함.
 4) Wu-Hausman F 통계량($W.H.F$)과 Durbin-Wu-Hausman($D.W.H$) 통계량은 기업의 해외직접투자 변수(FDD)의 외생성 검증을 위해 사용되었으며 $Sargan$ 통계량은 도구변수들의 적절성 검증을 위해 사용되었음.

국내 법인세율이 해외직접투자자 고용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에 앞서 분석 기간 동안 해외직접투자를 하는 상장 기업들의 패널 자료에 근거하여 기업의 해외직접투자자 고용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기업의 총 종사자 수와 총 급여액을 고려한 실증 분석 결과는 표 <4-3>와 같다. 표 <4-3>의 모형 (1)은 당해 연도의 설명 변수들을 사용하여 기업의 총 임금 및 총 해외직접투자액이 고용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자승법(Ordinary Least Squares(OLS))으로 추정한 결과이며 모형 (3)은 시차설명변수들을 사용하여 기업의 총 임금 및 총 해외직접투자액이 고용 수준에 1년이 경과한 후 어떠한 효과를 나타내는지에 대하여 같은 분석방법론을 이용하여 추정한 결과이다.

당해 연도의 설명변수를 사용하여 분석한 모형 (1)에서 임금 수준을 나타내는 $Wage$ 의 회귀계수는 유의한 양(+)¹⁾의 값을 가짐으로써 기업의 임금 수준이 올라갈수록 고용 수준도 증가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임금수준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시차

변수로 분석한 모형 (3)에서의 *Wage* 회귀계수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 고용에 대한 임금 수준의 긍정적인 효과는 1년이 경과한 후에도 유의하게 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임금의 시차회귀계수는 모형 (1)과 비슷한 수준의 값을 가짐으로써 임금의 긍정적인 효과는 1년 후에도 큰 변화가 없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주요 변수인 기업 해외직접투자의 경우 *FDI*의 회귀계수 값은 모형 (1)과 (3)에서 모두 음(-)의 값을 갖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즉, 당해 연도 혹은 1년이 경과 후에도 기업의 해외직접투자는 고용 수준에 유의하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하지만 기업의 해외직접투자 분석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해외직접투자는 국내 법인세율과 다른 기업 및 투자 대상국의 특징에 의하여 유의한 영향을 받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고용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기업의 해외직접투자는 식 (2-3)에서 내생변수임을 가정하고 법인세율을 포함하여 식 (2-1)에서 사용되었던 설명변수들을 기업 생산성을 제외하고 도구변수로 사용하여 2단계 최소자승법으로 해외직접투자가 고용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한 결과는 모형 (2)와 (4)에 나타나 있다.

모형 (2)는 당해 연도의 설명변수와 도구변수들을 사용하여 해외직접투자가 기업의 고용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이고 모형 (4)는 시차변수들을 고려하여 해외직접투자가 국내 고용에 1년이 경과한 후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결과이다. 우선 해외직접투자가 외생변수라는 귀무가설에서 Wu-Hausman F 통계량 값은 모형 (2)와 모형 (4)에서 각각 115.15와 138.43이고

Durbin-Wu-Hausman χ^2 통계량 값은 각 모형에서 75.58과 122.8로 1% 유의수준에서 귀무가설이 기각되어 고용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해외직접투자는 내생변수로 분석해야 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해외직접투자를 외생변수로 가정하고 모형 (1)과 모형 (3)에서 OLS로 추정할 경우 편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위의 외생성 검정 통계량은 도구 변수의 선택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Sargan 검정방법을 통해 도구변수의 적절성을 통계적으로 검증하였다. 검증 결과 모형 (2)와 모형 (4)에서 사용된 도구변수들이 확률 오차항과 무관하다는 귀무가설에서 Sargan의 χ^2 검정통계량 값은 각 모형에서 6.512와 5.259로서 10% 유의수준에서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2단계 최소자승법에서 사용된 모든 도구변수가 확률오차항과 무관하며 적절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분석 결과, 기업의 임금 수준을 나타내는 *Wage*의 회귀계수 값은 모형 (2)와 (4)에서 유의한 양(+)의 값을 가지고 있으며 임금 수준이 고용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는 1년경과 후에도 당해 연도와 비슷한 수준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모형 (2)에서 주요변수인 *FDI*의 회귀계수는 모형 (1)에서와 동일하게 음(-)의 값을 갖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국내 평균실효세율을 포함한 다른 기업의 특징을 고려했을 때 해외직접투자는 고용 수준에 유의한 부정적인 효과를 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모형 (4)에서의 *FDI* 시차회귀계수는 유의한 음(-)

의 값을 가지며 모형 (2)보다 큰 값을 가지는데 이는 해외직접투자의 부정적인 고용효과는 시차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다.

2단계 최소자승법 모형을 통해 분석한 결과 국내 평균실효세율은 해외직접투자를 통해 고용 수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Sobel(1987)과 Bollen(1989), MacKinnon et al.(2002)에서 분석한 매개변수(mediator variable)를 통한 설명변수의 직접효과와 간접효과 추정방법에 의거하여 국내 평균실효세율이 고용 수준에 미치는 간접효과를 계산한 결과 당해 연도의 평균실효세율은 해외직접투자를 통해 고용 수준에 -0.0076의 간접효과를 나타내고 있으며 1년경과 후에는 고용 수준에 -0.0486의 간접효과를 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당해 연도의 평균실효세율이 고용 수준에 미치는 전체 효과에서 약 18.68%가 기업의 해외직접투자 변화에 의한 것이며 1년경과 후 고용 수준에 미치는 전체 효과 중에서는 약 17.96%가 해외직접투자의 변화를 통한 효과라는 것을 의미한다. MacKinnon(2008)에서 분석된 간접효과의 유의성 수준을 계산한 결과 평균실효세율이 당해 연도 및 1년경과 후 고용수준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모두 5% 유의수준에서 유의하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⁸⁾ 즉, 기업에게 부

8) Shrout and Bolger(2002)를 참조하여 법인세율의 간접효과 유의성을 bootstrapping 방법으로 계산한 결과 당해 연도와 1년경과 후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모두 5%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간접효과의 유의성 검증은 stata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Sobel-Goodman mediation test로도 시행할 수 있다. 하지만 Sobel-Goodman mediation test의 경우 다른 설명변수들이 통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하나의 설명변수만의 매개변수를 통한 직·간접효과를 추정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과되는 평균실효세율은 해외직접투자자의 변화를 통하여 고용 수준에 유의한 부정적인 효과를 주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4-4> 기업의 해외직접투자자 고용과의 관계: 자회사별 수준 분석
(평균실효세율)

| 변수 | 모형(1) OLS (당해 연도) | 모형(2) 2SLS (당해 연도) | 모형(3) OLS (1년 후 시차) | 모형(4) 2SLS (1년 후 시차) |
|------------------------|-------------------------|--------------------------|---------------------------|----------------------------|
| <i>FDI</i> | 0.0065 (0.012) | -0.351*** (0.071) | 0.053 (0.014) | -0.228*** (0.067) |
| <i>Wage</i> | 0.864*** (0.017) | 0.987*** (0.013) | 0.845*** (0.017) | 0.947*** (0.024) |
| <i>R</i> ² | 0.9349 | 0.9196 | 0.9338 | 0.9477 |
| <i>W.H.F</i> | | 20.68 (0.00) | | 42.79 (0.00) |
| <i>D.W.H</i> χ^2 | | 30.14 (0.00) | | 67.22 (0.00) |
| <i>Sargan</i> χ^2 | | 0.0063 (0.9368) | | 1.0053 (0.316) |
| 관측치수 | 10286 | 3485 | 7106 | 2482 |

주 1) ***, **, *는 각각 유의수준 1%, 5%, 10%에서 유의함을 의미함.

2) () 안은 standard error를 나타냄.

3) 산업 및 시간 더미변수들의 회귀계수 값들은 표에서 생략함.

4) Wu-Hausman F 통계량(*W.H.F*)과 Durbin-Wu-Hausman(*D.W.H*) 통계량은 기업의 해외직접투자 변수(*FDI*)의 외생성 검증을 위해 사용되었으며 *Sargan* 통계량은 도구변수들의 적절성 검증을 위해 사용되었음.

<표 4-4>은 해외 자회사 패널 데이터에 근거하여 모기업의 해외직접투자자 고용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OLS와 2단계 최소자승법으로 분석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OLS를 사용하여 당해 연도와 1년 시차설명변수들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FDI*의 회귀계수는 모형 (1)과 모형 (3)에서 모두 양(+)¹⁾의 값을 가지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임금 수준의 경우, *Wage*의 회귀계수는 두 모형에서 모두 유의한 양(+)

의 값을 가지며 그 값은 1년이 경과한 후 소폭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임금 수준이 고용수준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는 시차적으로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기업 해외직접투자의 외생성을 검증한 결과 Wu-Hausman F 통계량 값은 모형 (2)와 모형 (4)에서 각각 20.68과 42.79이고 Durbin-Wu-Hausman χ^2 통계량 값은 각 모형에서 30.14와 67.22로 1% 유의수준에서 해외직접투자는 외생변수라는 귀무가설이 기각되어 자회사별 수준 분석에서도 모기업 고용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해외직접투자는 내생변수로 분석해야 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모기업에 부과되는 평균실효세율과 자회사에 부과되는 해외 평균실효세율을 포함하여 기업 및 투자 대상국의 특징을 나타내는 당해 연도 설명변수들을 도구 변수로 사용하여 2단계 최소자승법으로 분석한 결과 기업의 해외직접투자(FDI)는 모형 (2)에서 유의한 음(-)의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FDI 시차회귀계수는 모형 (4)에서도 유의한 음(-)의 값을 가지지만 당해 연도 회귀계수보다 작은 값을 가짐으로써 해외직접투자가 고용 수준에 미치는 부정적인 효과는 1년의 시간이 경과한 후 감소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모기업에게 부과되는 평균실효세율이 고용 수준에 미치는 간접효과를 추정한 결과 평균실효세율은 해외직접투자를 통한 당해 연도 고용 수준에 5% 유의수준에서 -0.087의 간접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1년경과 후에는 해외직접투자를 통해 10% 유의수준에서 -0.2675의 간접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평균

실효세율이 당해 연도 고용수준에 미치는 전체적인 영향에서 35.09%가 해외직접투자의 변화를 통해 이루어진 것이며 1년 경과 후 고용 수준에 미치는 영향의 63.21%가 해외직접투자의 변화에 의한 효과라는 것을 의미한다. 즉, 평균실효세율은 해외직접투자를 통해 간접 고용 효과가 시차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기업 수준의 분석 결과와 동일하게 *Wage* 회귀계수는 모든 모형에서 유의한 양(+)의 값을 가지고 있다. 모형 (4)에서의 1년 시차회귀계수는 당해 연도의 회귀계수보다 작은 값을 가짐으로써 모기업의 임금 수준은 그 기업의 고용 수준에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으며 그 효과는 1년 경과 후에 감소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4.2. 한계실효세율의 해외직접투자자와 국내 고용에 대한 효과

국내 법인세율을 한계실효세율로 계산하여 법인세 정책이 상장기업의 해외직접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총량 개념으로 분석한 결과는 <표 4-5>와 같다. 기업별 수준 분석은 각 기업이 속한 산업효과와 시간효과를 통제한 상황에서 시행되었다.

<표 4-5> 법인세율과 기업의 해외직접투자와의 관계: 한계실효세율

| 변수 | 모형(1) (해투금액) | 모형(2) (자회사 수) | 모형(3) (해투자본) | 모형(4) (해투고용) |
|--------------------------|---------------------|---------------------|---------------------|----------------------|
| <i>Tax</i> | 1.789*** (0.486) | -0.797 (0.717) | 1.373** (0.695) | 0.114 (0.109) |
| <i>Prod</i> | 0.364*** (0.03) | 0.205*** (0.038) | 0.555*** (0.042) | 0.439*** (0.039) |
| <i>KLratio</i> | 0.362*** (0.044) | 0.234*** (0.068) | 0.561** (0.069) | -0.01 (0.06) |
| <i>RDint</i> | -0.376** (0.183) | 0.013 (0.072) | 1.568*** (0.389) | -1.059*** (0.361) |
| <i>Lagged Dep</i> | 0.927*** (0.014) | 0.359*** (0.087) | 0.802*** (0.034) | 0.847*** (0.026) |
| <i>adj R²</i> | 0.9088 | 0.3928 | 0.8215 | 0.8415 |
| hausman test | 286.12 | 386.4 | 333.44 | 169.76 |
| p-value | 0.0000 | 0.0000 | 0.0000 | 0.00 |
| 모형 | 고정효과 | 고정효과 | 고정효과 | 고정효과 |
| <i>Fstatistics</i> | 805.1 (0.00) | 7.56 (0.00) | 194.16 (0.00) | 219.51 (0.00) |

주 1) ***, **, *는 각각 유의수준 1%, 5%, 10%에서 유의함을 의미함.

2) () 안은 standard error를 나타냄.

3) 시간 및 산업 터미변수들의 회귀계수 값들은 표에서 생략함.

고정효과모형으로 기업의 해외직접투자 결정 요인을 실증 분석한 결과 모형 (1)에서 한계실효세율의 회귀계수는 1.789로서

1% 유의한 수준에서 해외직접투자액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앞 절에서 분석한 평균실효세율의 회귀계수와 비교했을 때 한계실효세율의 해외직접투자효과는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기업의 해외직접투자를 각 년도에 설립한 해외 자회사 수로 분석한 결과 한계실효세율의 회귀계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음(-)의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평균실효세율의 효과와 동일하게 한계실효세율 역시 총 해외투자액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반면 기업의 새로운 해외 자회사 설립 결정에는 효과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모형 (1)과 (2)에서 다른 기업의 특징을 나타내는 통제변수들의 분석 결과는 회귀계수들의 추정량과 유의성에서 표 <4-1>와 동일하다. 기업 생산성과 기업 자본화비율의 회귀계수들은 모두 유의한 양(+)의 값을 가짐으로써 생산성이 높은 기업이거나 자본화 비율이 높은 기업일수록 더 많은 해외투자를 하거나 자회사 설립을 통한 새로운 해외 진출을 할 확률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반면 기업의 연구개발투자 집중도의 회귀계수는 모형 (1)에서 유의한 음(-)의 값을 가짐으로써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 수준은 해외직접투자액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이고 있다. 또한 시차종속변수의 회귀계수 값들은 모형(1)과 모형(2)에서 모두 유의한 양(+)의 값을 가짐으로써 전기의 해외직접투자는 현재 해외직접투자에 유의한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계실효세율 및 기업의 고유한 특징이 해외 생산요소 수요

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한계실효세율은 해외 자본 수요에 유의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노동 수요에는 유의하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계실효세율을 제외한 다른 통제변수들의 경우 앞 절의 분석 결과와 동일하게 기업 생산성은 해외 생산요소 수요에 유의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기업의 자본화비율은 해외 자본 수요 증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자본화비율이 높은 기업일수록 해외 자본 수요량이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⁹⁾ 또한, 연구개발투자 집중도의 회귀계수를 통하여 연구개발투자 집중도가 높은 기업일수록 해외 자본 수요가 활발한 반면 연구개발투자 집중도가 낮은 기업일수록 해외 노동 수요가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전기의 생산투입요소 수요는 현재의 생산투입요소 수요에 유의한 양(+)¹⁰⁾의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 전기의 생산요소 수요는 현재의 생산요소 수요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9) 모형 (4)에서 종속 변수를 해외 자회사들의 총 한국인 근로자수로서 실증 분석한 결과 한계실효세율의 회귀계수는 유의하지 않은 음(-)의 값을 가짐으로써 국내 법인세율과 기업의 해외 노동력 이전은 상관관계가 없다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표 4-6> 법인세율과 자회사로의 해외직접투자와의 관계: 한계실효세율

| 변수 | 모형(1) 해투금액 | 모형(2) 자회사더미 | 모형(3) 해투자본 | 모형(4) 해투고용 |
|--------------------------|----------------------|----------------------|---------------------|---------------------|
| <i>Tax</i> | 0.473** (0.201) | -0.167 (0.102) | 0.141 (0.691) | 0.954 (0.599) |
| <i>Prod</i> | 0.222*** (0.039) | 0.007 (0.011) | -0.029 (0.08) | 0.108 (0.084) |
| <i>KLratio</i> | 0.144*** (0.049) | 0.013 (0.013) | 0.435*** (0.08) | -0.124 (0.093) |
| <i>RDint</i> | -3.111*** (0.699) | 0.799*** (0.302) | 5.429*** (1.386) | -2.913* (1.52) |
| <i>GDP</i> | 0.088** (0.038) | -0.009 (0.005) | 0.161** (0.061) | 0.181*** (0.039) |
| <i>Dist</i> | 0.106* (0.056) | 0.032* (0.018) | 0.385** (0.16) | 0.242** (0.109) |
| <i>Tele</i> | 0.194 (0.166) | 0.0006 (0.059) | 0.161 (0.061) | 0.173 (0.232) |
| <i>Exch</i> | -0.015 (0.018) | -0.004 (0.005) | -0.01 (0.022) | 0.017 (0.016) |
| <i>Tariff</i> | -0.362 (0.245) | -0.049 (0.062) | 0.002 (0.334) | 0.206 (0.244) |
| <i>FTax</i> | 0.147 (0.123) | -0.015*** (0.004) | -0.073** (0.031) | -0.031** (0.014) |
| <i>Lagged Dep</i> | 0.958*** (0.017) | NA | 0.887*** (0.026) | 0.869*** (0.028) |
| <i>adj R²</i> | 0.9474 | 0.2471 | 0.8523 | 0.8587 |
| hausman test | 1378.26 | 340.39 | 1181.84 | 1282.9 |
| p-value | 0.00 | 0.00 | 0.00 | 0.00 |
| 모형 | 고정효과 | 고정효과 | 고정효과 | 고정효과 |
| <i>Fstatistics</i> | 3509.12 (0.00) | 623.31 (0.00) | 394.83 (0.00) | 1996.03 (0.00) |

주 1) ***, **, *는 각각 유의수준 1%, 5%, 10%에서 유의함을 의미함.

2) () 안은 standard error를 나타냄.

3) 모기업, 산업 및 시간 더미변수들의 회귀계수 값들은 표에서 생략함.

<표 4-6>은 해외 자회사 패널 데이터를 사용하여 모기업에게 부과되는 한계실효세율의 투자효과 및 생산요소 수요효과를 모기업과 모기업이 속한 산업 및 투자 대상국의 특징을 통제된 상황에서 실증 분석한 결과이다. 고정효과모형으로 분석한 결과 모형 (1)에서 한계실효세율의 회귀계수는 5% 유의한 수준에서

양(+)²의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기업별 수준 분석과 동일하게 국내 한계실효세율의 해외투자효과는 평균실효세율의 해외투자효과보다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모형 (2)에서 한계실효세율의 회귀계수는 유의하지 않은 값을 가짐으로써 한계실효세율과 기업의 새로운 해외직접투자 진출과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한계실효세율을 제외한 통제변수들 중에서 기업의 특징을 나타내는 변수들의 경우 기업 생산성과 자본화비율의 회귀계수들은 모형 (1)에서 모두 유의한 양(+)²의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기업 생산성 및 자본화비율은 해외 자회사로의 투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전기의 해외직접투자액은 현재의 해외직접투자액에 유의한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연구개발투자 집중도의 회귀계수는 모형 (1)에서 유의한 음(-)²의 값을 가지지만 모형 (2)에서는 유의한 양(+)²의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결과는 기업의 연구개발투자 수준은 자회사로의 해외직접투자액에 부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반면 새로운 해외자회사 설립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즉, 분석 기간 동안 새롭게 설립된 자회사들이 연구개발투자 수준이 높은 모기업에 의해 투자되었으며 이 자회사들은 해외에서의 연구개발투자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기업 해외직접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투자 대상국의 특징 중에서는 대상 국가의 경제 규모와 물리적 거리 차이가 해외투자액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두 변수의 회

귀계수는 모형 (1)에서 모두 유의한 양(+)¹⁾의 값을 나타냄으로써 대상국가의 경제규모가 크거나 한국에서 멀리 떨어진 국가일수록 대상국가 내에 위치하고 있는 자회사로의 투자는 증가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한편, 모형 (2)에서 대상국 경제규모의 회귀계수는 유의한 음(-)²⁾의 값을 가짐으로써 분석 기간 동안 대상국가의 경제규모가 작을수록 그 국가로의 새로운 투자가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앞 절의 분석결과와 동일하게 해외 자회사에게 부과되는 평균실효세율의 회귀계수는 해외투자액에는 유의하지 않는 값을 가지는 반면 해외직접투자를 통한 해외 진출에는 유의한 양(+)³⁾의 값을 가짐으로써 해외 법인세율의 감소는 그 국가로의 새로운 해외직접투자 진출에 유의한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해외 자회사의 자본 및 현지 노동 수요와 한계실효세율과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모형 (3)과 (4)에서 국내 한계실효세율은 해외 자회사의 생산요소 수요에 유의한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기업의 특징을 나타내는 통제변수들 중에서는 기업의 자본화비율 회귀계수는 모형 (3)에서 유의한 양(+)⁴⁾의 값을 가지며 기업의 연구개발투자 집중도 회귀계수는 모형 (3)에서 유의한 양(+)⁵⁾의 값을 가지는 반면 모형 (4)에서는 유의한 음(-)⁶⁾의 값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자본화비율이 높거나 연구개발투자 집중도가 높은 기업일수록 그 해외 자회사의 자본 수요는 증가하며 연구개발투자 비중이 낮은 기업일수록 자회사의 현지 노동수요가 증가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전기의 생산투입요소 수요는 현재의 생산투입요소 수요에 유의한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이고 있으나 기업 생산성의 회귀계수는 모형 (3)과 모형 (4)에서 모두 유의하지 않은 값을 가짐으로써 모기업 생산성과 해외 자회사의 생산 요소 수요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투자 대상국의 특징을 나타내는 통제변수들의 경우 모형 (3)과 모형 (4)에서 *GDP*와 *Dist*의 회귀계수는 모두 유의한 양 (+)의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투자 대상국의 경제규모가 크거나 한국으로부터 거리가 먼 곳일수록 그 국가 내에 위치하고 있는 자회사의 생산 요소 수요는 증가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또한, 모형 (3) 과 (4)에서 *FTax*의 회귀계수는 유의한 음(-)의 값을 가짐으로써 국내 한계실효세율보다 해외 자회사의 생산요소 수요는 대상 국가의 법인세율에 의해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4-7> 기업의 해외직접투자과 고용과의 관계: 기업별 수준 분석
(한계실효세율)

| 변수 | 모형(1) OLS (당해 연도) | 모형(2) 2SLS (당해 연도) | 모형(3) OLS (1년 후 시차) | 모형(4) 2SLS (1년 후 시차) |
|------------------------|----------------------|-----------------------|------------------------|-------------------------|
| <i>FDI</i> | -0.0025 (0.005) | -0.264*** (0.053) | -0.0026 (0.006) | -0.285*** (0.064) |
| <i>Wage</i> | 0.852*** (0.022) | 0.993*** (0.022) | 0.84*** (0.024) | 1.013*** (0.05) |
| <i>R</i> ² | 0.8834 | 0.7295 | 0.8773 | 7299 |
| <i>W.HF</i> | | 110.28 | | 63.25 |
| <i>D.W.H</i> χ^2 | | 71.62 | | 53.14 |
| <i>Sargan</i> χ^2 | | 6.512 (0.164) | | 2.6367 (0.6204) |
| 관측치수 | 3322 | 1304 | 2294 | 1017 |

주 1) ***, **, *는 각각 유의수준 1%, 5%, 10%에서 유의함을 의미함.

2) () 안은 standard error를 나타냄.

3) 산업 및 시간 더미변수들의 회귀계수 값들은 표에서 생략함.

한계실효세율이 기업의 해외직접투자자와 고용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자승법과 도구변수들을 사용하여 2단계 최소자승법으로 분석한 결과는 <표 4-7>에 나타나 있다. 본 절의 분석에서는 평균실효세율 대신 한계실효세율을 법인세율로서 사용했기 때문에 해외직접투자자와 고용 수준 간의 상관관계를 당해 연도 설명변수와 1년 시차설명변수를 가지고 최소자승법으로 분석한 모형 (1)과 모형 (3)은 <표 4-3>의 모형 (1)과 모형 (3)에서의 결과와 동일하다.

기업의 고용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해외직접투자가 식 (2-3)에서 내생변수임을 가정하고 한계실효세율을 포함하여 식 (2-1)에서 사용되었던 설명변수들을 기업 생산성을 제외하고 도구변수로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는 모형 (2)와 모형 (4)에 나타나 있다. 당해 연도의 설명변수와 도구변수들을 사용하여 분석한 모형 (2)에서 기업의 임금 수준을 나타내는 *Wage*의 회귀계수는 유의한 양(+)의 값을 가지고 있으며 기업의 해외직접투자액을 나타내는 *FDI*의 회귀계수는 유의한 음(-)의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평균실효세율을 도구변수로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와 비교했을 때 한계실효세율 변화로 인한 해외직접투자자 고용 수준에 미치는 영향은 평균실효세율로 인한 투자효과보다 큰 것을 알 수 있다. 1년 시차설명변수와 도구변수들을 사용하여 분석한 모형 (4)에서 *Wage*와 *FDI*의 회귀계수 모두 유의한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모형 (4)에서의 시차회귀계수 값들은 당해 연도의 계수 값과 비교했을 때 임금 수준과 해외직접투자 모두 고용 수준에 미치는 효과는 시차적으로 증가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임금이 고용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와 해외직접투자가 고용에 미치는 부정적인 효과는 1년 경과 후에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해외직접투자의 경우 평균실효세율의 변화를 통한 해외직접투자가 고용 수준에 미치는 효과가 시차적으로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에 비하여 한계실효세율의 변화를 통한 해외직접투자는 고용 수준에 상대적으로 작은 시차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앞 절에서 평균실효세율을 사용하여 2단계 최소자승법 모형을 통해 분석한 결과와 동일하게 한계실효세율은 해외직접투자를 통해 고용 수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한계실효세율이 고용 수준에 미치는 직·간접효과를 계산한 결과 당해 연도의 한계실효세율은 해외직접투자를 통해 고용 수준에 1% 유의수준 내에서 -0.0019의 간접효과를 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1년경과 후에는 고용 수준에 1% 유의수준 내에서 -0.0014의 간접효과를 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당해 연도의 한계실효세율이 고용 수준에 미치는 전체효과에서 약 18.65%가 기업의 해외직접투자 변화에 의한 것이며 1년경과 후 고용 수준에 미치는 전체효과 중에서는 약 18.37%가 해외직접투자의 변화를 통한 효과라는 것을 의미함으로써 고용 수준에 미치는 한계실효세율의 간접효과는 시차적으로 큰 변화가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한계실효세율은 기업의 해외직접투자 변화를 통하여 모기업 고용 수준에 일관적인 부의 효과를 주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2단계 최소자승법으로 분석한 결과에 대한 정당성을 검증한

결과 식 (2-3)에서 해외직접투자자 외생변수라는 귀무가설에서 Wu-Hausman F 통계량 값은 모형 (2)와 모형 (4)에서 각각 110.28과 63.25이고 Durbin-Wu-Hausman χ^2 통계량 값은 각 모형에서 71.62와 53.14로 1% 유의수준에서 귀무가설이 기각되어 해외직접투자자를 내생변수로 분석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2단계 최소자승법에서 사용된 한계실효세율을 포함한 도구변수의 적절성을 검증한 결과 모형 (2)와 (4)에서 사용된 도구변수들이 확률오차항과 무관하다는 귀무가설에서 Sargan의 χ^2 검정통계량 값은 각각 6.512와 2.6367 로 10% 유의수준에서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없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즉, 한계실효세율을 포함하여 <표 4-7>에서 사용된 도구변수들이 적절하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

<표 4-8> 기업의 해외직접투자자 고용과의 관계: 자회사별 수준 분석
(한계실효세율)

| 변수 | 모형(1) OLS (당해 연도) | 모형(2) 2SLS (당해 연도) | 모형(3) OLS (1년 후 시차) | 모형(4) 2SLS (1년 후 시차) |
|------------------------|----------------------|-----------------------|------------------------|-------------------------|
| <i>FDI</i> | 0.0065 (0.012) | -0.376*** (0.076) | 0.053 (0.014) | -0.244*** (0.072) |
| <i>Wage</i> | 0.864*** (0.017) | 0.993*** (0.023) | 0.845*** (0.017) | 0.951*** (0.025) |
| <i>R</i> ² | 0.9349 | 0.9123 | 0.9338 | 0.9452 |
| <i>W.H F</i> | | 56.23 | | 56.74 (0.00) |
| <i>D.W.H</i> χ^2 | | 116.81 | | 36.3 (0.00) |
| <i>Sargan</i> χ^2 | | 0.9018 (0.3423) | | 1.6475 (0.1993) |
| 관측치수 | 10286 | 3492 | 7106 | 2489 |

주 1) ***, **, *는 각각 유의수준 1%, 5%, 10%에서 유의함을 의미함.

2) () 안은 standard error를 나타냄.

3) 산업 및 시간 더미변수들의 회귀계수 값들은 표에서 생략함.

- 4) Wu-Hausman F 통계량(*W.H.F*)과 Durbin-Wu-Hausman(*D.W.H*) 통계량은 기업의 해외직접투자 변수(*FDI*)의 외생성 검증을 위해 사용되었으며 *Sargan* 통계량은 도구변수들의 적절성 검증을 위해 사용되었음.

〈표 4-8〉는 해외 자회사 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모기업의 해외직접투자가 고용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같은 설명변수들과 계량방법론을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이다. 모형 (1)과 모형 (3)은 기업의 총 해외직접투자의 고용 효과를 분석한 앞 절에서의 OLS 추정결과와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계실효세율을 포함하여 식 (2-5)에서 사용되었던 설명변수들을 당해 연도와 1년 시차를 고려하여 도구변수로서 분석한 결과 모형 (2)에서 당해 연도의 임금 수준과 해외직접투자액의 회귀계수는 모두 유의한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두 회귀계수의 부호 값은 당해 연도의 임금은 고용 수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당해 연도의 해외직접투자는 고용 수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특히 평균실효세율을 도구변수로 사용하여 추정한 결과보다 한계실효세율을 사용하여 추정한 해외직접투자의 부정적인 고용효과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년 시차설명변수와 도구변수로 분석한 결과 모형 (4)에서 기업의 임금과 해외직접투자액의 회귀계수는 여전히 유의한 값을 가지고 있으며 당해 연도의 회귀계수 값과 비교했을 때 기업의 임금 수준이 고용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는 1년경과 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해외직접투자가 고용에 미치는 부정적인 효과는 1년경과 후 역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기업별 수준의 분석결과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계실효세율이 고용 수준에 미치는 직·간접효과를 계산한 결과 당해 연도의 한계실효세율은 해외직접투자를 통해 고용 수준에 5%의 유의수준 내에서 -0.086의 간접효과를 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1년경과 후에는 고용 수준에 -0.1051의 간접효과를 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당해 연도의 한계실효세율이 고용 수준에 미치는 전체효과에서 약 34.73%가 기업의 해외직접투자 변화에 의한 것이며 1년경과 후 고용 수준에 미치는 전체효과 중에서는 약 22.49%가 해외직접투자의 변화를 통한 효과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즉, 해외직접투자를 통한 한계실효세율의 간접고용효과는 시차적으로 감소하는 것을 의미한다.

2단계 최소자승법으로 분석한 결과에 대한 정당성을 검증한 결과 식 (2-3)에서 해외직접투자가 외생변수라는 귀무가설에서 Wu-Hausman F 통계량 값은 모형 (2)와 모형 (4)에서 각각 56.23과 56.74이고 Durbin-Wu-Hausman χ^2 통계량 값은 각 모형에서 116.81과 36.3으로 모두 1% 유의수준에서 귀무가설이 기각되어 해외직접투자를 내생변수로 분석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2단계 최소자승법에서 사용된 한계실효세율과 해외 평균실효세율을 포함한 기업의 특징 및 투자 대상국의 특징을 나타내는 도구변수들의 적절성을 검증한 결과 모형 (2)와 (4)에서 사용된 도구변수들이 확률오차항과 무관하다는 귀무가설에서 Sargan의 χ^2 검정통계량 값은 각각 0.9018과 1.6475로 10% 유의수준에서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없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즉, 〈표 4-8〉에서 사용된 도구변수들이 적절하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

법인세 정책의 해외직접투자와 국내고용에 대한 효과 분석 연구

제 V 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5.1. 법인세 부담이 해외직접투자·국내 고용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에서는 2002년에서 2011년 사이 해외직접투자를 하고 있는 제조 산업 내 상장 기업들을 대상으로 국내 법인세율이 기업의 해외직접투자와 고용 수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개별 기업들이 소유하고 있는 해외 자회사들로의 총 투자액과 분석 기간 동안 새롭게 설립한 자회사 수를 이용하여 법인세율의 해외투자효과를 분석한 결과, 기업에게 부과되는 평균실효세율과 한계실효세율은 모두 기업의 해외직접투자액에 유의한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평균실효세율이 1%p 증가하면 기업의 총 해외직접투자액은 평균적으로 약 1.28%p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계실효세율이 1%p 증가하면 기업의 총 해외직접투자액은 평균적으로 약 4.98%p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분석기간 동안 한계실효세율의 해외직접투자 효과는 평균실효세율의 투자효과보다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즉, 기업의 해외투자는 국내 한계실효세율에 더욱 민감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기업의 총 해외투자 외에 해외 자회사의 정보를 통하여 기업들의 해외 생산요소 수요와 국내 법인세율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국내 법인세율은 해외 생산요소 수요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 상장 기업들의 해외 자회사 데이터를 사용하여 자회사

수준에서 모기업에게 부과되는 법인세율이 해외 자회사로의 투자와 자회사의 생산요소 수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평균실효세율과 한계실효세율은 모두 개별 자회사로의 해외투자액에 유의한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모기업에 부과되는 평균실효세율이 1%p 증가하면 그 기업에서 개별 자회사로의 해외투자액은 평균적으로 약 0.38%p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기업의 한계실효세율이 1%p 증가하면 개별 자회사로의 해외투자액은 평균적으로 약 0.61%p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한계실효세율의 투자효과가 더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자회사의 생산요소 수요를 분석한 결과, 해외 자회사들은 국내 법인세율보다 영업을 하고 있는 국가로부터 부과되는 평균실효세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국내 법인세율은 기업의 해외직접투자에 유의한 효과를 주는 반면 해외 법인세율은 기업의 해외 생산요소 수요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해외 평균 법인세율이 1%p 감소하면 개별 자회사의 자본 수요량은 평균적으로 약 0.08%p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현지 노동 수요량은 평균적으로 약 0.03%p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해외 법인세율은 자회사의 자본 수요에 더욱 큰 효과를 주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국내 법인세율과 해외직접투자와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를 이용하여 해외직접투자가 기업의 고용 수준에 미치는 결과를 기업 수준 데이터와 해외 자회사 수준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각각 분석한 결과, 국내 법인세율에 의한 해외직접투자는 기업의 고

용 수준에 유의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법인세율에 의한 해외직접투자는 시차적으로도 고용 수준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기업 수준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해외직접투자를 통한 국내 법인세율의 고용효과를 분석한 결과, 평균실효세율과 한계실효세율은 모두 해외직접투자의 변화를 통해 유의하게 고용 수준에 간접적인 효과를 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평균실효세율의 증가로 인한 해외직접투자가 1%p 증가하면 고용수준은 평균적으로 약 21.3%p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감소분 중에서 평균실효세율의 변화율이 약 18.7%를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 한계실효세율의 증가로 인한 해외직접투자가 1%p 증가하면 고용수준은 평균적으로 약 26.4%p 감소하며 이 중에서 한계실효세율의 변화가 약 18.6%를 설명함으로써 평균실효세율과 한계실효세율의 변화율이 고용수준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비슷한 수준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법인세율의 고용간접효과를 시차적으로 분석한 결과, 전기 평균실효세율의 증가로 인한 해외직접투자의 1%p 증가는 당해 고용수준을 약 28.9% 감소시키며 이 중에서 평균실효세율의 변화율이 약 17.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전기 한계실효세율의 증가로 인한 해외직접투자의 1%p 증가는 현재의 고용수준을 약 28.5%p 감소시키며 이중에서 한계실효세율의 변화율이 약 18.4%를 차지함으로써 전기의 한계실효세율의 증가가 해외직접투자 변화를 통해 현재 고용수준에 큰 부정적인 간접효과를 주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즉, 국내 법인세율의 증가

는 해외직접투자를 통해 기업의 고용 수준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으며 그 효과는 현재와 시차적으로 비슷한 것을 알 수 있다.

5.2. 정책적 시사점

이와 같은 실증분석의 결과는 우리나라의 법인세 부담, 즉 평균 및 한계실효세율이 증가할 경우 우리나라 기업들의 해외직접투자는 증가되고 이에 따라 국내 고용은 감소할 것을 전망하고 있다. 이는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을 낙관적으로 기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법인세 부담을 완화하여 해외로 이전될 수 있는 자본을 국내 생산에 투입하게 하는 동시에 국내 고용을 촉진시키는 방향으로 정부가 법인세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즉, 향후 고용확대나 경제성장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대기업을 포괄하여 기업에 대한 법인세 인하가 필요하며, 그 대신에 정부의 복지재원 조달 등을 위해서는 소득세 또는 부가가치세 인상으로의 전환이 바람직할 수 있겠다.

5.3. 연구의 한계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먼저 비록 자회사 자료 내에서 자회사들의 법인세전손익과 법인세비용 정보를 이용하여 자회사들에 부과되는 해외 법인세율이 해외직접투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분석하였으나, 현실에서는 투자 대상국별로 법인세 회계처리가 달라 본 분석에서 측정된 해외 평균실효세율은 이러한 사항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기존 해외 법인세율이 해외직접투자 유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분석한 선행연구들 대부분이 해외 법인세율이 유의한 효과가 있음을 밝혀냈다는 것을 고려할 때 본 분석에서의 해외 법인세율이 해외직접투자에 유의하지 않은 효과를 가지는 것은 위에서 언급한 국가별로 다른 회계처리기준이 반영되지 못했기 때문일 수 있다. 추후 연구에서 국가별로 상이한 법인세 회계처리를 반영하여 분석한다면 국내 법인세율의 투자효과를 심도 있게 분석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해외 법인세율 외에 기업의 해외 자회사가 모기업으로 지불하는 이자소득 등에 대한 과세 정보가 있다면 이를 통해 기업의 해외직접투자로 인한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을 고려하여 국내 법인세율의 투자효과 및 고용효과를 심도 있게 분석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한편 해외 자회사 데이터에서 많은 자회사들의 보고누락으로 인하여 분석 기간 동안 해외 자회사가 영업을 하고 있음에도 불

구하고 누락된 변수들이 많다. 특히 본 분석에서는 자회사 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새롭게 설립된 자회사들이 그 시점에서의 국내 법인세율에 의해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 분석하였지만 누락된 관측치들로 인해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하지 못하였다. 완전한 정보를 가지고 분석한다면 국내 법인세율의 투자효과에 대해 보다 의미 있는 분석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끝으로 본 연구는 법인세 부담의 변화가 우리나라 기업들의 해외투자와 국내 고용에 미치는 효과에 그 목적을 두어 분석하였으나, 이에 더해 우리나라 기업들의 국내투자 vs. 해외투자의 비중과 관련한 분석의 확장도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법인세 정책의 해외직접투자와 국내고용에 대한 효과 분석 연구

부 록



<부표 1> 본 연구의 분석대상 자산 및 산업 분류

| 대차대조표상 유형자산 분류 |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중분류) | |
|-------------------|-------------------|----------------------------------|
| | 코드 | 항목명 |
| 1 건물 | A | 농업, 임업 및 어업(01 ~ 03) |
| 2 구축물 | A01 | 농업 |
| 3 기계장치 | A02 | 임업 |
| 4 시설장치 | A03 | 어업 |
| 5 선박/항공기 | B | 광업(05 ~ 08) |
| 6 차량운반구 | B05 | 석탄, 원유 및 천연가스 광업 |
| 7 공구와기구 | B06 | 금속 광업 |
| 8 비품 | B07 | 비금속광물 광업; 연료용 제외 |
| 9 금형 | B08 | 광업 지원 서비스업 |
| 10 기타유형자산 | C | 제조업(10 ~ 33) |
| | C10 | 식료품 제조업 |
| | C11 | 음료 제조업 |
| | C12 | 담배 제조업 |
| | C13 |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제외 |
| | C14 |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
| | C15 |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
| | C16 |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 제외 |
| | C17 |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
| | C18 |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
| | C19 |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
| | C20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
| | C21 |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
| | C22 |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 | C23 |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 | C24 | 1차 금속 제조업 |
| | C25 |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
| | C26 |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 | C27 |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
| | C28 | 전기장비 제조업 |
| | C29 |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 | C30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 | C31 |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
| | C32 | 가구 제조업 |
| | C33 | 기타 제품 제조업 |
| | D |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35 ~ 36) |
| | D35 |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
| | D36 | 수도사업 |
| | E |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37 ~ 39) |
| | E37 |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 |

| 대차대조표상 유형자산 분류 |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중분류) | |
|-------------------|-------------------|--------------------------------|
| | 코드 | 항목명 |
| | E38 |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 |
| | E39 | 환경 정화 및 복원업 |
| | F | 건설업(41 ~ 42) |
| | F41 | 종합 건설업 |
| | F42 | 전문직별 공사업 |
| | G | 도매 및 소매업(45~47) |
| | G45 |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
| | G46 | 도매 및 상품중개업 |
| | G47 | 소매업; 자동차 제외 |
| | H | 운수업(49-52) |
| | H49 |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
| | H50 | 수상 운송업 |
| | H51 | 항공 운송업 |
| | H52 |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
| | I | 숙박 및 음식점업(55 ~ 56) |
| | I55 | 숙박업 |
| | I56 | 음식점 및 주점업 |
| | J |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58 ~ 63) |
| | J58 | 출판업 |
| | J59 |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
| | J60 | 방송업 |
| | J61 | 통신업 |
| | J62 |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
| | J63 | 정보서비스업 |
| | K | 금융 및 보험업(64 ~ 66) |
| | K64 | 금융업 |
| | K65 | 보험 및 연금업 |
| | K66 |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
| | L | 부동산업 및 임대업(68 ~ 69) |
| | L68 | 부동산업 |
| | L69 | 임대업; 부동산 제외 |
| | M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70 ~ 73) |
| | M70 | 연구개발업 |
| | M71 | 전문서비스업 |
| | M72 |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
| | M73 |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 | N |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74 ~ 75) |
| | N74 |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
| | N75 | 사업지원 서비스업 |
| | O |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84) |

| 대차대조표상 유형자산 분류 |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중분류) | |
|-------------------|-------------------|--|
| | 코드 | 항목명 |
| | O84 |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
| | P | 교육 서비스업(85) |
| | P85 | 교육 서비스업 |
| | Q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86~87) |
| | Q86 | 보건업 |
| | Q87 | 사회복지 서비스업 |
| | R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90~91) |
| | R90 |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 | R91 |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
| | S |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94~96) |
| | S94 | 협회 및 단체 |
| | S95 | 수리업 |
| | S96 | 기타 개인 서비스업 |
| | T |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97~98) |
| | T97 | 가구 내 고용활동 |
| | T98 |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를 위한 가구의 재화 및 서비스 생산활동 |
| | U | 국제 및 외국기관(99) |
| | U99 | 국제 및 외국기관 |

<부표 2> 광태원(1985.09)의 자산 및 산업부문 분류

| 자산분류 | 산업분류 |
|-----------------|-----------------|
| 1. 건물 구축물 | 1. 농림수산업 |
| 1.1 건물 | 2. 광업 |
| 1.11 주거용 | 3. 전 제조업 |
| 1.12 기타 | 4. 식료품 |
| 1.2 구축물 | 5. 음료품·담배 |
| 1.21 교통 시설 | 6. 섬유 |
| 1.22 발전 | 7. 의복 |
| 1.23 수리 급수 | 8. 가죽 신발 |
| 1.24 기타 | 9. 나무제품·가구·건구 |
| 2. 기계공구 기구 및 비품 | 10. 종이 |
| 2.1 기계 | 11. 인쇄·출판 |
| 2.2 공구·기구·비품 | 12. 화학 제품 |
| 2.21 공구 | 13. 석유 정제업 |
| 2.22 기구 및 비품 | 14. 기타 석유·석탄 제품 |
| 3. 수송기기 | 15. 고무제품 |
| 3.1 선박 | 16. 비금속·광물제조업 |
| 3.2 차량 및 운반구 | 17. 철 및 일차금속 |
| 3.21 궤도 차량 | 18. 조립금속제품 |
| 3.22 항공기 | 19. 기계제조업 |
| 3.23 자동차 | 20. 전기 기기 |
| 3.24 기타 | 21. 수송 장비 |
| 0. 합계 | 22. 광학·정밀 기기 |
| | 23. 기타 제조업 |
| | 24. 전기·수도·가스 |
| | 25. 건설 |
| | 26. 도·소매·음식·숙박 |
| | 27. 수송·보관·통신 |
| | 28. 금융·보험·부동산 |
| | 29. 기타 |
| | 30. 합계 |

자료: 광태원(1985.09)

<부표 3> Hulten-Wyckoff의 추정치에 의한 경제적 의미의 자본감가율

| 자산 \ 산업 | 1 | 2 | 3 | 4 | 5 | 6 | 7 | 8 |
|---------|-------|-------|-------|-------|-------|-------|-------|-------|
| 1. | 4.39 | 3.89 | 3.27 | 3.55 | 3.36 | 3.30 | 3.33 | 3.60 |
| 1.1 | 4.52 | 3.77 | 3.31 | 3.38 | 3.35 | 3.30 | 3.35 | 3.33 |
| 1.11 | 2.37 | 2.37 | 1.30 | 1.30 | 1.30 | 1.30 | 1.30 | 1.30 |
| 1.12 | 4.54 | 4.54 | 3.38 | 3.38 | 3.38 | 3.38 | 3.38 | 3.38 |
| 1.2 | 4.35 | 3.97 | 3.11 | 3.29 | 3.38 | 3.26 | 2.98 | 3.07 |
| 1.21 | 1.76 | 1.76 | 1.76 | 1.76 | 1.76 | 1.76 | 1.76 | 1.76 |
| 1.22 | 3.00 | 3.00 | 3.00 | 3.00 | 3.00 | 3.00 | 3.00 | 3.00 |
| 1.23 | 4.50 | 4.50 | 4.50 | 4.50 | 4.50 | 4.50 | 4.50 | 4.50 |
| 1.24 | 2.90 | 5.63 | 2.90 | 2.90 | 2.90 | 2.90 | 2.90 | 2.90 |
| 2. | 14.20 | 15.95 | 12.29 | 12.24 | 12.19 | 12.25 | 12.04 | 12.18 |
| 2.1 | 15.32 | 16.50 | 12.25 | 12.25 | 12.25 | 12.25 | 12.25 | 12.25 |
| 2.2 | 11.77 | 9.33 | 12.96 | 12.28 | 11.44 | 12.33 | 11.38 | 11.80 |
| 2.21 | 15.00 | 15.00 | 15.00 | 15.00 | 15.00 | 15.00 | 15.00 | 15.00 |
| 2.22 | 11.00 | 11.00 | 11.00 | 11.00 | 11.00 | 11.00 | 11.00 | 11.00 |
| 3. | 9.26 | 25.33 | 25.42 | 28.91 | 19.45 | 28.48 | 28.66 | 27.36 |
| 3.1 | 7.50 | 7.50 | 7.50 | 7.50 | 7.50 | 7.50 | 7.50 | 7.50 |
| 3.2 | 29.27 | 26.99 | 27.95 | 29.06 | 29.16 | 28.53 | 28.90 | 27.90 |
| 3.21 | 6.60 | 6.60 | 6.60 | 6.60 | 6.60 | 6.60 | 6.60 | 6.60 |
| 3.22 | 18.33 | 18.33 | 18.33 | 18.33 | 18.33 | 18.33 | 18.33 | 18.33 |
| 3.23 | 29.35 | 29.35 | 29.35 | 29.35 | 29.35 | 29.35 | 29.35 | 29.35 |
| 3.24 | 29.35 | 29.35 | 29.35 | 29.35 | 29.35 | 29.35 | 29.35 | 29.35 |
| 0. | 6.83 | 10.18 | 9.06 | 8.74 | 7.64 | 8.95 | 8.04 | 7.74 |

〈부표 3〉 계속

| 자산 \ 산업 | 9 | 10 | 11 | 12 | 13 | 14 | 15 |
|---------|-------|-------|-------|-------|-------|-------|-------|
| 1. | 3.32 | 3.62 | 3.26 | 3.23 | 3.40 | 3.18 | 3.35 |
| 1.1 | 3.36 | 3.37 | 3.25 | 3.25 | 3.26 | 3.35 | 3.37 |
| 1.11 | 1.30 | 1.30 | 1.30 | 1.30 | 1.30 | 1.30 | 1.30 |
| 1.12 | 3.38 | 3.38 | 3.38 | 3.38 | 3.38 | 3.38 | 3.38 |
| 1.2 | 2.94 | 3.44 | 3.40 | 3.12 | 3.50 | 2.70 | 3.03 |
| 1.21 | 1.76 | 1.76 | 1.76 | 1.76 | 1.76 | 1.76 | 1.76 |
| 1.22 | 3.00 | 3.00 | 3.00 | 3.00 | 3.00 | 3.00 | 3.00 |
| 1.23 | 4.50 | 4.50 | 4.50 | 4.50 | 4.50 | 4.50 | 4.50 |
| 1.24 | 2.90 | 2.90 | 2.90 | 2.90 | 2.90 | 2.90 | 2.90 |
| 2. | 12.27 | 12.25 | 12.32 | 12.26 | 12.25 | 12.54 | 12.36 |
| 2.1 | 12.25 | 12.25 | 12.25 | 12.25 | 12.25 | 12.25 | 12.25 |
| 2.2 | 12.60 | 12.27 | 12.93 | 12.45 | 11.95 | 14.11 | 13.73 |
| 2.21 | 15.00 | 15.00 | 15.00 | 15.00 | 15.00 | 15.00 | 15.00 |
| 2.22 | 11.00 | 11.00 | 11.00 | 11.00 | 11.00 | 11.00 | 11.00 |
| 3. | 21.85 | 30.27 | 28.51 | 27.24 | 17.84 | 28.03 | 28.32 |
| 3.1 | 7.50 | 7.50 | 7.50 | 7.50 | 7.50 | 7.50 | 7.50 |
| 3.2 | 28.66 | 30.50 | 28.80 | 27.29 | 18.47 | 28.17 | 28.68 |
| 3.21 | 6.60 | 6.60 | 6.60 | 6.60 | 6.60 | 6.60 | 6.60 |
| 3.22 | 18.33 | 18.33 | 18.33 | 18.33 | 18.33 | 18.33 | 18.33 |
| 3.23 | 29.35 | 29.35 | 29.35 | 29.35 | 29.35 | 29.35 | 29.35 |
| 3.24 | 29.35 | 29.35 | 29.35 | 29.35 | 29.35 | 29.35 | 29.35 |
| 0. | 8.56 | 10.18 | 8.92 | 9.13 | 10.04 | 12.86 | 10.05 |

〈부표 3〉 계속

| 자산 | 산업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
| 1. | | 3.25 | 3.24 | 3.19 | 3.32 | 3.33 | 2.83 | 3.24 | 3.32 |
| | 1.1 | 3.34 | 3.23 | 3.36 | 3.35 | 3.34 | 3.19 | 3.26 | 3.35 |
| | 1.11 | 1.30 | 1.30 | 1.30 | 1.30 | 1.30 | 1.30 | 1.30 | 1.30 |
| | 1.12 | 3.38 | 3.38 | 3.38 | 3.38 | 3.38 | 3.38 | 3.38 | 3.38 |
| | 1.2 | 2.79 | 3.26 | 1.44 | 3.03 | 3.15 | 2.10 | 3.01 | 2.96 |
| | 1.21 | 1.76 | 1.76 | 1.76 | 1.76 | 1.76 | 1.76 | 1.76 | 1.76 |
| | 1.22 | 3.00 | 3.00 | 3.00 | 3.00 | 3.00 | 3.00 | 3.00 | 3.00 |
| | 1.23 | 4.50 | 4.50 | 4.50 | 4.50 | 4.50 | 4.50 | 4.50 | 4.50 |
| | 1.24 | 2.90 | 2.90 | 2.90 | 2.90 | 2.90 | 2.90 | 2.90 | 2.90 |
| 2. | | 12.34 | 12.27 | 12.35 | 12.34 | 12.45 | 12.38 | 12.47 | 12.22 |
| | 2.1 | 12.25 | 12.25 | 12.25 | 12.25 | 12.25 | 12.25 | 12.25 | 12.25 |
| | 2.2 | 14.60 | 13.37 | 13.34 | 13.06 | 13.39 | 13.38 | 13.25 | 12.09 |
| | 2.21 | 15.00 | 15.00 | 15.00 | 15.00 | 15.00 | 15.00 | 15.00 | 15.00 |
| | 2.22 | 11.00 | 11.00 | 11.00 | 11.00 | 11.00 | 11.00 | 11.00 | 11.00 |
| 3. | | 25.17 | 22.84 | 28.73 | 27.66 | 28.90 | 24.72 | 24.52 | 28.44 |
| | 3.1 | 7.50 | 7.50 | 7.50 | 7.50 | 7.50 | 7.50 | 7.50 | 7.50 |
| | 3.2 | 27.99 | 23.74 | 28.98 | 30.15 | 29.05 | 28.94 | 25.84 | 28.69 |
| | 3.21 | 6.60 | 6.60 | 6.60 | 6.60 | 6.60 | 6.60 | 6.60 | 6.60 |
| | 3.22 | 18.33 | 18.33 | 18.33 | 18.33 | 18.33 | 18.33 | 18.33 | 18.33 |
| | 3.23 | 29.35 | 29.35 | 29.35 | 29.35 | 29.35 | 29.35 | 29.35 | 29.35 |
| | 3.24 | 29.35 | 29.35 | 29.35 | 29.35 | 29.35 | 29.35 | 29.35 | 29.35 |
| 0. | | 9.41 | 3.84 | 9.70 | 9.76 | 9.11 | 9.22 | 8.23 | 8.70 |

〈부표 3〉 계속

| 자산 \ 산업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
| 1. | 3.45 | 2.55 | 2.44 | 1.90 | 2.46 | 2.31 | 2.71 |
| 1.1 | 2.93 | 2.51 | 2.44 | 2.65 | 2.46 | 1.98 | 2.68 |
| 1.11 | 1.30 | 1.30 | 1.30 | 1.30 | 1.30 | 1.30 | 1.30 |
| 1.12 | 2.93 | 3.04 | 2.47 | 2.70 | 2.47 | 2.03 | 2.75 |
| 1.2 | 3.64 | 2.84 | 2.41 | 1.85 | 2.72 | 3.77 | 2.75 |
| 1.21 | 1.76 | 1.76 | 1.76 | 1.76 | 1.76 | 1.76 | 1.76 |
| 1.22 | 3.00 | 3.00 | 3.00 | 3.00 | 3.00 | 3.00 | 3.00 |
| 1.23 | 4.50 | 4.50 | 4.50 | 4.50 | 4.50 | 4.50 | 4.50 |
| 1.24 | 2.90 | 2.90 | 2.90 | 2.90 | 2.90 | 2.90 | 3.05 |
| 2. | 11.79 | 16.62 | 12.29 | 15.65 | 14.28 | 12.99 | 12.82 |
| 2.1 | 11.79 | 17.22 | 16.50 | 16.50 | 16.50 | 16.50 | 13.02 |
| 2.2 | 11.98 | 12.84 | 11.11 | 11.54 | 11.07 | 11.12 | 11.74 |
| 2.21 | 15.00 | 15.00 | 15.00 | 15.00 | 15.00 | 15.00 | 15.00 |
| 2.22 | 11.00 | 11.00 | 11.00 | 11.00 | 11.00 | 11.00 | 11.00 |
| 3. | 25.59 | 22.99 | 27.54 | 15.16 | 27.95 | 20.61 | 17.27 |
| 3.1 | 7.50 | 7.50 | 7.50 | 7.50 | 7.50 | 7.50 | 7.50 |
| 3.2 | 26.62 | 29.28 | 29.41 | 17.78 | 29.16 | 28.33 | 22.67 |
| 3.21 | 6.60 | 6.60 | 6.60 | 6.60 | 6.60 | 6.60 | 6.60 |
| 3.22 | 18.33 | 18.33 | 18.33 | 18.33 | 18.33 | 18.33 | 18.33 |
| 3.23 | 29.35 | 29.35 | 29.35 | 29.35 | 29.35 | 29.35 | 29.35 |
| 3.24 | 29.35 | 29.35 | 29.35 | 29.35 | 29.35 | 29.35 | 29.35 |
| 0. | 6.63 | 9.17 | 6.16 | 5.41 | 3.69 | 3.88 | 6.64 |

자료: 콕테원(1985)

<부표 4> 경제적 감가상각율(δ)

(단위: %)

| | 건물 | 구축물 | 기계 장치 | 시설 장치 | 선박 항공기 | 차량 운반구 | 공구와 기구 | 비품 | 금형 | 기타 유형 자산 |
|-----|------|------|----------|----------|-----------|-----------|-----------|-------|-------|----------------|
| A | 4.52 | 4.35 | 15.32 | 15.32 | 12.92 | 21.77 | 11.77 | 11.77 | 15.32 | 15.32 |
| B | 3.77 | 3.97 | 16.50 | 16.50 | 12.92 | 21.77 | 9.33 | 9.33 | 16.50 | 16.50 |
| C10 | 3.38 | 3.29 | 12.25 | 12.25 | 12.92 | 21.77 | 12.28 | 12.28 | 12.25 | 12.25 |
| C11 | 3.35 | 3.38 | 12.25 | 12.25 | 12.92 | 21.77 | 11.44 | 11.44 | 12.25 | 12.25 |
| C12 | 3.35 | 3.38 | 12.25 | 12.25 | 12.92 | 21.77 | 11.44 | 11.44 | 12.25 | 12.25 |
| C13 | 3.30 | 3.26 | 12.25 | 12.25 | 12.92 | 21.77 | 12.33 | 12.33 | 12.25 | 12.25 |
| C14 | 3.35 | 2.98 | 12.25 | 12.25 | 12.92 | 21.77 | 11.38 | 11.38 | 12.25 | 12.25 |
| C15 | 3.33 | 3.07 | 12.25 | 12.25 | 12.92 | 21.77 | 11.80 | 11.80 | 12.25 | 12.25 |
| C16 | 3.36 | 2.94 | 12.25 | 12.25 | 12.92 | 21.77 | 12.60 | 12.60 | 12.25 | 12.25 |
| C17 | 3.37 | 3.44 | 12.25 | 12.25 | 12.92 | 21.77 | 12.27 | 12.27 | 12.25 | 12.25 |
| C18 | 3.25 | 3.40 | 12.25 | 12.25 | 12.92 | 21.77 | 12.93 | 12.93 | 12.25 | 12.25 |
| C19 | 3.31 | 3.10 | 12.25 | 12.25 | 12.92 | 21.77 | 13.03 | 13.03 | 12.25 | 12.25 |
| C20 | 3.25 | 3.12 | 12.25 | 12.25 | 12.92 | 21.77 | 12.45 | 12.45 | 12.25 | 12.25 |
| C21 | 3.25 | 3.12 | 12.25 | 12.25 | 12.92 | 21.77 | 12.45 | 12.45 | 12.25 | 12.25 |
| C22 | 3.37 | 3.03 | 12.25 | 12.25 | 12.92 | 21.77 | 13.73 | 13.73 | 12.25 | 12.25 |
| C23 | 3.34 | 2.79 | 12.25 | 12.25 | 12.92 | 21.77 | 14.60 | 14.60 | 12.25 | 12.25 |
| C24 | 3.23 | 3.26 | 12.25 | 12.25 | 12.92 | 21.77 | 13.37 | 13.37 | 12.25 | 12.25 |
| C25 | 3.36 | 1.44 | 12.25 | 12.25 | 12.92 | 21.77 | 13.34 | 13.34 | 12.25 | 12.25 |
| C26 | 3.34 | 3.15 | 12.25 | 12.25 | 12.92 | 21.77 | 13.39 | 13.39 | 12.25 | 12.25 |
| C27 | 3.26 | 3.01 | 12.25 | 12.25 | 12.92 | 21.77 | 13.25 | 13.25 | 12.25 | 12.25 |
| C28 | 3.34 | 3.15 | 12.25 | 12.25 | 12.92 | 21.77 | 13.39 | 13.39 | 12.25 | 12.25 |
| C29 | 3.35 | 3.03 | 12.25 | 12.25 | 12.92 | 21.77 | 13.06 | 13.06 | 12.25 | 12.25 |
| C30 | 3.19 | 2.10 | 12.25 | 12.25 | 12.92 | 21.77 | 13.38 | 13.38 | 12.25 | 12.25 |
| C31 | 3.19 | 2.10 | 12.25 | 12.25 | 12.92 | 21.77 | 13.38 | 13.38 | 12.25 | 12.25 |
| C32 | 3.36 | 2.94 | 12.25 | 12.25 | 12.92 | 21.77 | 12.60 | 12.60 | 12.25 | 12.25 |
| C33 | 3.35 | 2.96 | 12.25 | 12.25 | 12.92 | 21.77 | 12.09 | 12.09 | 12.25 | 12.25 |
| D | 2.93 | 3.64 | 11.79 | 11.79 | 12.92 | 21.77 | 11.98 | 11.98 | 11.79 | 11.79 |
| E | 1.98 | 3.77 | 16.50 | 16.50 | 12.92 | 21.77 | 11.12 | 11.12 | 16.50 | 16.50 |
| F | 2.51 | 2.84 | 17.22 | 17.22 | 12.92 | 21.77 | 12.84 | 12.84 | 17.22 | 17.22 |
| G | 2.44 | 2.41 | 16.50 | 16.50 | 12.92 | 21.77 | 11.11 | 11.11 | 16.50 | 16.50 |
| H | 2.65 | 1.85 | 16.50 | 16.50 | 12.92 | 21.77 | 11.54 | 11.54 | 16.50 | 16.50 |
| I | 2.44 | 2.41 | 16.50 | 16.50 | 12.92 | 21.77 | 11.11 | 11.11 | 16.50 | 16.50 |
| J58 | 1.98 | 3.77 | 16.50 | 16.50 | 12.92 | 21.77 | 11.12 | 11.12 | 16.50 | 16.50 |
| J59 | 1.98 | 3.77 | 16.50 | 16.50 | 12.92 | 21.77 | 11.12 | 11.12 | 16.50 | 16.50 |
| J60 | 1.98 | 3.77 | 16.50 | 16.50 | 12.92 | 21.77 | 11.12 | 11.12 | 16.50 | 16.50 |
| J61 | 2.65 | 1.85 | 16.50 | 16.50 | 12.92 | 21.77 | 11.54 | 11.54 | 16.50 | 16.50 |
| J62 | 1.98 | 3.77 | 16.50 | 16.50 | 12.92 | 21.77 | 11.12 | 11.12 | 16.50 | 16.50 |

| | 건물 | 구축물 | 기계 장치 | 시설 장치 | 선박 항공기 | 차량 운반구 | 공구와 기구 | 비품 | 금형 | 기타 유형 자산 |
|-----|------|------|----------|----------|-----------|-----------|-----------|-------|-------|----------------|
| J63 | 1.98 | 3.77 | 16.50 | 16.50 | 12.92 | 21.77 | 11.12 | 11.12 | 16.50 | 16.50 |
| K | 2.46 | 2.72 | 16.50 | 16.50 | 12.92 | 21.77 | 11.07 | 11.07 | 16.50 | 16.50 |
| L68 | 2.46 | 2.72 | 16.50 | 16.50 | 12.92 | 21.77 | 11.07 | 11.07 | 16.50 | 16.50 |
| L69 | 1.98 | 3.77 | 16.50 | 16.50 | 12.92 | 21.77 | 11.12 | 11.12 | 16.50 | 16.50 |
| M | 1.98 | 3.77 | 16.50 | 16.50 | 12.92 | 21.77 | 11.12 | 11.12 | 16.50 | 16.50 |
| N | 1.98 | 3.77 | 16.50 | 16.50 | 12.92 | 21.77 | 11.12 | 11.12 | 16.50 | 16.50 |
| O | 1.98 | 3.77 | 16.50 | 16.50 | 12.92 | 21.77 | 11.12 | 11.12 | 16.50 | 16.50 |
| P | 1.98 | 3.77 | 16.50 | 16.50 | 12.92 | 21.77 | 11.12 | 11.12 | 16.50 | 16.50 |
| Q | 1.98 | 3.77 | 16.50 | 16.50 | 12.92 | 21.77 | 11.12 | 11.12 | 16.50 | 16.50 |
| R | 1.98 | 3.77 | 16.50 | 16.50 | 12.92 | 21.77 | 11.12 | 11.12 | 16.50 | 16.50 |
| S | 1.98 | 3.77 | 16.50 | 16.50 | 12.92 | 21.77 | 11.12 | 11.12 | 16.50 | 16.50 |
| T | 1.98 | 3.77 | 16.50 | 16.50 | 12.92 | 21.77 | 11.12 | 11.12 | 16.50 | 16.50 |
| U | 1.98 | 3.77 | 16.50 | 16.50 | 12.92 | 21.77 | 11.12 | 11.12 | 16.50 | 16.50 |

<부표 5> 법인세율

(법인세)

| 구분 | 1980 | | 1981 | | 1982 | | |
|----------------------------|------------|---------------|---------------|---------------|---------------|---------------|---------------|
| | 과세표준 | 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
| 일반법인 (중소법인) | 300만 원 이하 | 20(15)% | 5000만 원 이하 | 25% | 22% | | |
| | 300~500만 원 | 30(25)% | | | | | |
| | 500만 원 초과 | 40(35)% | | | | | |
| 공개법인 (대주주 비중 35% 초과) | 500만 원 이하 | 20(25)% | 5000만 원 이하 | 25% | 22% | | |
| | 500만 원 초과 | 30(35)% | 5000만 원 초과 | 33(40)% | 33(38)% | | |
| 비영리법인 (학교법인) | 500만 원 이하 | 20(15)% | 5000만 원 이하 | 20% | 20% | | |
| | 500만 원 초과 | 27% | 5000만 원 초과 | 27% | 27% | | |
| 구분 | 1983~1988 | | | 1989~1990 | | | |
| | 과세표준 | 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
| 일반법인 (비상장대법인) | 5000만 원 이하 | 20% | 8000만 원 이하 | 20% | | | |
| | 5000만 원 초과 | 30(33)% | 8000만 원 초과 | 30(33)% | | | |
| 비영리법인 | 5000만 원 이하 | 20% | 8000만 원 이하 | 20% | | | |
| | 5000만 원 초과 | 27% | 8000만 원 초과 | 27% | | | |
| 구분 | 과세표준 | 1991 ~1993 | 1994 ~1995 | 1996 ~1997 | 1998 ~2001 | 2002 ~2003 | 2004 ~2008 |
| | | 세율 | 세율 | 세율 | 세율 | 세율 | 세율 |
| 일반법인 | 1억 원 이하 | 20% | 18% | 18% | 16% | 15% | 13% |
| | 1억 원 초과 | 34% | 32% | 30% | 28% | 27% | 25% |
| 구분 | 과세표준 | 2009 | 2010~2011 | 2012~2014 | | | |
| | | 세율 | 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 |
| 일반법인 | 2억 원 이하 | 11% | 10% | 2억 원 이하 | 10% | | |
| | 2억 원 초과 | 22% | 22% | 2~200억 원 | 20% | | |
| | | | | 200억 원 초과 | 22% | | |

- 주: 1) 각 연도는 법인세법 시행연도임.
 2) 공개법인: 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하고 있거나 모집설립 또는 공모증자한 내국법인
 3) 대주주 비중 35% 초과: 주주의 1인과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한 주식의 총수가 발행총주식수의 100분의 35 초과
 4) 비상장대법인: 상장법인 외의 내국법인으로서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주식발행자본금이 50억 원을 초과하거나, 자기자본의 총액이 100억 원을 초과하는 법인

(지방세)

| | 과세표준 | 1985~2000 | 2001~2010 | 2011~2013 |
|------|------|-----------|-----------|-----------|
| | | 세율 | 세율 | 세율 |
| 법인세분 | 법인세액 | 7.5% | 10% | 10% |

<부표 6> 소득세율

(종합소득세)

(단위: 만 원)

| 1982 | | 1983~1988 | | 1989~1990 | |
|---------------|---------------|---------------|---------------|--------------|---------------|
| • 17단계(6~60%) | | • 16단계(6~55%) | | • 8단계(5~50%) | |
| 과세표준 | 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 120 이하: | 6% | 180 이하: | 6% | 250 이하: | 5% |
| 120~180: | 7.2 + 7% | 180~250: | 10.8 + 8% | 250~500: | 12.5 + 10% |
| 180~240: | 11.4 + 8% | 250~350: | 16.4 + 10% | 500~800: | 37.5 + 15% |
| 240~300: | 16.2 + 10% | 350~480: | 26.4 + 12% | 800~1,200: | 82.5 + 20% |
| 300~390: | 22.2 + 12% | 480~630: | 42 + 15% | 1,200~1,700: | 162.5 + 25% |
| 390~480: | 33 + 15% | 630~800: | 64.5 + 18% | 1,700~2,300: | 287.5 + 30% |
| 480~600: | 46.5 + 18% | 800~1,000: | 95.1 + 21% | 2,300~5,000: | 467.5 + 40% |
| 600~840: | 68.1 + 22% | 1,000~1,250: | 137.1 + 24% | 5,000 초과: | 1,547.5 + 50% |
| 840~1,140: | 120.9 + 26% | 1,250~1,550: | 197.1 + 27% | | |
| 1,140~1,500: | 198.9 + 30% | 1,550~1,900: | 278.1 + 31% | | |
| 1,500~1,900: | 306.9 + 34% | 1,900~2,300: | 386.6 + 35% | | |
| 1,900~2,400: | 442.9 + 38% | 2,300~2,900: | 526.6 + 39% | | |
| 2,400~3,000: | 632.9 + 42% | 2,900~3,700: | 760.6 + 43% | | |
| 3,000~3,800: | 884.9 + 48% | 3,700~4,700: | 1,104.6 + 47% | | |
| 3,800~4,800: | 1,252.9 + 50% | 4,700~6,000: | 1,574.6 + 51% | | |
| 4,800~6,000: | 1,752.9 + 55% | 6,000 초과: | 2,237.6 + 5% | | |
| 6,000 초과: | 2,412.9 + 60% | | | | |
| 1991~1992 | | 1993 | | 1994~1995 | |
| • 5단계(5~50%) | | • 6단계(5~50%) | | • 6단계(5~45%) | |
| 과세표준 | 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 400 이하: | 5% | 400 이하: | 5% | 400 이하: | 5% |
| 400~1,000: | 20 + 16% | 400~800: | 20 + 10% | 400~800: | 20 + 9% |
| 1,000~2,500: | 116 + 27% | 800~1,600: | 60 + 20% | 800~1,600: | 56 + 18% |
| 2,500~5,000: | 521 + 38% | 1,600~3,200: | 220 + 30% | 1,600~3,200: | 200 + 27% |
| 5,000 초과: | 1,471 + 50% | 3,200~6,400: | 700 + 40% | 3,200~6,400: | 632 + 36% |
| | | 6,400 초과: | 1,980 + 50% | 6,400 초과: | 1,784 + 45% |
| 1996~2001 | | 2002~2004 | | 2005~2007 | |
| • 4단계(10~40%) | | • 4단계(9~36%) | | • 4단계(8~35%) | |
| 과세표준 | 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 1000 이하: | 10% | 1,000 이하: | 9% | 1,000 이하: | 8% |
| 1,000~4,000: | 100 + 20% | 1,000~4,000: | 90 + 18% | 1,000~4,000: | 80 + 17% |
| 4,000~8,000: | 700 + 30% | 4,000~8,000: | 630 + 27% | 4,000~8,000: | 590 + 26% |
| 8,000 초과: | 1,900 + 40% | 8,000 초과: | 1,710 + 36% | 8,000 초과: | 1,630 + 35% |

| 1991~1992 | | 1993 | | 1994~1995 | |
|---------------|-------------|---------------|-------------|--------------|-------------|
| • 5단계(5~50%) | | • 6단계(5~50%) | | • 6단계(5~45%) | |
| 과세표준 | 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 400 이하: | 5% | 400 이하: | 5% | 400 이하: | 5% |
| 400~1,000: | 20 + 16% | 400~800: | 20 + 10% | 400~800: | 20 + 9% |
| 1,000~2,500: | 116 + 27% | 800~1,600: | 60 + 20% | 800~1,600: | 56 + 18% |
| 2,500~5,000: | 521 + 38% | 1,600~3,200: | 220 + 30% | 1,600~3,200: | 200 + 27% |
| 5,000 초과: | 1,471 + 50% | 3,200~6,400: | 700 + 40% | 3,200~6,400: | 632 + 36% |
| | | 6,400 초과: | 1,980 + 50% | 6,400 초과: | 1,784 + 45% |
| 1996~2001 | | 2002~2004 | | 2005~2007 | |
| • 4단계(10~40%) | | • 4단계(9~36%) | | • 4단계(8~35%) | |
| 과세표준 | 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 1000 이하: | 10% | 1,000 이하: | 9% | 1,000 이하: | 8% |
| 1,000~4,000: | 100 + 20% | 1,000~4,000: | 90 + 18% | 1,000~4,000: | 80 + 17% |
| 4,000~8,000: | 700 + 30% | 4,000~8,000: | 630 + 27% | 4,000~8,000: | 590 + 26% |
| 8,000 초과: | 1,900 + 40% | 8,000 초과: | 1,710 + 36% | 8,000 초과: | 1,630 + 35% |
| 2008 | | 2009 | | | |
| • 4단계(8~35%) | | • 4단계(8~35%) | | | |
| 과세표준 | 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 |
| 1,200 이하: | 8% | 1,200 이하: | 8% | | |
| 1,200~4,600: | 96 + 17% | 1,200~4,600: | 72 + 16% | | |
| 4,600~8,800: | 674 + 26% | 4,600~8,800: | 616 + 25% | | |
| 8,800 초과: | 1,766 + 35% | 8,800 초과: | 1,666 + 35% | | |
| 2010~2011 | | 2012~2013 | | | |
| • 4단계(6~35%) | | • 5단계(6~38%) | | | |
| 과세표준 | 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 |
| 1,200 이하: | 6% | 1,200 이하: | 6% | | |
| 1,200~4,600: | 72 + 15% | 1,200~4,600: | 72 + 15% | | |
| 4,600~8,800: | 582 + 24% | 4,600~8,800: | 582 + 24% | | |
| 8,800 초과: | 1,590 + 35% | 8,800~30,000: | 1,590 + 35% | | |
| | | 30,000 초과: | 9,010 + 38% | | |

(금융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

| | 1983~1995 | 1996~1998.09 | 1998.10~1999 | 2000~2004 | 2005~2013 |
|------|-----------|--------------|--------------|-----------|-----------|
| 이자소득 | 25% | 15% | 22% | 15% | 14% |
| 배당소득 | 25% | 15% | 20% | 15% | 14% |

(지방세)

| | 과세표준 | 1985~2000 | 2001~2010 | 2011~2013 |
|------|------|-----------|-----------|-----------|
| | | 세율 | 세율 | 세율 |
| 소득세분 | 소득세액 | 7.5% | 10% | 10% |

<부표 7> 공통자산에 대한 평균 기준내용연수(T)

| | 건물 | 건축물 | 선박 항공기 | 차량 운반구 | 공구와 기구 | 비품 |
|------|----|-----|-----------|-----------|-----------|----|
| 1985 | 22 | 27 | 7 | 8 | 5 | 5 |
| 1986 | 21 | 26 | 7 | 8 | 5 | 5 |
| 1987 | 21 | 26 | 7 | 8 | 5 | 5 |
| 1988 | 21 | 26 | 7 | 7 | 5 | 5 |
| 1989 | 21 | 26 | 7 | 7 | 5 | 5 |
| 1990 | 21 | 26 | 7 | 7 | 5 | 5 |
| 1991 | 21 | 26 | 7 | 7 | 5 | 5 |
| 1992 | 21 | 26 | 7 | 7 | 5 | 5 |
| 1993 | 21 | 26 | 7 | 7 | 5 | 5 |
| 1994 | 21 | 26 | 7 | 7 | 5 | 5 |
| 1995 | 23 | 23 | 10 | 4 | 4 | 4 |
| 1996 | 23 | 23 | 10 | 4 | 4 | 4 |
| 1997 | 23 | 23 | 10 | 4 | 4 | 4 |
| 1998 | 23 | 23 | 10 | 4 | 4 | 4 |
| 1999 | 23 | 23 | 12 | 5 | 5 | 5 |
| 2000 | 23 | 23 | 12 | 5 | 5 | 5 |
| 2001 | 23 | 23 | 12 | 5 | 5 | 5 |
| 2002 | 23 | 23 | 12 | 5 | 5 | 5 |
| 2003 | 23 | 23 | 12 | 5 | 5 | 5 |
| 2004 | 23 | 23 | 12 | 5 | 5 | 5 |
| 2005 | 23 | 23 | 12 | 5 | 5 | 5 |
| 2006 | 23 | 23 | 12 | 5 | 5 | 5 |
| 2007 | 23 | 23 | 12 | 5 | 5 | 5 |
| 2008 | 23 | 23 | 12 | 5 | 5 | 5 |
| 2009 | 23 | 23 | 12 | 5 | 5 | 5 |
| 2010 | 23 | 23 | 12 | 5 | 5 | 5 |
| 2011 | 23 | 23 | 12 | 5 | 5 | 5 |
| 2012 | 23 | 23 | 12 | 5 | 5 | 5 |
| 2013 | 23 | 23 | 12 | 5 | 5 | 5 |

| | | | | | | | | | | |
|-----|------|------|------|------|------|------|------|------|------|------|
| | 1985 | 1986 | 1987 | 1988 | 1989 | 1990 | 1991 | 1992 | 1993 | 1994 |
| J58 | 7 | 6 | 6 | 6 | 6 | 6 | 6 | 6 | 6 | 6 |
| J59 | 7 | 6 | 6 | 6 | 6 | 6 | 6 | 6 | 6 | 6 |
| J60 | 7 | 6 | 6 | 6 | 6 | 6 | 6 | 6 | 6 | 6 |
| J61 | 9 | 8 | 8 | 8 | 8 | 8 | 8 | 8 | 8 | 8 |
| J62 | 7 | 6 | 6 | 6 | 6 | 6 | 6 | 6 | 6 | 6 |
| J63 | 7 | 6 | 6 | 6 | 6 | 6 | 6 | 6 | 6 | 6 |
| K64 | 7 | 6 | 6 | 6 | 6 | 6 | 6 | 6 | 6 | 6 |
| K65 | 7 | 6 | 6 | 6 | 6 | 6 | 6 | 6 | 6 | 6 |
| K66 | 7 | 6 | 6 | 6 | 6 | 6 | 6 | 6 | 6 | 6 |
| L68 | 7 | 6 | 6 | 6 | 6 | 6 | 6 | 6 | 6 | 6 |
| L69 | 7 | 6 | 6 | 6 | 6 | 6 | 6 | 6 | 6 | 6 |
| M | 7 | 6 | 6 | 6 | 6 | 6 | 6 | 6 | 6 | 6 |
| N | 7 | 6 | 6 | 6 | 6 | 6 | 6 | 6 | 6 | 6 |
| O84 | 7 | 6 | 6 | 6 | 6 | 6 | 6 | 6 | 6 | 6 |
| P85 | 7 | 6 | 6 | 6 | 6 | 6 | 6 | 6 | 6 | 6 |
| Q | 7 | 6 | 6 | 6 | 6 | 6 | 6 | 6 | 6 | 6 |
| R | 7 | 6 | 6 | 6 | 6 | 6 | 6 | 6 | 6 | 6 |
| S | 7 | 6 | 6 | 6 | 6 | 6 | 6 | 6 | 6 | 6 |
| T | 13 | 11 | 11 | 11 | 11 | 11 | 11 | 11 | 11 | 11 |
| U99 | 13 | 11 | 11 | 11 | 11 | 11 | 11 | 11 | 11 | 11 |
| | 1995 | 1996 | 1997 | 1998 | 1999 | 2000 | 2001 | 2002 | 2003 | 2004 |
| A01 | 4 | 4 | 4 | 4 | 5 | 5 | 5 | 5 | 5 | 5 |
| A02 | 4 | 4 | 4 | 4 | 5 | 5 | 5 | 5 | 5 | 5 |
| A03 | 8 | 8 | 8 | 8 | 10 | 10 | 10 | 10 | 10 | 10 |
| B | 6 | 6 | 6 | 6 | 8 | 8 | 8 | 8 | 8 | 8 |
| C10 | 8 | 8 | 8 | 8 | 10 | 10 | 10 | 10 | 10 | 10 |
| C11 | 8 | 8 | 8 | 8 | 10 | 10 | 10 | 10 | 10 | 10 |
| C12 | 10 | 10 | 10 | 10 | 12 | 12 | 12 | 12 | 12 | 12 |
| C13 | 8 | 8 | 8 | 8 | 10 | 10 | 10 | 10 | 10 | 10 |
| C14 | 6 | 6 | 6 | 6 | 8 | 8 | 8 | 8 | 8 | 8 |
| C15 | 8 | 8 | 8 | 8 | 10 | 10 | 10 | 10 | 10 | 10 |
| C16 | 8 | 8 | 8 | 8 | 10 | 10 | 10 | 10 | 10 | 10 |
| C17 | 8 | 8 | 8 | 8 | 10 | 10 | 10 | 10 | 10 | 10 |
| C18 | 4 | 4 | 4 | 4 | 5 | 5 | 5 | 5 | 5 | 5 |
| C19 | 6 | 6 | 6 | 6 | 8 | 8 | 8 | 8 | 8 | 8 |
| C20 | 6 | 6 | 6 | 6 | 8 | 8 | 8 | 8 | 8 | 8 |
| C21 | 6 | 6 | 6 | 6 | 8 | 8 | 8 | 8 | 8 | 8 |
| C22 | 8 | 8 | 8 | 8 | 10 | 10 | 10 | 10 | 10 | 10 |
| C23 | 8 | 8 | 8 | 8 | 10 | 10 | 10 | 10 | 10 | 10 |
| C24 | 8 | 8 | 8 | 8 | 10 | 10 | 10 | 10 | 10 | 10 |
| C25 | 8 | 8 | 8 | 8 | 10 | 10 | 10 | 10 | 10 | 10 |
| C26 | 6 | 6 | 6 | 6 | 8 | 8 | 8 | 8 | 8 | 8 |

| | 1995 | 1996 | 1997 | 1998 | 1999 | 2000 | 2001 | 2002 | 2003 | 2004 |
|-----|------|------|------|------|------|------|------|------|------|------|
| C27 | 8 | 8 | 8 | 8 | 10 | 10 | 10 | 10 | 10 | 10 |
| C28 | 8 | 8 | 8 | 8 | 10 | 10 | 10 | 10 | 10 | 10 |
| C29 | 8 | 8 | 8 | 8 | 10 | 10 | 10 | 10 | 10 | 10 |
| C30 | 8 | 8 | 8 | 8 | 10 | 10 | 10 | 10 | 10 | 10 |
| C31 | 8 | 8 | 8 | 8 | 10 | 10 | 10 | 10 | 10 | 10 |
| C32 | 8 | 8 | 8 | 8 | 10 | 10 | 10 | 10 | 10 | 10 |
| C33 | 8 | 8 | 8 | 8 | 10 | 10 | 10 | 10 | 10 | 10 |
| D35 | 16 | 16 | 16 | 16 | 20 | 20 | 20 | 20 | 20 | 20 |
| D36 | 16 | 16 | 16 | 16 | 20 | 20 | 20 | 20 | 20 | 20 |
| E | 4 | 4 | 4 | 4 | 5 | 5 | 5 | 5 | 5 | 5 |
| F | 4 | 4 | 4 | 4 | 5 | 5 | 5 | 5 | 5 | 5 |
| G45 | 4 | 4 | 4 | 4 | 5 | 5 | 5 | 5 | 5 | 5 |
| G46 | 4 | 4 | 4 | 4 | 5 | 5 | 5 | 5 | 5 | 5 |
| G47 | 4 | 4 | 4 | 4 | 5 | 5 | 5 | 5 | 5 | 5 |
| H49 | 4 | 4 | 4 | 4 | 5 | 5 | 5 | 5 | 5 | 5 |
| H50 | 10 | 10 | 10 | 10 | 12 | 12 | 12 | 12 | 12 | 12 |
| H51 | 10 | 10 | 10 | 10 | 12 | 12 | 12 | 12 | 12 | 12 |
| H52 | 6 | 6 | 6 | 6 | 8 | 8 | 8 | 8 | 8 | 8 |
| I55 | 6 | 6 | 6 | 6 | 8 | 8 | 8 | 8 | 8 | 8 |
| I56 | 6 | 6 | 6 | 6 | 8 | 8 | 8 | 8 | 8 | 8 |
| J58 | 5 | 5 | 5 | 5 | 7 | 7 | 7 | 7 | 7 | 7 |
| J59 | 5 | 5 | 5 | 5 | 7 | 7 | 7 | 7 | 7 | 7 |
| J60 | 5 | 5 | 5 | 5 | 7 | 7 | 7 | 7 | 7 | 7 |
| J61 | 5 | 5 | 5 | 5 | 7 | 7 | 7 | 7 | 7 | 7 |
| J62 | 5 | 5 | 5 | 5 | 7 | 7 | 7 | 7 | 7 | 7 |
| J63 | 5 | 5 | 5 | 5 | 7 | 7 | 7 | 7 | 7 | 7 |
| K64 | 4 | 4 | 4 | 4 | 5 | 5 | 5 | 5 | 5 | 5 |
| K65 | 4 | 4 | 4 | 4 | 5 | 5 | 5 | 5 | 5 | 5 |
| K66 | 4 | 4 | 4 | 4 | 5 | 5 | 5 | 5 | 5 | 5 |
| L68 | 4 | 4 | 4 | 4 | 5 | 5 | 5 | 5 | 5 | 5 |
| L69 | 4 | 4 | 4 | 4 | 5 | 5 | 5 | 5 | 5 | 5 |
| M | 4 | 4 | 4 | 4 | 5 | 5 | 5 | 5 | 5 | 5 |
| N | 4 | 4 | 4 | 4 | 5 | 5 | 5 | 5 | 5 | 5 |
| O84 | 4 | 4 | 4 | 4 | 5 | 5 | 5 | 5 | 5 | 5 |
| P85 | 4 | 4 | 4 | 4 | 5 | 5 | 5 | 5 | 5 | 5 |
| Q | 4 | 4 | 4 | 4 | 5 | 5 | 5 | 5 | 5 | 5 |
| R | 4 | 4 | 4 | 4 | 5 | 5 | 5 | 5 | 5 | 5 |
| S | 4 | 4 | 4 | 4 | 5 | 5 | 5 | 5 | 5 | 5 |
| T | 4 | 4 | 4 | 4 | 5 | 5 | 5 | 5 | 5 | 5 |
| U99 | 4 | 4 | 4 | 4 | 5 | 5 | 5 | 5 | 5 | 5 |

<부표 9> 2010년 투자 관련 조세지원 현황

(단위: 억 원)

| 조세지출 | 근거규정 | 수혜자 | 수혜내용 | 법인세 감면 실적 |
|--------------------------|-------------------|---|--|-----------|
| 중소기업 투자 세액공제 | 조특법 제5조 | 중소기업(제조업, 광업, 건설업, 도소매업, 출판업, 전기통신업, 광고업 등) | 사업용자산 등 투자금액의 3% 세액공제 | 92 |
|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 세액공제 | 조특법 제11조 | 연구·인력개발 설비에 투자한 내국인 | 연구시험용 시설, 직업훈련용 시설, 신기술을 기업화 하기 위한 사업용 자산에 대한 투자금액의 10% 세액공제 | 947 |
|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 조특법 제24조 | 공정개선 및 자동화시설, 첨단 기술설비에 투자하는 내국인 | 투자금액의 3%(중소기업은 7%) 세액공제 | 258 |
| 안전설비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조특법 제25조 | 안전설비에 투자한 내국인 | 안전설비시설에 대한 투자금액의 3% 세액공제 (대상시설) 유통사업을 위한 시설, 산업재해예방 시설, 광산보안시설, 위해요소방지 시설, 기술유출방지설비, 해외자원개발설비 등 | 94 |
| 에너지절약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조특법 제25조의 2 | 에너지절약시설에 투자하는 내국인 | 투자금액의 10% 세액공제 ※11년도 세법개정안 · 적용기한 2년 연장 | 2,573 |
| 환경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조특법 제25조의 3 | 환경보전시설에 투자한 내국인 | 환경보전시설에 대한 투자금액의 10% 세액공제 | 691 |
| 의약품 품질관리개선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조특법 제25조의 4 | 의약품 품질관리개선 시설에 투자하는 내국인 | 의약품 품질관리개선 시설 투자금액(중고품 투자 제외)의 7% 세액공제 | 150 |
| 임시투자 세액공제 | 조특법 제26조, 부칙 제14조 | 사업용자산에 투자한 내국인 *제조업, 광업, 건설업, 도소매업, 출판업, 방송업, 전기통신업, 물류상업, 관광숙박업 등 | - (10년) 10%(수도권 밖), 3%(수도권 내) - (11년) 7%(수도권과밀억제 권역 밖) - (12년) 5%(중소기업, 비수도권 대기업), 4%(수도권 성장관리권역·자연보전권역 대기업) | 17,027 |

| 조세지출 | 근거규정 | 수혜자 | 수혜내용 | 법인세 감면 실적 |
|-------------------------------------|------------------------------------|---|---|-----------------|
| | | | ※ 11년도 세법개정안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도로 전환 | |
| 근로자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조특법 제94조 | 무주택종업원 임대용 국민주택, 종업원용 기숙사, 직장보육시설 등을 취득한 내국인 | 시설취득가액의 7%, 10% 세액공제 ※ 11년도 세법개정안 • 대상시설 추가 | 113 |
| 외국인투자 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 조특법 제121조 의2, 제121조 의4 | 고도기술수반사업을 영위하거나 외국인 투자지역에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 등 | - 외국인투자기업이 다음의 감면대상 사업을 영위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7년 간(5년 100%, 2년 50%) 또 는 5년간(3년 100%, 2년 50%) 세액감면 - (고용인센티브)고용증대기 업에 대해서는 외국인 투 자누계액의 20% 이내에서 추가 세제지원(고용인원 1 인당 1,000만 원) | 5,765 |
|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 조특법 제144조 | |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 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연도 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 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공제 | |
| 합계 | | | | 27,710 |

자료: 기획재정부(2011)

<부표 10> 임시투자세액공제 변천

| | | |
|----------------------|--|---------------------------|
| <2차> : 1년 6개월 | | |
| 85.6.28~86.6.30 (1년) | - 제조업, 광업 | 10%(3%, 수입산) |
| 86.7.1~86.12.31 (6월) | | 10%(3%, 수입산) |
| <3차> : 5년 6개월 | | |
| 89.7.1~90.6.30 (1년) | - 제조업, 광업 | 10%(3%, 수입산) |
| 90.7.1~90.12.31 (6월) | | 10%(3%, 수입산) |
| 91.1.1~91.12.31 (1년) | | 10%(3%, 수입산) |
| 92.1.1~92.6.30 (6월) | - 제조업, 중소기업 | 10%(0%, 수입산) |
| 92.7.1~92.12.31 (6월) | *대기업: 자동화설비 | 10%(0%, 수입산) |
| 93.1.1~93.12.31 (1년) | - 제조업, 중소기업 | 7%, 중소기업 10% (0%, 수입산) |
| 94.1.1~94.12.31 (1년) | | 7%, 중소기업 10% (0%, 수입산) |
| <4차> : 3년 | | |
| 97.6.3~98.6.30 (1년) | - 제조업 *중소기업: 모든 설비 | 10% *내외산 차등 폐지 |
| 98.7.1~99.6.30 (1년) | *대기업: 노후시설(내용연수 80% 이상) | 10% |
| *98.8.10 | - 대기업: 생산성 향상시설, 에너지절약 시설 추가 | |
| *98.11.16 | - 대기업: 모든 사업용 자산으로 확대 | |
| 99.7.1~99.12.31 (6월) | - 건설업, 도소매업, 관광숙박업 등 비제조업으로 확대(22개 업종) | 10% |
| 00.1.1~00.6.30 (6월) | | 7% |
| <5차> : 10년 | | |
| 01.1.1~01.6.30 (6월) | | 10% |
| 01.7.1~01.12.31 (6월) | | 10% |
| *01.9.3 | - 과학기술서비스업 등 8개 업종 추가 | |
| 02.1.1~02.6.30 (6월) | 25개 업종(산업분류 기준) | 10% |
| 02.7.1~02.12.31 (6월) | - 27개 업종(의료기관, 노인복지시설업 추가) | 10% |
| 03.1.1~03.6.30 (6월) | | 10% |
| 03.7.1~03.12.31 (6월) | | 15% |
| 04.1.1~04.6.30 (6월) | - 29개 업종(분뇨처리업, 영화관운영업 추가) | 15% |

| | | |
|----------------------|---------------------------------------|---------------------------|
| 04.7.1~04.12.31 (6월) | | 15% |
| 05.1.1~05.12.31 (1년) | | 10% |
| 06.1.1~06.12.31 (1년) | - 31개 업종(전문휴양업 및 종합휴양업 추가) | 7% |
| 07.1.1~07.12.31 (1년) | | 7% |
| 08.1.1~08.12.31 (1년) | | 10%(3%,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
| 09.1.1~09.12.31 (1년) | | |
| 10.11~10.12.31 (1년) | | 7%(수도권과밀권 역외) |
| <6차> : 6년 | | |
| 11.1.1~11.12.31 (1년) | - 임투공제율인하, 고투공제도입 | 5%(임부)+1%(고부) |
| 12.1.1~14.12.31 (3년) | - 임투공계공투공제로전환(기본+추가 공제) | 4%+2%(대기업) 4%+3%(중소기업) |
| 13.1.1~14.12.31 (2년) | - 대기업기본추가공제율조정, 고용감소 중소기업에 기본공제 허용 | 3%+3%(대기업) 4%+3%(중소기업) |

자료: 조세연구원(2008.12), 윤영선·윤태화(2011), 국회예산정책처 재정리

참고문헌

- 강민우(2008.12), “한국 자본시장의 주식프리미엄과 위험회피계수 추정,” *응용경제* 10(3): 33-48.
- 광태원(1985.09), 감가상각제도와 자본소득과세: 감가상각제도의 투자유인효과를 중심으로, 연구보고서, 한국개발연구원.
- 광태원(2005.08), 법인소득과세의 이론과 현실: 국내외 연구성과 개관, 기타연구자료, 한국조세연구원. (제4장 자본비용과 유효한계세율: 법인세와 경제활동)
- 김학수(2009.07), 법인세 한계유효세율의 추정 및 시사점, 연구보고서 09-11, 한국경제연구원.
- 나이스평가정보. KISLINE 데이터베이스.
- 문중철·윤정현(2011), “FTA가 한국의 해외직접투자 및 외국인직접투자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분석”, 정책자료 2011-155, 산업연구원.
- 안중범 외(2009.04), 감세의 경제적 효과와 귀착: 법인세를 중심으로, 연구보고서 09-04, 한국경제연구원.
- 안중석(1994.12), 조세정책이 대내외 직접투자에 미치는 효과분석, 연구보고서, 한국조세연구원.
- 원윤희·현진권(2000.12), “한국의 한계유효세율: 1960~1998년 기간을 중심으로”, *한국경제의 분석* 6(3): 115-169.
- 윤건영(1988.03), “자본소득세정책의 투자유인효과분석”, *재정논집* 2: 261-288.
- 윤건영·김중용(1997), “한국의 법인투자 유효한계세율”, *공공경제* 2: 162-200.

- 이만우·김진배·양대천(2008.9), “법인세율 차이가 해외직접투자에 미치는 영향”, *세무학연구* 2008-09: 161-189, 한국세무학회.
- 표학길·김우철·전은경(2009.08), 한국의 산업별 수익률 및 사용자비용 추계(1970~2006), 기타연구자료, 한국조세연구원.
- 한국수출입은행. 해외법인 데이터.
- 현진권(1994.10), 감가상각의 현황과 정책방향, 연구보고서 1994-10, 한국조세연구원.
- 현진권(1996.08), 유형고정자산의 경제적 감가상각 추정, 한국조세연구원.
- 현혜정·장용준·강준구·김혁황·박철형(2010), “한국 해외투자의 경제적 효과 분석: 생산성, 무역, 고용을 중심으로”, 연구보고서 2010-02,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황상현·김현종(2012.06), “재벌세 도입에 대한 논의와 정책 모의실험 (simulation)”, *규제연구* 21(1): 169-222.
- 황상현·김현종(2012.07), 계열사 출자에 따른 과세에 대한 논의 및 영향분석 연구, 연구보고서 12-03, 한국경제연구원.
- Agodo, O. (1978), “The determinants of US private manufacturing investments in Africa”,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Studies*: 95-107.
- Aharoni Y. (1966), “The Foreign Investment Decision Process”, Harvard Business School, Boston.
- Altshuler, R. and J.M. Mintz (1995), “U.S. Interest-Allocation Rules: Effects and Policy”, *International Tax and Public Finance* 2(1): 7-35.
- Antras Pol, Luis Garicano, Esteban Rossi-Hansberg (2006), “Organizing Offshoring: Middle Managers and Communication Costs”, *NBER*

Working Paper, No. 12196.

- Auerbach, Alan J.(1979.08), “Wealth Maximization and the Cost of Capital,”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93(3): 443-446.
- Aw Bee Yan and Yi Lee. (2008), “Firm Heterogeneity and Location Choice of Taiwanese Multinationals”,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s*, Vol. 76: 403-415.
- Barlow E. and I. Wender (1955), *Foreign Investment and Taxation*, Englewood Cliffs: Prentice Hall.
- Bollen, K. A. (1989), “Structural Equations with Latent Variables”, New York, Wiley.
- Bond E. and L. Samuelson (1986), “Tax Holidays as Signals”, *American Economic Review* 76(4): 820-826.
- Braconier, H., K. Ekholm. (2000), “Swedish Multinationals and Competition from High- and Low-Wage Locations”, *Review of International Economics*, 8(3): 448-461.
- Brainard S. and D. Riker (1997), “Are U.S. Multinationals Exporting U.S. Jobs?”, *NBER Working Paper*, No. 5958.
- Castellani, D., I. Mariotti, L. Piscitello. (2008), “The Impact of Outward Investments on Parent Company's Employment and Skill Composition Evidence from the Italian Case”, *Structural Change and Economic Dynamics*, 19: 81-94.
- CEPII. <http://www.cepii.fr/anglaisgraph/bdd/distances.htm>
- Clark, W.S. (2000), “Tax Incentives for Foreign Direct Investment: Empirical Evidence on Effects and Alternative Policy Options”, *Canadian tax journal* 48,2000(4): 1139-1180.

- Collins, J.H. and D.A. Shackelford (1995.02), “Corporate Domicile and Average Effective Tax Rates: The Cases of Canada, Japan, the United Kingdom, and the United States”, *International Tax and Public Finance* 2(1): 55-83.
- Coyne, E.J. (1994), “An Articulated Analysis Model for FDI Attraction into developing Countries”, Florida; Nova Southeastern University.
- Cuyvers, L, M. Dumont, G. Rayp, K. Stevens. (2005), “Home Employment Effects of EU Firms’ Activities in Central and Eastern European Countries”, *Open Economies Review*, 16: 153-174.
- De Mooij, R.A. and S. Ederveen (2003.11), “Taxation and Foreign Direct Investment: A Synthesis of Empirical Research”, *International Tax and Public Finance* 10(6): 673-693.
- Desai, M.A. and J.R. Hines Jr. (1999.03), ““Basket cases”: Tax incentives and international joint venture participation by American multinational firms”, *Journal of Public Economics* 71(3): 379-402.
- Ernst & Young (1994), Investment in Emerging Markets.
- Fullerton, D. (1987.02), “The Indexation of Interest, Depreciation, and Capital Gains and Tax Reform in the United States,” *Journal of Public Economics* 32: 25-51
- Fullerton, D. (1999), “Marginal Effective Tax Rate,” in Cordes, Ebel, and Gravelle (eds.), *Encyclopedia of Tax Policy*, Urban Institute Press.
- Gordon, R., L. Kalambokidis, J. Slemrod (2003.03), “A New Summary Measure of the Effective Tax Rate on Investment,” NBER Working Paper No. 9535.
- Gravelle, J.G. (1982.03), “Effects of the 1981 Depreciation Revisions,”

National Tax Journal 35(1): 1-20.

- Gravelle, J.G. (1983.09), "Capital Income Taxation and Efficiency in the Allocation of Investment," *National Tax Journal* 36(3): 297-306.
- Gravelle, J.G. (1994), *The Economic Effects of Taxing Capital Income*, Cambridge: MIT Press.
- Gravelle, J.G. (2001), "Whither Tax Depreciation?," *National Tax Journal* 54(3): 513-526.
- Gruber, J. and J. Rauh (2007), "How Elastic is the Corporate Income Tax Base?" in Auerbach, A.J., J.R. Hines, and J. Slemrod (eds.), *Taxing Corporate Income in the 21st Century*, Cambridge and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Gruber, J. and J. Rauh (2007), "How Elastic is the Corporate Income Tax Base?," in A.J. Auerbach, J.R. Hines and J. Slemrod, eds., *Taxing Corporate Income in the 21st Century*, pp. 140-163, Cambridge and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Grubert, H. and J. Mutti (1991.05), "Taxes, Tariffs and Transfer Pricing in Multinational Corporate Decision Making",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73(2): 285-293.
- Grubert, H. and J. Mutti (2000.12), "Do Taxes Influence Where U.S. Corporations Invest?" *National Tax Journal* 53(4): 825-839.
- Guisinger, S., et al. (1985), *Investment Incentives and Performance Requirements: Patatans of Patanational Trade, Production, and Investment*, New York: Praeger.
- Hall, R.E. and D.W. Jorgenson(1967.06), "Tax Policy and Investment Behavior", *American Economic Review* 57(3): 391-414.

- Harris, D.G. (1993), “The Impact of U.S. Tax Law Revision on Multinational Corporations’ Capital Location and Income-Shifting Decisions”,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31: 111-140.
- Harrison, A., M. McMillan. (2006), “Outsourcing Jobs? Multinationals and US Employment”, *NBER Working Paper*, No. 12372.
- Hartman, D.G. (1985.02), “Tax policy and foreign direct investment”, *Journal of Public Economics* 26(1): 107-121.
- Helpman Elhanan, Marc J. Melitz, Stephen R. Yeaple. (2004), “Export versus FDI with FDI Heterogeneous Firms”,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94, No. 1: 95-107.
- Hines, J.R., Jr (1996.12), “Altered States: Taxes and the Location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America”, *American Economic Review* 86(5): 1076-1094.
- Hines, J.R., Jr (1999.06), “Lessons from Behavioral Responses to International Taxation”, *National Tax Journal* 53(2): 305-322.
- Hines, J.R., Jr. and E.M. Rice (1994.02), “Fiscal Paradise: Foreign Tax Havens and American Business”,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09(1): 149-182.
- Hines, J.R., Jr. and R.G. Hubbard (1990.01), “Coming Home To America: Dividend Repatriations By U.S. Multinationals”, A. Razin and J. Slemrod, eds., *Taxation in the Global Economy*, pp. 161-208,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Hong, Q. and M. Smart (2010.01), “In praise of tax havens: International tax planning and foreign direct investment”, *European Economic Review* 54(1): 82-95.

- Jorgenson, D. and M.A. Sullivan(1981), "Inflation and Corporate Capital Recovery," in C.R. Hulten (ed.), *Depreciation, Inflation, and Taxation of Income from Capital*, Washington: The Urban Institute Press.
- Jorgenson, D.W.(1963), "Capital Theory and Investment Behavior," *American Economic Review* 57(3): 391-414.
- Jorgenson, Dale W.(1963), "Capital Theory and Investment Behavior", *American Economic Review* 53(2): 247-269.
- King, M.A. and D. Fullerton (1984), *The Taxation of Income from Capital: A Comparative Study of the United States, the United Kingdom, Sweden, and West German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Lim D. (1983), "Fiscal Incentives and Direct Foreign Investment in Less Developed Countries", *Journal of Development Studies* 19(2).
- MacKinnon, D.P. (2008), "Introduction to Statistical Mediation Analysis", Mahwah, NJ: Erlbaum.
- MacKinnon, D.P., C.M. Lockwood, J.M. Hoffman, S.G. West, V. Sheets. (2002), "A Comparison of Methods to Test Mediation and Other Intervening Variable Effects." *Psychological Methods*, 7: 83-104.
- Magati, D. (1999), "A Review of the Role and Impact of Export Processing Zones", draft, the World Bank, Research Department.
- Mintz J. and T. Tsiopoulos (1992), "Corporate Income Taxation and Foreign Direct Investment", Foreign Investment Advisory Service, Occasional Paper.
- Morck, R., B. Yeung, M. Zhao (2008), "Perspectives on China's

outward foreign direct investment”,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Studies* 39: 337-350.

- OECD. “Towards Global Tax Co-operation”.
- Robinson, H.J. (1961), *The Motivation and Flow of Private Foreign Investment*, Menlo park, California: Stanford Research Institute.
- Rolfe, R.J., et al. (1993), “Determinants of FDI incentive preferences of MNEs.”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Studies*: 335-355.
- Root, F.R. and A.A. Ahmed (1978), “The influence of policy instruments on manufacturing direct foreign investment in developing countries.”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Studies*: 81-93.
- Shah A. and J. Toye (1978), “Fiscal Incentives for Firms in Some Developing Countries: Survey and Critique”, in J. Toye, ed., *Taxation and Economic Development*, London: Fran Cass.
- Shrout, P. and N. Bolger. (2002), “Mediation in Experimental and Nonexperimental Studies: New Procedures and Recommendations”, *Psychological Methods*, 7(4): 422-445.
- Slemrod, J.B. (1990,01), “Tax Effects on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the United States: Evidence from a Cross-Country Comparison”, A. Razin and J. Slemrod, eds., *Taxation in the Global Economy*, pp. 79-122,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Sobel, M. E. (1987) “Direct and Indirect Effects in Linear Structural Equation Models”, *Sociological Methods and Research*, 16: 155-176,
- Swenson, D.L. (1994,06), “The impact of U.S. tax reform on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the United States”, *Journal of Public Economics* 54(2): 243-266.

- Swenson, D.L. (2000.01), “Transaction Type and the Effect of Taxes on the Distribution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the United States”, J.R. Hines, Jr., ed., *International Taxation and Multinational Activity*, pp. 89-112,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The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http://data.worldbank.org/data-catalog/world-development-indicators>
- The World Bank. “World Integrated Trade Solution”
<http://wits.worldbank.org/>
- UNCTAD. <http://unstats.un.org/unsd/cr/registry/regct.asp>
- Wei, S.-J. (2000.02), “How Taxing is Corruption on International Investors?”,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82(1): 1-11.
- Wells L. (1986), “Investment Incentives: An unnecessary Debate”, CTC Reporter, autumn.

Abstract

An analysis on the effects of domestic corporate tax policy on firms' oversea direct investment and employment

Sanghyun Hwang and Seungrae Lee

This paper analyzes the effects of domestic corporate tax policy on firms' oversea direct investment (ODI) and employment. Apart from the previous tax policy literatures that examines the effects of foreign corporate tax policy on inward foreign direct investment (IFDI), this paper evaluates domestic corporate tax policy as a determinant for firms to invest abroad. Using Korean firm-level data, we measure domestic corporate tax rate as average effective tax rate and marginal effective tax rate for each firm and estimate their effects on firms' ODI and employment. Our results show that both effective tax rates are positively and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the amount of firms' investment to their subsidiaries abroad. While firms' ODI do not have significant effects on their domestic employment, we show that firms' ODI induced by domestic tax rates have negative and significant effects on domestic employment. Our analysis implies that domestic corporate tax policy negatively and indirectly affects to firms' employment through ODI.